

2006년 1차 정책세미나

WTO/DDA 협상의제 쟁점 분석과 한국의 통상협상 전략

■ 일 시 : 2006년 2월 20일(월) 13:00~20:00

■ 장 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다산홀

주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한국국제통상학회

후원 : 외교통상부

초청의 말씀

한국국제통상학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공동으로 「WTO/DDA 협상의제 쟁점 분석과 한국의 통상협상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산·학·관·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술토론의 장으로 2006년 제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책세미나에서는 WTO/DDA 협상의제와 관련하여 산·학·관·연의 이론, 정책,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를 모시고 농업부문, 비농업부문, 서비스부문, 규범부문, 무역원활화부문, 저개발국지원부문에서 6편의 연구과제를 심도있게 발표·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본 학술발표대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변화와 무한경쟁시대에서의 글로벌 통상전략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학문연구와 정책개발, 그리고 제도개선과 업계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디 본 정책세미나가 진지한 학술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 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한국국제통상학회회장 윤 기 관

주요행사 일정

이 사 회 10:30~11:30

점심식사 11:30~12:30

등록 및 접수 12:30~13:00

개 회 식 13:00~13:15

사회자 : 최세균(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 회 사 : 윤기관 교수 (한국국제통상학회장)

정책세미나 13:20~18:10

주요행사 일정

■ 제1부

13:20~15:20

사회자 : 윤기관(한국국제통상학회장)

발표주제 : 농업부문 협상의제의 원활한 해결방안

발표자 : 조규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충원(농림부)

토론자 : 박의범(강원대학교)

발표주제 :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전략

발표자 : 김도훈(산업연구원)

토론자 : 이홍식(KIEP)

발표주제 : DDA 서비스협상 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자 : 천준호(외교통상부)

토론자 : 박형래(강릉대학교)

Coffee Break

15:20~15:40

주요행사 일정

■ 제2부

15:40~17:40

사회자 : 정인교(인하대학교)

발표주제 : DDA 규범협상의 쟁점분석 및 협상전략

발표자 : 윤강현(외교통상부)

토론자 : 최승환(경희대학교)

발표주제 : WTO의 무역원활화 논의

발표자 : 양준석(가톨릭대학교)

토론자 : 김현지(경기대학교)

발표주제 : DDA 개발분야 협상동향과 대응방안

발표자 : 홍재문(외교통상부)

토론자 : 김은미(전북대학교)

■ 종합토론

17:40~18:10

사회자: 최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토론자 :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리셉션

18:10~20:00

농업분야의 쟁점 분석과 한국의 통상협상전략 도출¹⁾

목 차

- I. DDA 농업협상의 흐름
- II. 시장 접근 분야의 협상 쟁점과 시사점
- III. 국내 보조 분야의 협상 쟁점과 시사점
- IV. 요약 및 결론

발표: 조 규대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1) 본 자료는 서진교외(2005)와 조규대의(2005)의 보고서를 수정 요약 정리한 것이다

I. DDA 농업협상의 흐름

- UR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 하에 2001.11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출범하였다. 2003.3월 하빈슨 농업협상 의장은 완전한 형태의 협상 세부원칙(Modality)을 확정하려 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였고 2003.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중간단계로 기본골격(Framework)만이라도 합의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였다.
- 2004년 초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하여 2004.7월말까지 우선 기본골격만의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 진행하였고, 회원국과 주요 협상 그룹 간 논의를 거쳐 2004.8.1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 채택하였다
- 세부원칙(modality)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은 종가상당치 문제가 해결된 2005년 5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005년 9월에는 WTO 사무총장과 농업협상 의장이 교체되었으며, 라미 사무총장은 홍콩각료회의에서 의제의 2/3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협상을 가속화 하였다
- 그러나 미국과 EU, 그리고 수출개도국 그룹인 G20등 협상 그룹간의 관세감축, 민감품목, 그리고 국내보조 감축등 주요 분야에서 이견의 차를 극복하지 못하여 제6차 WTO 각료회의('05.12, 홍콩)에서는 일부 합의사항만을 확인한 채 큰 성과 없이 마무리 되었다.
- 현재 협상은 '06.4월말까지 농업·NAMA 분야의 세부원칙을 확정하고, 각국의 이행계획서를 '06.7월말까지 제출기로 하는 등의 일정을 합의하고 협상이 진행 중이다.

II. 시장 접근 분야의 협상 쟁점과 시사점

- DDA 농업협상 시장접근분야의 핵심 쟁점은 관세감축 폭과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에 대한 선정과 대우(treatment), 그리고 개도국 특별품목(special product) 및 특별세이프가드로 요약 할 수 있다. 관세감축은 구간별 관세감축방식(tiered formula)의 채택에 따라 높은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한다는 원칙 아래 관세구간의 경계(threshold)와 감축 폭이 핵심 쟁점이며,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의 경우 그 개수와 대우(시장개방 폭: 관세감축 및 TRQ 확대), 개도국 특별대우의 일환으로서 특별품목(special product)의 경우 개수와 대우, 그리고 개

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의 운용방법 등이 핵심 쟁점으로 볼 수 있다.

2. 1. 관세 감축에 대한 주요 제안

가. 관세구간의 수와 경계

- 현재 협상의 진행으로 보아 관세구간의 수는 4개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쟁점은 최상위 관세구간의 경계의 결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표 1-1>에 나타나 있듯이, 미국, 케언즈그룹, G20의 수출국들은 주로 EU를 목표로 최상위 관세구간의 경계를 가급적 낮추어(G20는 75%, 미국은 60% 제시), 그들의 주요 수출품목의 EU내 관세를 대폭 감축시키려고 하는 반면 EU는 90%를 제시하고 있다.

나. 감축 폭

- 감축 폭에 대해서는 협상그룹간의 이견의 폭이 크며 지금까지의 협상 동향에 따르면 최상위 관세구간의 감축률은 UR보다 대폭 확대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1-1 참조).
- 미국은 최상위 구간의 감축률로 90% 이상을 주장 하고 있으며 G20는 75%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EU는 65% G10은 45%(선진국 기준)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주장은 G20의 제안에 비하여서도 높은 수준으로 이는 최근에 국내보조 분야, 특히 신규 블루박스 보조에 대한 추가 규제를 주장하는 EU를 압박하고자하는 국내보조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제안으로 판단된다

다. 관세 상한

- 특히 AVE 결과 1,000%가 넘는 수입금지적 관세가 드러남에 따라 관세 상한 설정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EU와 G20는 선진국 기준으로 100%, 미국은 75%의 관세 상한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반대하는 수입국들과 대립하고 있다.

표 2-1. 관세 감축에 대한 주요 제안

	EU	미국	G20	G10
구간경계	선진국 (30-60-90) 개도국 (40-80-130)	20-40-60	선진국 (20-50-75) (개도국) 30-80-130	(선진국) 20-50-70 (개도국) 30-70-100
관세감축률	선진국 35-45-50-60 개도국 25-30-35-40	60-70-80-90	선진국 45-55-65-75 (개도국) 25-30-35-40	(선진국) 27-31-37-45 (개도국) 선진국의 2/3수준
관세 상한	선진국100% 개도국 150% (민감품목 제외)	75% (선진/개도국 구분 불확실)	선진국)100% (개도국)150%	반대
민감품목의 개수	전체 세번의 8%	전체 세번의 1%	<선진국> 전체 세번의 1% <개도국> 전체 세번의 1.5%	전체 세 번의 10~15%

라. 민감품목의 개수

- 민감품목의 수에 대해서도 협상그룹 간의 이견의 폭이 크다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과 G20는 민감품목의 개수를 전체 세번의 1%(선진국의 경우)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EU는 전체 세 번의 8%, G10 그룹은 10%~15%를 주장하고 있어 이견의 폭이 대단히 크다.
- 주요 수입국의 고율관세 농산물의 개수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민감품목의 개수는 전체 농산물의 5~1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²⁾.
- <표 2-2>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EU의 경우 100%이상 고율관세 품목 수는 3~4% 수준이며, 일본은 8~9%, 스위스와 노르웨이는 20%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 9.8%(쌀을 포함할 경우) 수준이다.

2) 100% 이상 고율관세품목 모두를 민감품목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음. 그러나 100% 이하 품목에서도 민감품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 이상의 품목을 대략적인 민감품목으로 보아 그 개수를 예상한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EU의 관세 100% 이상 세번은 3% 수준이지만, 70~100% 관세구간에도 축산물과 낙농제품, 밀, 옥수수 등의 곡물과 과일 주스 등 민감한 품목이 약 80여 개(HS 8단위 기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EU의 민감품목 비율은 약 7%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 주요 수입국의 고율관세 세번 비중

단위: %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100%이상~200% 미만	3.0	1.7	12.0	13.8
200~300%	0.3	3.5	5.1	5.9
300~400%	0.0	1.4	1.6	2.4
400~500%	0.0	0.7	0.8	1.4
500%이상	0.1	1.5	1.3	1.2
100%이상 품목 합계	3.4	8.9	20.8	24.7

- 미국의 민감품목 수에 대한 제안도 국내보조 분야에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일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보조 분야에서의 EU의 양보 수준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중요한 것은 민감품목의 수와 대우가 서로 상충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입국의 입장에서 민감품목의 대우 여하에 따라 그 수를 줄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민감품목의 수가 10% 안팎이라면, 개도국 우대를 고려할 경우 개도국의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총 수가 너무 커져 시장접근의 기본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수출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 개도국의 민감품목은 선진국 보다 많은 12~15%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고, 여기에 특별품목까지 고려하면 개도국의 경우 전체 세번의 최소 15% 이상 20%까지도 시장개방의 융통성을 인정받는 결과가 되어 자칫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시장접근분야 기본 원칙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
- 결국 선진국의 민감품목의 수는 5~10% 미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도국의 경우 민감품목의 수가 10%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 경우 민감품목의 대우는 상대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입국으로서도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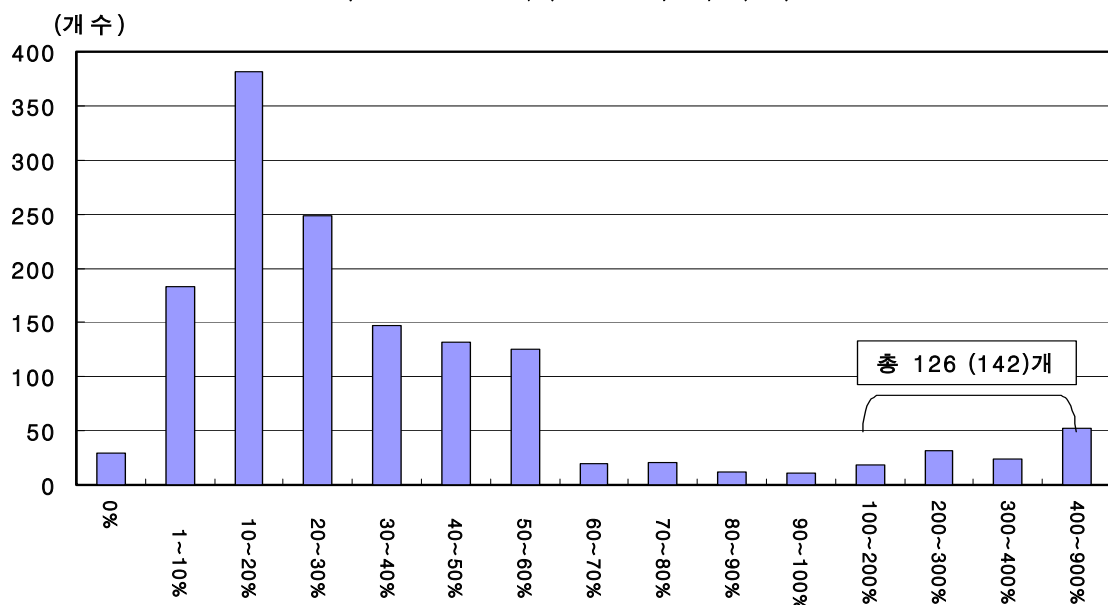
2.2.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 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 우리나라의 농산물은 2004년 말 현재 HS 10단위 기준으로 1436개이며 (쌀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평균 양허관세율은 63%, 실행관세율은 55%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관세가 높은 품목의 세율은 887% (매니옥)이며, 29개 품목은 관세 없이 수입되고 있다. 특히 양허세율과 실행세율의 차가 크지 않아, DDA 협상에서의 감축 폭이 현실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가. 관세구조의 특징

- <그림 1-1>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관세구조 중 DDA 협상과 관련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100%이상 관세구간에 주요한 품목이 많은 반면 실제 이 구간에 있는 품목의 총 세번(tariff line)의 개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 10~20% 관세구간에 381개(전체 세번의 26.5%)가 포함되어 있으며, 관세율 30% 이하에 전체 농산물의 58.5%가 분포되어 있는 반면, 관세가 100% 이상인 품목은 총 126개(쌀을 포함하면 142개)로 전체 세번의 8.8%(쌀을 포함하면 9.8%)에 불과하다.

그림 1-1. 관세구간별 품목의 수



- 두 번째 특징은 핵심 농산물은 20~45% 및 140~400% 관세구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표 2-3>에 나타난 것처럼 제1 관세구간(30~45% 구간)에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수박 등 대부분의 과일 및 과채류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양허 관세는 45%이며, 대부분의 일반 채소의 양허관세는 27%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대부분의 관세는 18~45%로 나타났다 (쇠고기(40%), 돼지고기(25%), 닭고기(18~20%)).
- <표 2-4>는 제2 관세구간(140~400%)에 분포하고 있는 품목들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UR 당시 관세화를 한 곡물류의 관세가 일반적으로 높고, 양념채소류의 관세가 매우 높아 마늘이 360%, 고추가 270%로 나타났다. 기타 감귤과 인삼 등이 144%와 220%로 관세가 높고, 유제품 가운데 전지분유 및 탈지분유의 관세가 176%에 이르고 있다.

표 2-3. 주요 품목의 관세 수준: 제1구간

관세 구간	주요 품목
0 ~ 10%미만	식물성 유지류
10이상~ 20%미만	일부 닭고기(18%), 조류, 묘목
20이상~ 30%미만	돼지고기(25%), 닭고기(20%), 계란, 일부채소
30이상~ 40%미만	일부 낙농품, 화훼류, 유지류, 주류, 너트류,
40이상~ 50%미만	쇠고기(40%), 유장(49%), 조제저장버섯(47%), 주요 신선 과일(45%), 주요 신선 채소(45%) 기타 과일주스 및 신선버섯(41%)
50이상~ 60%미만	건조채소, 육류통조림, 가공채소, 과일/채소주스 (54%), 조제식품(54%), 담배(54%)

표 2-4. 주요 품목의 관세 수준: 제2구간

관세 구간	주요 품목
60이상~ 70%미만	감(68%), 매실(68%), 담배(65%), 홍차(60%)
70이상~ 80%미만	냉동과일(72%), 육류통조림(72%)
80이상~ 90%미만	종유(89%), 연유(89%), 버터밀크(89%)
90이상~100%미만	표고버섯(90%), 고사리(90%), 바나나(90%)
100이상~200%미만	분유(176%), 감귤(144%), 양파(135%),
200이상~300%미만	쌀보리(299%), 고추(270%), 맥아(269%), 꿀(243%) 메밀(256%), 땅콩(230%),밤(220%) 백삼 (223%),
300이상~400%미만	고구마(385%), 마늘(360%), 옥수수(328~370%), 감자(304%)
400이상~900%미만	매니옥(887%), 가공곡물(800%), 수수(779%), 홍삼류(754%) 콘용옥수수(630%), 참깨(630%), 대추(611%), 녹두(607%), 잣(566%), 귀리 (554%), 녹차(513%), 맥주맥(513%), 대두 (487%), 팥(420%), 감자전분(455%)

나. 시사점

- 이러한 우리나라의 관세 구조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민감품목 개수 선정은 관세 구간별로 접근하는 것 보다는 전체 농산물 총 세번수의 일정 비율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 100%이상 고율관세에 속하는 세번의 수는 쌀을 포함하여 142개에 불과한 반면, 쌀 1개 품목만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HS 10단위로는 16개가 되어 100% 이상 관세구간 내 민감품목의 비율은 11%를 초과하게 된다(=16/142).
- 우리나라는 100%이상 관세구간에 주요한 품목이 많은 반면 실제 이 구간에 속하는 세번의 수는 적은 관세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감품목의 선정을 관세구간 내 속하는 세번수(예: 142)의 일정 비율로 하는 것은 매우 불리하다
- 그러나 농산물 전체의 일정 비율로 할 경우 같은 11%를 적용한다고 해도 총 1,452개에서 약 160개 세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 입장

에서 민감품목 선정에 보다 큰 융통성을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 구조가 주는 두 번째 시사점은 관세구간의 수와 경계 감축 공식, 감축 폭만을 가지고는 주요 농축산물의 시장개방 폭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주요 농축산물의 관세는 서로 떨어진 두 개의 관세구간(20~45%와 140~400%)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반면 지금까지의 DDA 농업협상 논의 동향을 감안할 때 140~400% 관세구간은 최상위 관세구간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가장 큰 폭의 관세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최상위 관세구간에 속하게 될 주요한 품목은 관세감축공식이나 감축 폭의 조정을 통해 시장개방 폭을 줄이려고 해도 구간별 관세감축(tiered formula)이 원칙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감축공식이나 폭도 중요하지만 민감품목 또는 특별품목의 활용이 시장개방 확대 폭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사실로 인해 우리의 일차적 관심은 주요 핵심 농산물을 민감품목이나 특별품목으로 지정하여 시장개방 폭을 최소화하는 것에 두어야 하며 따라서 민감품목의 대우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라면 일반 품목에서 관세구간의 수와 감축 공식, 감축 폭 등은 우리로서는 일정 부분 양보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III. 국내 보조 분야의 협상 쟁점과 시사점

- DDA 농업협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국내보조의 감축에 관한 것으로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블루박스(Blue-Box), 그리고 허용보조(Green-box)등 다양한 문제에 관하여 논의가 진행됨 홍콩각료회의에서 완전한 모델리티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라미 사무총장의 보고에 따르면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회원국간의 이견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국내보조는 한 농산물 수출국의 제 삼 세계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국내보조 분야 협상의 실질적인 배경은 DDA협상 타결 이후의 보다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농산물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 간의 협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전체적으로 국내보조 분야 협상에서 G20, 호주, 캐나다 등 국내보조에 의존하지 않는 농산물 수출국은 공세적인 입장인 반면 높은 수준의 국내보조를 지급하는 농산물 생산국 (미국, EU),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입국 (G10) 등은 수세적인 입장이다.

3.1 국내보조 분야의 주요 제안

가. 감축대상보조(AMS)의 감축

- 2005년 11월 22일에 발표된 WTO 농업위 의장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AMS 감축 구간 수는 3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EU와 G20의 제안의 근거하여, EU가 첫 번째 구간, 미국과 일본이 두 번째 구간, 그리고 나머지 선진국이 세 번째 구간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고 감축률은 각각 70%~83%, 60%~70%, 그리고 37%~6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3-1 참조).

표 3-1. AMS 감축에 대한 의장 보고

	경계(달러)	감축률(%)
1 구간	0~120/150억	37~60
2 구간	120/150~250억	60~70
3 구간	250억 이상	70~83

- 그러나 일본의 구간 배치문제 (1구간 혹은 2구간), 개도국 특별우대조치를 반영한 품목특정 AMS 상한 기준기간 설정 문제, 개도국의 구간배치 문제 (최하위 구간 배치 혹은 별도 구간 마련 여부), 기준 연도 문제(기존 협상 논의과정에서 1995~2000년 혹은 1999~2001년이 제시됨) 등은 아직 의견 수렴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나. 최소허용보조(Permitted de minimis)

- 최소허용보조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1) 기준연도, 2) 기준의 하향 조정이 쟁점으로 농산물 수입국들은 최소허용보조의 감축 면제 혹은 감축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EU, G20 등은 감축 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G20은 품목특정 및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에 대해 모두 감축해야 하며 AMS 실적이 없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감축을 면제하는 반면 AMS 실적이 있는 개도국은 무역왜곡보조 총액 수준의 감축과 관련하여 감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표 3-2: De-minimis 감축 국별 제안

	EU	미국	G20	G10
De-minimis 기준조정	80%감축 (5%→1%)	50% 감축 (5%→2.5%)	AMS 없는 개도국은 기준 인하 면제	--

- 현재 최소허용보조는 농업총생산액의 5%(개도국 10%)가 기준이지만 향후 협상에서 기준연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 기준 역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50%감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EU는 최근의 제안에서 선진국의 경우 80%감축을 주장하여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표 3-2 참조).
- 그러나 개도국에 대한 최소허용보조 감축여부, 모든 개도국에 대한 감축의무 면제여부, AMS를 지급하지 않는 개도국에 대한 감축의무 면제여부, 혹은 AMS를 지급하는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의 2/3 수준 미만 감축여부 등에 관하여는 회원국들 간의 이견의 폭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블루박스(Blue Box)

- 기본골격에는 기존 블루박스(Old Blue Box) 기준 이외에 새로운 블루박스(New Blue Box) 기준이 추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정 뜨거운 핵심쟁점은 새로운 블루박스의 추가 기준설정 및 규율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 미국, EU, G10 등은 블루박스가 AMS에 비해서 무역왜곡 정도가 적다고 언급하는 등 농정 개혁 과정에서 블루박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엄격한 기준 설정에 반대하는 반면, 케언즈그룹과 G20은 블루박스 기준 설정을 엄격히 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G20과 이미 농정을 상당부분 개혁한 EU는 새로운 블루박스가 대폭적인 AMS 감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새로운 블루박스에 대해서는 엄격한 추가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기본골격에 따르면 블루박스 사용 가능수준은 농업총생산액의 5%로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나, 미국은 기본골격보다 한 걸음 더 나가 2.5% 한도를 제시. 이에 EU, G20 등은 미국의 CCP를 새로운 블루박스로 이전할 경우 한도를 2.5%로 줄인다고 해도 실질적인 감축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주장하면서 CCP내부에서도 품목특정적인 제한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특히 EU는 새로운 블루박스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국내외 가격차를 설정하여

고정시킨 다음 향후에 보조수준을 품목별로 이 가격차의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하자고 제안함으로써 미국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라. 총무역왜곡 보조의 감축

- 2005년 11월 22일의 농업위 의장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왜곡보조 총액 감축은 선진국의 경우 절대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누어 감축하는데 회원국 간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또한 구간경계는: 0~100억 달러, 100~600억 달러, 600억 달러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간배치는 1구간에 EU, 2구간에 일본·미국, 마지막으로 3구간에 기타 선진국으로 하는데 회원국 간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3-3 참조). 그러나 개도국의 구간배치 문제는 역시 미해결 쟁점으로 남아 있다

표 3-3: 총무역왜곡 보조 감축에 대한 의장 보고

	경계(달러)	감축률(%)
1 구간	0~100억	31~70
2 구간	100~600억	53~75
3 구간	600억 이상	70~80

마. 허용보조(Green Box)

- 기본골격은 그린박스의 취지에 맞도록 그 기준을 검토하고 명확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 케언즈그룹과 G20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현행 농업협정 부속서 2의 허용보조 (Green Box) 요건이 무역왜곡 효과를 야기하므로 현행 허용보조 기준 자체에 대한 검토와 엄격한 규율 마련을 주장하는 반면 G10, 미국, EU 등은 현행 허용보조 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으나 전면적인 개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우리나라 등 G10은 그린박스의 증가는 농정개혁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비교역적 관심사항(NTCs)의 중요성, 환경 등 사회적 목표 달성 측면에서 그린박스에 이러한 요인들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G20, 케언즈 그룹 등은 현행 그린박스의 무역 왜곡적인 규정을 재검토하여 이의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2. 평가

가. 감축대상 보조 (AMS)

- WTO 사무국 배경문서에 기초할 때 AMS를 사용하고 있는 회원국은 총 35개국이며, 지급가능 총액은 약 1,411억 달러이다. 이 중 지급가능 AMS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EU로 약 6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그 다음은 일본으로 360억 달러, 미국이 그 뒤로 약 19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 <표 3-4>에 나타난 것처럼 지급 가능한 AMS 수준(양허수준)과 실제 AMS 지급 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거론되는 감축률을 고려할 경우 EU와 일본은 실질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3-4. 미국, EU, 일본의 AMS 현황

	미국(2001)	EU (2001)	일본(2002)
지급 가능 AMS 한도(A)	191억 달러	671.6억 유로	3조 9,729억 엔
실제 지급한 AMS (B)	144억 달러	392.8 억 유로	7,300억 엔
(B/A)*100 (%)	75.4	58.5	18.4

- EU는 실제 지급 AMS가 양허수준 대비 약 60%에 불과, 이미 40%를 감축한 수준이며, 향후 블루박스의 활용 및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으로 추가적인 20~30% 감축은 실질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본도 쌀의 관세화 통해 양정을 개편, 이미 80% 이상 감축한 수준이다.
- 그러나 미국은 지난 『2002년 농업법』에서 새롭게 도입한 CCP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새로운 블루박스에 포함되어 어떠한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 부담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01년 기준으로 AMS를 25% 감축한 상태이지만, 미국이 제시한 AMS 60% 감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추가로 35%, 금액으로 약 70억 달러 감축이 필요하다.
- 이 경우 CCP가 현재와 같이 감축대상보조로 분류될 경우 추가 35% 감축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CCP 지급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6개 품목(밀, 옥수수, 귀리, 쌀, 면화, 땅콩)에 총 7.5억 달러이며, 그 액수는 크지 않으나, 향후 국내가격의 변동에 따라 최대 15억 달러가 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AMS 감축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들어 CCP의 새로운 블루박스 적용을 조건으로 60% 감축을 제안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최소허용보조(de-minimis) 기준 인하

- EU와 일본 등 주요 수입 선진국들은 최소허용보조 수준이 기준보다는 상당히 낮은 실정이며(우리나라도 유사), 미국만이 약 3.6%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의 기준 5%(농업총생산액의)를 50% 감축하여 2.5%로 낮추자는 입장인데 반해 EU는 미국 압박을 목적으로 80% 감축(1%까지 인하)을 제시하고 있다.

표 3-5 주요국의 de-minimis 사용 수준

	미국(2001) (달러)	EU(2001) (유로)	일본(2002) (엔)	한국(2002) (원)
농업총생산액(A)	191억	2,464억	8조 9,297억	33조 4276억
최소허용보조 사용액(B)	70.5억	14.4억	436억	5,165억
(B/A)*100 (%)	3.6%	0.6%	1.0%	1.6%

- 미국과 EU의 절충과정에서 EU가 미국의 국내보조 감축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미국이 시장접근분야에서 EU의 어려움을 인정할 경우 최소허용보조의 기준은 2.5%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개도국의 경우는 AMS가 없는 국가는 현행 10%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등 AMS를 사용하고 있는 개도국은 현행 10%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준인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10%→ 5~7.5%).

다. 새로운 블루박스에 대한 추가 제약

- 미국의 CCP 사용 수준을 보면 2003년 현재 쌀, 면화, 땅콩 등에 대한 CCP 지불이 해당 품목 농업생산액의 2.5%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여기에 *de minimis* 기준 1%가 추가될 경우, 미국이 EU의 국내보조제안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6 미국의 CCP 지급 수준: 2003년

단위: 억 달러

	밀	옥수수	귀리	쌀	면화	땅콩
생산액 (A)	54.4	189	9.8	9.25	37.9	10.0
CCP 지급액 (B)	0.28	3.4	0.04	1.19	1.68	0.89
(B/A)*100 (%)	0.5	1.8	0.4	12.9	4.4	8.9

- 특히 최근 2007 농업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WTO규정이 미국의 농업 정책을 외부적으로 간섭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으로서는 EU의 국내보조 제안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3. 우리나라의 국내보조 현황과 시사점

가. 현황

- 우리나라의 현행 무역왜곡보조 지급 현황을 볼 때 대부분의 보조가 AMS에 치중되어 있고, 최소허용보조(de-minimis)를 일부 지급하고 있는 반면, 블루박스의 사용실적은 아직까지는 없다<표 3-7>.
- AMS의 경우 2002년 기준으로 양허수준은 약 1조 6천억 원 정도인 반면, 실질 지급수준은 1조 5천억 원 정도로 약 94%의 소진률을 보이고 있다.

표 3-7. 우리나라의 국내보조 현황

단위: 10억원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Total AMS	Bound AMS	2,183	2,106	2,029	1,952	1,875	1,798	1,721	1,644	1,567	1,490
	Current AMS	2,075	1,967	1,937	1,563	1,552	1,691	1,631	1,550		
de minimis	품목특정	33	53	262	258	82	112	184	287		
	품목불특정	249	290	393	526	405	413	397	503		
	소계	282	344	655	784	487	525	581	790		
Blue Box		-	-	-	-	-	-	-	-	-	-

자료: WTO 국내보조 통보자료<www.wto.org>;

주: 우리나라의 국내보조 실적 최종 통보 연도는 2000년임.

표 3-8. 우리나라의 농업총생산액

단위: 10억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농림업총생산액	29,052	30,271	30,748	33,062	33,001	33,633	33,445	33,016
농업생산액	28,129	29,258	29,639	31,857	31,829	32,447	32,164	31,809
농림업총생산액 5%	1,453	1,514	1,537	1,653	1,650	1,682	1,672	1,651
농업생산액 5%	1,406	1,463	1,482	1,593	1,591	1,622	1,608	1,590
농림업총생산액 10%	2,905	3,027	3,075	3,306	3,300	3,363	3,344	3,302
농업생산액 10%	2,813	2,926	2,964	3,186	3,183	3,245	3,216	3,181

- De-minimis의 경우 기존 URAA에 따르면 해당연도 농업생산액의 5%(선진국) 또는 10%(개도국)이었고, 이러한 기준 아래서 각 회원국은 *de minimis*를 활용해 왔다. 이를 우리나라의 2000~02년³⁾ 평균 농림업총생산액 (33조 3천0억)을 기준으로 보면 (표 3-8 참조) (1) 품목특정: 2조 2,930억 원 (2000~02년 농업생산액 10%, 단 쌀, 보리, 유채의 생산액은 제외) (2) 품목불특정: 3조 3,360억 원(2000~02년 농업생산액 10%)으로 약 5조 6천억 원이 사용가능하다. <표 5-1>에서 알 수 있듯이 2002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준이 약 7천 9백억 원에 정도임을 감안하면 소진률은 약 1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다.
- 블루박스의 경우 이용 가능한 수준은 2000~2002년 평균 농업생산액의 5%라고 가정할 때 1조 6,680억 원에 달하고 있고, 새로운 블루박스에 대한 DDA협상의 결과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가 도입한 쌀에 대한 변동직접지불금이 AMS에서 블루박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사용 가능성이 있다

나. 시사점

AMS 감축 수준 설정

- <표 3-9>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AMS 감축의무가 있는 회원국은 신규 회원국을 포함 총 35개국이며, <표 3-9>에서 알 수 있듯이 절대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대 AMS 한도를 가지고 있는 회원국은 전체의 42.1%인 EU, 다음이 전체의 25.3%인 일본, 전체의 13.4%인 미국 등의 순으로 이들 3개 회원국이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체의 1% 미만으로 9위를 차지하고 있다.

3)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 제시된 칸쿤 각료초안(Draft Cancun Ministerial Text)의 설정 기준연도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최하위 구간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발도상국을 위한 우대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경우, 감축률은 작게는 37%에서 많게는 60%에 이를 전망이다고, 개도국인 우대조치가 UR 농업협상 이행기간의 감축수준인 해당구간 선진국의 2/3 수준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25~40%가 될 가능성이 있다.

표 3-9 주요 회원국별 AMS 비교

회원국	최종 이행연도	절대적 기준		상대적 기준
		AMS 양허수준 (백만 달러)	비중 (%)	AMS/농업생산액 (%)
EC(15)	2000	59,830	42.1	26.7
일본	2000	35,947	25.3	45.4
미국	2000	19,103	13.4	10.0
멕시코	2004	8,336	5.9	26.6
폴란드	2000	3,329	2.3	24.7
캐나다	2000	2,825	2.0	13.6
스위스	2000	2,521	1.8	55.9
한국	2004	1,291	0.9	4.7
노르웨이	2000	1,301	0.9	63.5
세계 총액		142,234	100.0	

자료: OECD. PSE/CSE database<www.oecd.org>, WTO(2005e).

표 3-10. 우리나라 품목별 AMS 지급실적

단위: 10억 원,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99-00 평균
쌀	2,016.0 (97.1)	1,909.9 (97.1)	1,884.3 (97.3)	1,509.8 (96.6)	1,503.2 (96.9)	1,647.2 (97.4)	1,575.2 (97.1)
보리	51.6 (2.5)	50.9 (2.6)	46.0 (2.4)	46.8 (3.0)	48.7 (3.1)	41.8 (2.5)	45.3 (2.8)
옥수수	6.0 (0.3)	5.6 (0.3)	5.7 (0.3)	6.2 (0.4)	-	-	-
유채	1.8 (0.1)	1.0 (0.1)	0.9 (0.0)	-	-	1.9 (0.1)	1.0 (0.1)
누에고치	-	-	0.0 (0.0)	-	0.1 (0.0)	-	0.1 (0.0)
합계	2,075.4	1,967.4	1,936.9	1,562.8	1,552.0	1,690.9	1,621.5

자료: WTO(2005d)

- 주: 1. ()은 총 지급실적 대비 품목별 비중임
 2. 하빈슨 초안에서는 품목별 AMS가 1999-2001년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함(WTO 2003).
 3. 우리나라의 국내보조 최종 통보연도는 2000년임.

- 우리나라의 경우 AMS의 대부분이 쌀에 이용되었으나 (표 3-10 참조), 최근 농정 개혁을 통해 쌀 수매제도를 철폐하고, 미국의 CCP에 해당하는 변동직접지불제 그린박스에 해당하는 고정직접지불제와 공공비축제 등으로 전환하였다 현재 변동지불제는 AMS에 분류되지만, 새로운 블루박스에 대한 DDA협상의 결과에 따라 블루박스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올해 약 6천억 원 규모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정직접지불금(허용보조)을 감안하면, 25%~40%수준의 AMS상한 수준의 감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품목별 AMS 상한 설정의 경우, 상한이 설정되면 우리나라는 쌀, 보리, 옥수수, 유채, 누에고치 등 5개 품목 이외에 AMS 지원이 불가능하며, 최소허용보조의 감축 가능성을 고려할 때 품목 특정한 보조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농산물 수입국이 정책신축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기준기간에 AMS 실적이 없는 품목에 대해 AMS 정책을 배제함으로써 AMS 감축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국가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허용보조(de-minimis)의 감축 수준 설정

- 현재 de-minimis는 농업생산액의 5%(선진국) 또는 10%(개도국)의 기준 아래서 활용되고 있으나, de-minimis의 감축 여부를 협상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감축이 예상된다.
- 우리나라의 2000년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는 옥수수, 마늘, 쇠고기, 콩 등 20여 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지급하고 있으며, 옥수수, 마늘, 기타곡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해당 품목 생산액의 5% 미만의 수준이다<표 3-11>.
- 10%의 허용한도 대비 최소허용보조 수준이 높지 않아 현 상황에서 50% 감축은 큰 어려움이 없지만, 최소허용보조의 감축은 AMS가 대폭 감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시장개방에 따른 품목별 정책조치를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원활한 농정개혁을 위해서 최소허용보조의 감축면제가 중요하며, 불가피 할 경우 감축률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1. 2000년 우리나라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 활용 현황

품목별 생산액 대비 보조 비율			
1% 미만	1-2.5%	2.5-5%	5-10%
닭고기, 감귤, 사과, 배, 감자, 고추, 약용작물, 화훼류, 달걀, 기타 채소, 돼지고기, 보리맥, 기타 과일, 버섯, 쇠고기	인삼, 밤	콩, 누에고치	옥수수, 마늘, 기타곡물

자료: WTO 국내보조 통보자료<www.wto.org>.

주: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는 2000년 농업생산액의 1.25% 수준임.

총 무역왜곡보조(OTDS)의 감축 수준 결정

- 우리나라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은 블루박스와 허용된 최소허용보조의 설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농업생산액의 5~10%를 최소허용보조 산출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OTDS는 5조 9,720억 원~8조 7,870억 원, 이행초기 OTDS의 기준수준은 총액의 80%인 4조 7,780억 원~7조 290억 원에 달한다.

< 기본골격에 따른 무역왜곡보조 총액 시산(예시) >

- 최종 양허수준 AMS: 1조 4,900억 원
- 블루박스: 1조 6,680억 원(2000~02년 농업생산액 5%)
- 허용된 최소허용보조
 - 품목특정: 2조 2,930억 원
(2000~02년 농업생산액 10%, 단 쌀, 보리, 유채의 생산액은 제외)
 - 품목불특정: 3조 3,360억 원(2000~02년 농업생산액 10%)
-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 8조 7,870억 원
- OTDS 기준 수준: 7조 290억 원(OTDS의 80%)

- 주: 1. 기준연도는 칸쿤 각료초안(데르베즈 초안)에서 제시된 블루박스의 기준연도로 가정함
2. 최소허용보조는 해당 품목과 전체 농업생산액을 기준으로 품목특정과 품목불특정 보조로 구성되는데 이를 모두 감안할 경우 중복산출의 문제가 발생됨 추후 협상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것임
3.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 산출시 해당 품목 생산액의 10%를 기준으로 할 경우 AMS와 중복산출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여기서는 AMS 산출시 포함될 품목(쌀, 보리, 유채)의 생산액을 제외함.

- AMS가 최소 25% 최대 30% 감축되고, 허용된 최소허용보조가 현행 개도국의 10% 기준을 유지하거나 최대 5% 기준으로 감축된 이후 블루박스를 추가 도입

할 경우 이행기간 말 무역왜곡보조 총액은 5조 5,250억원~8조 4,140억원으로 4~37% 감축한 것에 해당한다<표 3-12>. 따라서 우리나라가 현행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개별 감축대상보조를 감축할 경우 이행초기 무역왜곡보조 총액의 20% 감축 조건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특히 de-minimis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의 경우 무역왜곡보조 총액의 일시 감축은 상당한 부담이 되며, 일시적 감축 폭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협상 전략이 요구된다.

표 3-12. 무역왜곡보조 총액 시나리오별 감축

단위: 10억 원

시나리오		총액	1	2	3	4	5	6	7	8	9	10	감축률 (%)
1	AMS 25% 감축 DM 10% 유지	8,787	8,749	8,712	8,675	8,638	8,600	8,563	8,526	8,489	8,451	8,414	4.2
2	AMS 25% 감축 DM 5% 유지		8,468	8,149	7,830	7,512	7,193	6,874	6,556	6,237	5,918	5,600	36.3
3	AMS 30% 감축 DM 5% 유지		8,460	8,134	7,808	7,482	7,156	6,830	6,504	6,178	5,851	5,525	37.1

블루박스 및 그린박스 대응

- 우리나라도 올해를 시작으로 쌀에 대한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변동직접지불제 고정직접지불제, 그리고 공공비축제도 등의 전환하였다. 쌀에 대한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블루박스과 그린 박스의 규정에 대한 논의가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음을 의미하다.
- 예를 들어, 현재 변동직접지불제도는 AMS에 포함되어 있지만, 미국의 CCP가 새로운 블루박스로 포함될 경우, 블루박스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어, 농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블루박스의 상한이 2004년 AMS 양허수준과 비슷할 정도로 크다는 점을 감안 관련 협상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직접지불의 경우 G20 등은 기준기간 고정 및 상한 설정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추가될 경우,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제도에 큰 제약이 가해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정직접지불을 위한 기준기간이 고정되고 이의 상한이 설정되고, 변동직접

지불제도가 AMS에 포함되는 최악의 경우, FTA/DDA에 의한 시장개방이후에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정책 도구를 다시 개발해야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IV. 요약 및 결론

- DDA농업협상은 2006년 4월말까지 세부원칙을 도출한다는 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는 시장접근 분야의 관세 감축 민감품목, 그리고 특별품목의 대우 문제, 국내보조 분야의 신규 블루박스에 대한 추가 규정문제, 수출경쟁 분야에서의 수출 국영무역 문제 등 실질적으로 민감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회원국들 간의 이견의 폭이 크기 때문이다
- 이러한 이견의 배경에는 브라질로 대표되는 신흥 농산물 수출국의 등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국내보조를 대폭적으로 감축한 이후에도 보조에 의존하지 않는 이들 신흥 농산물 수출국과 국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한 것으로 보여 국내보조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EU는 지역 내 농산물 소비라는 CAP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시장접근 분야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향후 협상의 진전 여부는 미국과 EU가 DDA 협상 이후의 세계 농산물 시장 구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개도국 지위 유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협상에서의 브라질 인도 등의 위치를 감안할 때 개도국 지위 유지는 모든 분야에서의 우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의 관세감축을 받아들이더라도 협상력을 민감품목과 특별품목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의 우리나라 농정개혁의 핵심은 쌀에 대한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변동 직접지불제, 고정직접지불제, 그리고 공공비축제로 대체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농정의 변화는 국내보조 분야의 협상의 관심사항이 그 동안 중요시 되어왔던 AMS에서 새로운 블루박스 그리고 그린박스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 블루박스와 그린박스 보조는 개방화 시대의 우리 농업생산자의 소득보존을 위한 마지막 도구임을 감안하여 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문헌

서진교, 임소영, 김상현, 조규대, 이재옥. 2005. "DDA 농업분야 Modality 협상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5-14.

조규대, 서진교, 이재옥, 김상현, 임소영, 송유철. 2005. "DDA 농업협상 국내보조분야 협상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5-48.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전략

2005. 2. 20

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김도훈

1. 서: DDA NAMA 협상의 진전 상황

- 2005년 12월 13-18일 사이에 홍콩에서 열린 「제6차 WTO 각료회의」는 2003년 9월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 도하 개발 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DDA) 각 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협상의 결과를 총정리하고 향후의 일정을 결정하는 등의 성과를 올림으로써 DDA에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
- 다만, 당초 기대되었던 각 분야별 협상의 핵심의제에 대한 합의는 대부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
- 非농산물 시장접근협상 (Negotiation on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의 경우에도 핵심의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는 정도의 성과
- 따라서 NAMA를 비롯한 DDA 협상의 가장 중요한 협상 내용은 지금부터 2006년 말까지 결정될 것으로 전망
- NAMA는 DDA 협상의 틀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협상 분야인① 농업 ② NAMA ③ 서비스 ④ 규범 ⑤ 개발 ⑥ 무역원활화 ⑦ 무역과 환경 ⑧ TRIPs 등의 8개 분야 중에서 규범 협상과 함께 우리나라가 DDA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올려야 할 분야로서 선진국 및 개도국들의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유도해야 할 분야
- 우리 경제가 점점 더 공산품 분야의 수출에 의존하여 성장 발전해 나가는 상황,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무역대국들 가운데 가장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에 뒤처져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산품

에 대한 우리의 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

- 특히, 최근 우리의 수출구조가 점차적으로 개도국의 비중이 높아
가고 있는 가운데, 개도국들의 시장개방이 중요한 협상 목표로 부
각
- 그럼에도 불구하고 NAMA 협상 분야는 우리나라가 취약한 경쟁
력을 보이고 있는 수산물, 임산물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가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협상전략을 펼치는 데에 한계를 노정

2. NAMA의 주요 쟁점 분야와 주요국의 입장

- NAMA 협상 그룹에 Doha 각료선언에서 위임한 협상의 주요 요소
는 비농산물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관세(high tariff), 관세정점
(tariff peak), 경사관세 (tariff escalation)를 해소하여 실질적인 시장
개방을 이루는 것으로 집약
- 다만, DDA 협상의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개도국들의 부담
을 감안하여 개도국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차별화된 취급”
(Special & Differentiated Treatment)을 할 것을 규정

(1) 관세감축공식

- 협상에 참여하는 각 회원국들이 NAMA가 다루는 모든 품목들에
대한 자국 관세를 감축하는 방식을 포괄적으로 결정하는 분야로서
NAMA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간주되어 왔으며
NAMA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국 모든 품목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
는 요소인 만큼, 가장 많은 논의가 전개되었으나 아직 협상에서 결
정해야 할 요소가 많이 남아 있는 분야
- 초기에는 각국의 평균 관세율을 감안하여 관세를 감축하는 방식인
지라르 공식이 개도국들의 지지를 받고 높은 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인 스위스 공식이 선진국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양측
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한 분야

-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되 개도국에게는 선진국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관세감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중계수 적용을 제안함으로써 협상의 돌파구 마련에 성공
 - 그러나, 아직도 관세감축률 조정을 위한 계수(조정계수)의 간격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이견이 매우 큰 상황
- 주요 개도국들은 선진국에 적용될 스위스 공식 조정계수의 수준을 5 이하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미 2-3%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선진국들의 관세인하 효과보다는 평균 관세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국가들의 관세인하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 현재 실행관세의 평균 수준이 7.5% 수준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관세율이 2.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 반면, 개도국들은 개도국들에 적용될 조정계수의 수준을 30 이상으로 주장하여 가능한 한 그들의 고관세 수준을 유지하려는 의도
 - 이렇게 양측에 적용되는 조정계수의 간격이 클 경우 선진국들의 관세 감축률은 매우 높게 되어 관세정점은 제거될 가능성이 높으나, 개도국들의 고관세 해소라는 NAMA의 다른 하나의 중요한 협상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
- 한편, 선진국들은 선진국에 적용될 스위스 공식 조정계수의 수준을 10 전후, 개도국에 적용될 조정계수의 수준을 15 전후로 각각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선진국 조정계수를 적용받게 될 우리나라는 평균관세율이 3.65% 정도로 현재의 실행관세 평균 수준에서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감축될 전망
 - 이렇게 양측에 적용되는 조정계수의 간격이 작을 경우 현재 평균 관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개도국들의 관세감축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예를 들면, 평균관세율이 27.8%를 보이고 있는 인도의 감축 후 평균관세율은 9.5% 수준) 개도국들의 반발이 매우 큰 상황

(2) 미양허 품목의 처리

- WTO 관세인하 협상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관세는 양허관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회원국들 사이에 이견이 없으나 선진국의 대부분과 개도국 중 일부 국가를 제외한 상당수의 국가들이 NAMA 협상 대상 품목들에 대한 관세를 100% 양허하지 않은 상황
- 따라서, 이들 미양허 품목들의 경우 각국이 현재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실행관세를 이용하여야 하지만 실행관세를 그대로 기준관세로 사용하면 이들 미양허 품목들의 관세가 일시에 지나치게 삭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므로 미양허 품목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반발이 크므로 미양허 품목의 실행관세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협상의제로 대두
 - 일반적으로 일부 품목을 양허하지 않은 이유가 동 품목들의 수입에 대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실행관세를 신중적으로 운용하려는데 있기 때문에 이들 품목들의 협상 기준 관세율로서 실행관세를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 국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더욱이 100% 양허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많은 나라들이(특히 많은 개도국들의 경우) 양허관세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실행관세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예를 들면, 브라질의 경우 양허관세 평균이 30% 가까운 수준인 데 비해 실행관세는 10%를 겨우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 감안하면 실행관세를 그대로 협상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추세
- 결국, 미양허 품목의 현행 실행관세를 적절한 방법으로 상향 조정하여 이를 협상의 기준 관세로 삼는 것에 대체로 합의된 상황
 - 상향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는 ① 개도국들에 의해 주장된 실행관세의 두 배를 기준관세로 채택하는 방법 ② 선진국들에 의해 주장된 실행관세에 일정 수준의 %포인트를 더하여 (mark-up) 이를 기준관세로 채택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어 왔으나 지금은 대체로

mark-up의 방법에 의견이 수렴되는 상황

- 그러나, 개도국들의 실질적인 시장개방을 유도하려는 선진국들이 낮은 수준의 mark-up (5-10%포인트)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은 30%포인트까지의 mark-up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3)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적용

- NAMA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주장되고 있는 바와 같이 과감한 수준의 관세감축을 유도하는 조정계수가 적용될 경우 각 회원국들 모두가 일부 품목의 관세율이 지나치게 감축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
 - 특히 부담을 느끼는 품목들의 경우 각국의 평균관세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높은 관세일수록 더욱 감축폭이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 공식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그 부담은 크게 증폭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일부 국가들이 이러한 민감품목들에 대해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관세감축을 완화해 주는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감축의 신축성 부여”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
- 한편, 개도국들의 경우 개도국들에 특별히 적용할 것으로 합의된 이른바 “7월 패키지 8항”에 의해, 일부 품목 (전체의 5%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감축을 면제받거나 그보다 더 많은 품목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감축을 완화해 주는 신축성 조치를 이미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러한 모든 국가에 걸친 신축성 적용에는 소극적
 - 다만, 일부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이러한 “7월 패키지 8항”의 신축성을 포기하는 대가로 조정계수를 개도국들에게 높은 수준을 적용하는 이중계수 방식을 제의하였으므로 이러한 개도국들의 신축

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이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

(4) 분야별 무세화

- 선진국들은 관세인하공식에 의한 개도국 관세인하 유도가 조정계수의 이중 적용, 개도국의 일관된 신축성 확보 주장 등으로 용이하지 않음을 인식하여,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상품 분야를 선정하여 아예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화 방식을 별도로 추진할 것을 주장
 - 선진국들이 이러한 방식을 강하게 선호하는 이유는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분야별 무세화 협상으로서 체결되었던 ITA (정보통신협정)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이들 ITA 대상품목들의 국제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기인
 - 다만, 분야별 무세화 논의는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극복해야 할 과제
- 개도국들의 참여 의사 미흡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분야별 무세화가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
 - 각 회원국들이 자국이 유리한 분야를 분야별 무세화 대상 품목으로 제시하고 있어, 많은 회원국들의 공통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를 찾아내는 문제
 - 이러한 상품 분야를 찾아내더라도 분야별 무세화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ITA와 같이 참여하는 국가들의 교역 수준이 세계 무역 (혹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 (critical mass)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

(5) 비관세장벽

- NAMA에 참여하는 WTO 회원국들 모두가 관세감축보다도 오히려

비관세장벽의 제거가 더욱 중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철폐 대상이 되어야 할 비관세장벽의 적시방법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 분야는 의장 및 WTO 사무국의 주도로 각국이 겪고 있는 비관세 장벽의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분류하는 수준의 작업이 진행
- 이렇게 비관세장벽의 유형별 분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 문제를 어떤 협상 그룹에서 다루어야 할지도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는 상황
- 이러한 논의 방법이 매우 비효율적임을 인식하여 일부 선진국들은 특정 상품 분야를 선정하여 동 상품 분야와 관련된 모든 비관세장벽을 적시하고 철폐해 나가는 방식의 협상방식을 주장

(6) 개도국에 대한 S&D 제공

- 많은 개도국들 (그 중에서도 저개발 개도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크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개도국들에게 관세감축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등의 차별화된 취급 (S&D Treatment)을 제공하는 것은 DDA 협상 전반을 지배하는 원칙
- NAMA에서도 저개발 개도국에 대해서는 이미 관세감축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 바 있으나 일반 개도국에 대한 S&D 공여 내용에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이견 표출
 - 대표적으로 “7월 패키지 8항”의 적용, 이중계수의 적용 등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이를 S&D로 간주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견해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 개도국들은 이러한 조치들 이외에도 개도국들이 당연히 선진국과는 차이가 나는 즉 완화된 수준의 부담만을 져야 한다는 불평등 상호주의 (less than full reciprocity)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3. 우리나라의 협상 추진 동향

- 우리나라 NAMA 협상단은 DDA 협상 분야 가운데 NAMA가 우리의 협상 이익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임을 인식하고 많은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해관계가 비슷한 국가들과 friends group을 형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
 - 특히 우리나라는 NAMA의 협상목표인 고관세, 관세정점, 경사관세 등의 문제가 없는 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타국들에 비해 한층 자유로운 입장에서 공세적 협상전략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NAMA 협상범위에 우리나라가 비교적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인 수산물과 임산물이 포함됨으로써 이들 분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공세적 입장에서 적극적인 협상전략을 펼치는 데에 한계를 노정

(1) 관세인하공식

- 협상 초기에 우리나라는 지라르 공식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 왔으나, 이중계수의 스위스공식이 제안된 이후로는 이 방식을 지지
 - 다만, 이중계수의 간격을 가능한 한 좁히고 다른 한편으로 선진국에 적용되는 조정계수의 값을 10-15 사이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경주
 - 실제로 우리나라에 조정계수 10을 적용받고 개도국들에 조정계수 20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수출증대 기대효과가 수입증대 기대효과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

(2) 미양허 품목의 처리

- 우리나라는 많은 개도국들에 비해서는 미양허 품목의 비중이 낮은

편이나,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인 수산물의 미양허 비중이 높은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따라서, 개도국들의 시장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는 협상의 일반적 목표와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상호 배타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운 상황

(3)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적용

- 우리나라는 NAMA 협상범위에 수산물, 임산물이 포함됨으로써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적용을 일관성 있게 강력하게 주장
- 이러한 우리나라의 주장에는 일부 국가들이 동조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이 논의를 회피하고 있는 추세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소수의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을 확보하는 대가로 나머지 전체 품목에 대한 관세감축의 폭을 소폭상향 조정하는 대안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여타 회원국들의 미온적 반응으로 정식 제안서로 제출하지 못한 상황

(4) 분야별 무세화

- 우리나라는 분야별 무세화 논의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에 유리한 분야를 찾아내어 분야별 무세화 분야 후보로 제시하는 한편, 여타국이 제시한 대상 분야의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 다만, 수산물 등의 수세적 입장의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동 분야가 채택되지 않도록 소극적인 협상자세 견지

(5) 비관세장벽

- 우리나라는 비관세장벽 논의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
 - 지금까지 의장 및 사무국이 요청한 비관세장벽 유형에 대해서 적시하여 제출
 - 나아가 전자산업 분야의 비관세장벽을 적시하고 이를 철폐하자는 취지의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 분야의 협상을 주도

(6) 개도국에 대한 S&D 제공

- 우리나라도 저개발 개도국에 대하여 관세감축 면제 우리 시장의 우선적인 개방 등의 조치에 동의하는 등 S&D에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 일반적인 개도국들에게도 이중계수의 적용 “7월 패키지 8항” 적용, 거기에 개도국들이 주장하는 이 밖의 분야에서의 “less than full reciprocity” 취급 등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에는 반대하는 입장
 -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개도국들의 지나친 자유화 유보 자세는 경계하는 입장

4. 홍콩 각료회의 합의 내용

- 지난해 12월에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NAMA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협상의 원칙을 확인
- 복수계수의 스위스 관세감축공식 (Swiss Formula with Coefficients) 채택
 - 관세정점, 고관세, 경사관세 등 삭감 또는 철폐 개도국 S&D 및 불완전 상호주의를 달성하는 수준으로 동 공식의 계수를 결정
- 모델리티의 중요 (integral) 요소로서 S&D와 관세감축 의무상 불완

전 상호주의의 중요성 재확인

- 종가세 상당치, 품목범위 관련 그간의 성과 평가 및 품목범위에 대해서는 일부 잔여쟁점에 대한 조속한 합의 도출
- 비강제적 (non-mandatory) 참여 방식으로 분야별 무세화가 추진중임을 인식
- 미양허품목에 대한 기준 세율 도출 방식으로서 비선형mark-up 방식 채택
- 특혜 잠식 문제와 소규모 경제국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 모색
- 비관세장벽 (NTBs) 관련 그간의 논의 성과 및 접근 방안(양자, 수직적, 수평적 접근 방안)에 대한 평가
 - 구체적인 협상안을 가급적 조속 제출토록 권장
- 협상 모델리티 합의 시한 및 양허안 제출시한을 각각 2006. 4. 30 및 7. 31로 합의
- DDA 협상의 개발목표 (development objectives) 진전과 관련, 개도국에 대한 농업 및 NAMA 시장접근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이를 위해 농업 및 NAMA에서의 시장접근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목표 (ambition)가 S&D 원칙과 부합되도록 균형적 비례적 (balanced and proportionate)으로 달성
- OECD는 비공식적인 paper를 통하여, 홍콩 각료회의 이후 NAMA 협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이슈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 (Ken Heydon, 2006 참조)
 - 스위스 공식의 조정계수의 수(단수 혹은 복수) 및 수준

- 개도국들에 대한 "less than full reciprocity" 적용의 의미
- 분야별 (무세화) 협상
- 기존 특혜의 침해 현상

5. 향후 우리의 협상 전략

(1) DDA NAMA에 임하는 총론적 자세

- DDA 협상에 참여하는 우리나라의 실익은 NAMA 협상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변함 없는 중요한 협상 목표
 - 반덤핑 협정 등 규범 협상에서도 어느 정도의 실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실질적 시장개방의 이익은 역시 NAMA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업 및 서비스 분야의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선진국 및 개도국들의 시장개방을 확보할 필요
 - 그러나, NAMA의 제약요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민감 분야인 수산물 분야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긴요하므로 비록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일부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의 대가로 여타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감축 수용 등의 대안을 적극 설득하는 노력 필요 → 이렇게 신축성이 확보될 경우 우리나라의 NAMA 협상 전략은 비교적 자유로워지면서 공세적인 자세를 견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제조업 업계가 NAMA를 통한 시장개방의 중요성에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오히려 이들 제조업들 중에서 시장개방에 다소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서만 NAMA 협상에서 적극적인 협상자세를 취하는 것에 경계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점

(2) 관세인하공식

- 우리의 협상력은 역시 우리나라에 적용될 선진국 적용 조정계수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어하는 데 집중될 필요
 - 조정계수 10 이하는 대체로 실행관세율 수준이 절반 이하로 감축 되므로 가급적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
- 동시에 개도국들에 적용될 조정계수의 수준은 가능한 한 15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

(3) 분야별 무세화

- 수산물 등의 민감품목을 제외한 제조업 분야에 대한 무세화 논의에
은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 특정 산업 분야에서 일부 품목들에 대해 다소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동 산업 분야에 대한 분야별 무세화 논의조차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협상 자세는 불만스러운 것으로 평가

(4) 미양허 품목 처리

- 우리나라는 DDA NAMA 협상에서 미양허 품목을 모두 양허한다는 원칙 하에 다만 수산물 등의 민감품목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mark-up 수준을 비교적 높은 수준을 확보한다는 전략

(5) 비관세장벽

- 우리나라는 비관세장벽 논의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국가들 중 하나이나 향후 이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협상 결과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 방식을 동조하는 그룹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좋은 협상 전략인 것으로 평가

참고문헌

- 김도훈 외, 「DDA 공산품 시장접근 협상에 따른 주요 산업별 영향분석 및 협상 방안」, KIET 용역연구 자료, 2002. 12.
- 김도훈 외, 「DDA 협상에서의 개도국 S&D 공여와 그 효과」, KIET 용역연구 자료, 2003. 3.
- 김도훈 외, 「WTO/DDA 관련 주요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 확대를 위한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전략 연구」, KIET 용역연구 자료, 2004. 9.
- 김도훈 외, 「DDA NAMA 협상 조정계수의 우리 수출입에 대한 영향 분석」, KIET 용역연구 자료, 2005. 11.
- 외교통상부, 제6차 WTO 각료회의 결과 보고서 2006. 1.
- 외교통상부, 제6차 WTO 각료회의 관련 참고자료 2005. 12.
-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제8차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 관계 부처 대책회의 자료, 2005. 10. 31.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WTO/DDA 협상동향 및 향후 전망」 민관합동포럼 개최, 2005. 12. 2.
- Claude Barfield, The Doha Round, Bang or Whimper?, AEI Homepage, January 23, 2006.
- Ken Heydon, After the WTO Hong Kong Ministerial Meeting: What is at Stake?,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 No. 27, Janusay 2006

DDA 서비스 협상 동향 및 대응방안

2005. 2

통 상 교 섭 본 부
다자통상협력과장

- 목 차 -

1. 협상동향	1
2. 홍콩각료회의 서비스 협상 결과 및 평가	4
3. 우리나라 협상 동향	6
4. 우리나라에 대한 분야별 주요 개방 요청사항	9
5. 대응방향	11

첨 부 : 홍콩 각료선언문 서비스 부속서 주요내용

1. 협상동향

가. 최근 서비스협상 동향

☐ 2001년 DDA 발족으로 협상 본격 개시

- 서비스 협상은 농업과 함께 UR협상 기설정의제의 하나로 DDA 협상의제 중 비농산물을 포함한 3대 시장접근협상 분야
- 협상은 R/O(request/offer) 방식으로 진행
 - 12개 분야 160여개 세부업종을 대상으로 각국간 요청서(Request)와 양허안(Offer) 교환을 통한 협상 진행

☐ 2003.3월로 1차 양허안 제출시한이 설정된 이후 2005.5월로 2차 양허안 제출시한이 다시 설정되었으나 양허안 제출실적은 저조한 상태

- 현재까지 제출된 양허안 수는 68개(EC 25개국 포함 92개국)
 - 32개 LDC 제외시, 양허안 미제출 국가는 24개국
 - 수정양허안은 25개(49개국) 제출
- 1차 양허안 제출 국가수는 증가하였으나 제출된 양허안의 질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

☐ 따라서 그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R/O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적 협상방식이 도입되어 협상의 재활성화 계기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브라질, ASEAN 등 개도국들의 강한 반대로 홍콩각료회의에서 보완적 협상방식은 채택되지 못함

☐ '05.12.18 홍콩각료회의에서 양허안 개선 목표 및 복수적 R/O 협상방식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 문안 부속서(C) 채택

※ 복수적(plurilateral Request/Offer)

- 기존의 개별국가대 개별국가의 R/O 대신 복수의 국가가 특정 국가들의 특정서비스 분야 개방을 집단적으로(collectively) 요청하고 집단적으로 협상하는 R/O방식

- 금년중 2월, 3월, 6월, 10월 4차례의 cluster회의 개최를 통해 홍콩 각료선언문에 따른 서비스협상 진행 예정

【보완적 협상방식 논의경과】

- EC 등 주요 선진국들은 협상부진이 현재의 양자적 R/O 협상방식의 근본적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다자적 복수적 방식을 병행하는 보완적 협상방식을 채택할 것을 주장, 2005년 하반기부터 동 이슈가 서비스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

- 우리나라, EC, 미국, 일본, 대만,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등이 numerical target 설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다자적, 복수적 보완적 접근방식 제안

- 2005. 9.23 파리에서 개최된 EC, 미국, 인도, 브라질의 G-4 각료회담 결과 서비스협상 진전을 위한 Core-group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서비스 협상 활성화를 위한 다자적 접근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 Core Group : 미국, 인도, 캐나다, EC,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브라질, 멕시코, 호주, 이집트, 칠레, 아르헨티나

- 이후 10월말 홍콩각료선언문에 포함될 서비스 문안에 대한 1차 의장 초안제시이후 그간 이에대한 회원국간 문안조정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나, 수량목표(numerical target)의 설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합의도출에 실패

- 이에따라 홍콩 각료회의전 numerical target 도입은 사실상 포기되었으며 대신 복수적 R/O도입에 콘센서스 형성
- 홍콩 각료회의시 G-90를 중심으로한 개도국의 반발로 제네바 프로세스를 통해 콘센서스가 형성된 복수적 R/O 또한 비구속적 성격으로 약화되어 채택

2. 홍콩각료회의 서비스협상 결과 및 평가

가. 주요 내용(상세 첨부 1 서비스 협상 부속서 주요 내용 참조)

- ☐ 양허안 개선의 목표를 설정하는 세부 가이드라인 도입
 - 각 mode별 양허수준 목표 등
- ☐ 복수적 R/O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여 협상방식의 효율화 도모
- ☐ 향후 협상작업 일정 수립
 - 복수적 R/O 양허 요청 : 2006.2월말
 - 제2차 수정 양허안 : 2006.7월말
 - 최종 양허안 : 2006.10월말

나. 평가

- ☐ 홍콩각료회의에서 서비스 부속서가 채택되기는 하였으나, 개도국들의 강한 반발로 보완적 접근방식의 핵심인 다자적 수량목표(numerical target)가 포함되지 못하였고, 복수적 R/O 협상방식 또한 자발적 성격으로 구속성이 약화되어 당초 선진국들이 추구했던 목표 수준에는 미달
- ☐ 그러나, 협상목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합의되고 복수적 R/O협상방식이 새로 도입되어 2월이후 복수적 R/O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양허 협상이 시작될 전망

- GATS의 unfinished business인 규범 협상(ESM, 보조금, 정부조달) 경우 홍콩 각료회의시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금번 DDA협상에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보조금의 경우 정보교환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향후 작업의 기초로 활용될 전망

- 단, 국내규제의 경우 현 협상 종료전까지 각료들이 채택할 수 있는 text를 개발할 것이 촉구됨으로써 국내규제 규범 제정을 위한 text협상이 금년중 본격화될 전망

3. 우리나라 협상 동향

가. 양허 요청서 제출 및 접수 현황

□ 우리나라는 36개 국가에 대해 양허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5개국으로부터 양허요청서를 접수

○ 작년말 현재 35개국과 총 98회 양자협상 개최

【양허요청서(request) 제출 및 접수 현황】

구분	상호제출	일방 제출/접수
우리가 제출 (36개국)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폴,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태국, 스위스, 노르웨이, 폴란드, 체코,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23)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몽골, 헝가리, 칠레, 이집트, 나이지리아, UAE,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13) - 우리만 위13개국에 제출
우리가 접수 (25개국)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폴,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태국, 스위스, 노르웨이, 폴란드, 체코,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23)	파나마, 모리셔스(2) - 위 2개국만 우리에게 제출

□ 양허요청서 제출

○ 제출국 선정 기준

- 주요 서비스교역 선진국 및 우리의 진출 가능성이 큰
아주지역 개도국
- 우리 관심분야별 주요 진출 대상국가

- 양허요청 선정기준
 - 시장의 향후 가능성 및 지리적 인접성 등을 감안하여 중국에 대해서는 12개 전 분야에서 요청서 제출
 - 우리의 개방정도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건설, 유통, 금융, 통신, 해운분야에서 다수 요청서 제출

□ 양허요청서 접수

- 각 회원국의 요청서는 WTO 분류상 12개 서비스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
 - 기존 미양허 분야에 대한 개방 요구
 - 법률, 보건, 의료, 교육, 우편송달 등
 - 현재 부분적으로 양허된 분야의 양허대상 확대 및 기존 제한 철폐 요청
 - 전문직 서비스(회계, 세무 등), 유통, 건설, 통신, 운송, 금융, 에너지 등

나. 우리 양허안 제출 동향

□ 2003.3월 1차 양허안(Initial Offer) 제출

- 법률, 교육, 국제배달(Courier) 등 26개 업종을 새로이 양허(총155개 세부업종 중 104개 양허)
 - 통신, 건설, 유통, 금융, 해운 등 분야는 기존의 양허 내용을 개선
 - 시청각 중 영화상영 및 라디오·TV 방송, 보건의료, 뉴스제공업 등은 미양허

□ 2005.5.31 2차 양허안(Revised offer) 제출

- Mode 4 전문직 계약공급자 CSS(contractual service supplier) 중 10개 직종 양허

▶ 양허분야

- ① 기계설치 · 보수 (건설 · 발전설비 제외)
- ② 기술자문 (첨단과학분야)
- ③ 회계사 (국내 회계법인 등에 대한 자문)
- ④ 건축사 (국내 건축사와 협업조건)
- ⑤ 경영컨설팅
- ⑥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
- ⑦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반 시행
- ⑧ 데이터 운영
- ⑨ 데이터 시스템
- ⑩ 자동차 설계

▶ 자격요건

- ① 외국 법인과 국내 법인간 이행기간 1년 이내의 서비스 공급 계약 체결
- ② 입국신청 전 동 법인에 1년이상 근무조건 및 체류기간을 1년 이내 계약기간으로 한정
- ③ 국내 관련 법령 및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학력 전문자격 및 전문적 자격과 능력에 기초한 경력 소유
- ④ 자국(외국) 법인으로부터 보수 수령

※ 2차 양허안 전문을 외교통상부의 DDA 홈페이지
(www.wtodda.net)에 게재하여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

4. 우리나라에 대한 분야별 주요 개방 요청사항

가. Mode 4

- ☐ 전문직 및 비숙련분야까지 계약서비스공급자의 국경간 이동 허용
- ☐ 수출국 법인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 전문가(IP)에 대한 국경간 이동 허용 등

나. 법률

- ☐ 외국로펌 및 외국법자문사(FLC)의 국내 변호사·로펌과의 동업·합작 등 상업적 연합,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다. 보건·의료

- ☐ 의료 및 치과 서비스, 병원서비스, 보육서비스 등 양허
- ☐ 의사(중의 포함),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외국 의료 전문인력의 국내 서비스공급 허용

라. 통신

-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확대

마. 시청각

- ☐ 스크린쿼타 철폐 내지 축소 등

바. 교육

- ☐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분교설립 허용
- ☐ 원격교육(Mode 1) 자유화 등

사. 금융

- ☐ 금융'양해(Understanding)' 채택
- ☐ Mode 3 관련 규제 철폐
- ☐ Mode 1, 2의 자유화 등

아. 뉴스제공업

- ☐ 외국통신사의 직배 허용

자. 회계.세무

- ☐ 국내회계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국내사무소 설치 국내 회계사와의 업무제휴, 합작, 국내회계사 고용 허용

5. 대응방향

가. 서비스 협상에 대한 기본입장

- 우리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여건 개선 노력
 - 유통, 통신, 건설, 해운 등 주요 인프라서비스 분야에서 해외진출 및 수출 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
- 개방요구를 우리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계기로 활용
 - 미양허 분야 및 양허 개선 요구를 받는 주요 분야에 대해 낙후된 국내 서비스산업 발전 계기로 활용
 - ※ 서비스업 노동생산성('01년) : 한국(100), 일본(200), 미국(228)

나. 복수적 R/O에 적극 참여

- 홍콩 각료회의시 새로 도입된 복수적 R/O협상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있는 인프라서비스를 중심으로 협상에 적극 참여
 - 유통, 해운, 건설, 컴퓨터, 통신 등 우리가 경쟁력있는 분야에 복수적 requesting 국가로 참여
- 복수적 R/O협상은 15개 분야별 프렌즈 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되, 구체적 시행방식에 대해서는 협상분야별로 신축성있게 추진될 전망
 - 2월 서비스 협상회의에서 분야별 모델 양허안/check list /menu/narrative 등 작성 및 요청 국가 선정 등 구체적 방안 논의
 - * 15개 프렌즈 그룹 : 시청각, 에너지, 물류, 우편/특급배달, 해운, 건설, 건축/엔지니어링, 환경, 컴퓨터, 통신, 법률, 금융, 항공, 교육, Mode 3 (기타 유통, mode 1 등 일부분야가 추가될 전망)

- 복수적 Request의 내용은 lowest-common-denominator가 되지 않도록 소위 “deemed request” 방식이 추구될 전망

첨부 : 홍콩 각료선언문 서비스 부속서 주요 내용

/끝/

[첨부]

서비스협상 부속서 주요 내용

가. 협상목표 (Objectives)

- 회원국들은 신규 양허 및 양허 개선에 있어서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래 목표를 길잡이(should be guided)로 사용
 - Mode 1
 - 현재 시장접근 수준 양허 상업적 주재 요건 삭제
 - Mode 2
 - 현재 시장접근 수준 양허, Mode 1이 양허된 분야에 대해서는 Mode 2도 양허
 - Mode 3
 - 외국지분 참여 수준이 향상된 양허, ENT 제거 또는 실질적 감축, 허용되는 법인 종류에 대해 더 큰 신축성이 부여되는 양허
 - Mode 4
 - 상업적 주재와 연계되지 않는 계약서비스공급자 독립 전문가 및 기업내전근자 사업상방문자 등에 대해 신규양허 또는 양허 개선
 - ENT 제거 또는 실질적 감축, 체재기간 및 기간 연장 가능성 명시
 - MFN 면제
 - MFN 면제의 실질적 감축 또는 삭제, 현행 MFN 면제의 적용 범위 및 기간 명시
 - 양허 기재
 - 양허기재 및 분류에 있어 명료성, 확실성, 비교가능성, 통일성 보장
 - 양허 guideline(2001.3.23 채택)을 준수하여 ENT 항목 기재

- 의장의 TNC 보고서 부속서(분야별/모드별 목표) 관련사항은 R/O 협상의 참고(reference)로서 회원국 고려 가능사항(may be considered)으로 언급되었으며, 의장의 TNC 보고서는 주석으로 처리
 - 단, TNC 보고서의 부속서는 법적 효력(legal standing)이 없음을 명시
- 2003.9월 채택된 LDC 모델리티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필요
- 규범 제정
 - GATS 10조, 13조, 15조의 규범 제정 협상을 완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 긴급수입제한조치(GATS 10조) : 서비스에 있어 가능한 ESM(긴급수입제한조치)의 운영과 적용에 관한 기술적·절차적 질문과 연관된 보다 집중된 논의 참여
 - 정부조달(GATS 13조) : 회원국 제안서에 중점을 둔 보다 집중된 논의 참여
 - 보조금(GATS 15조) : 협상목적에 필요한 정보교환을 신속히 하고 완수하기 위한 노력의 강화 및 회원국 제안서에 중점을 둔 보다 집중된 논의 참여
- 국내규제
 - GATS 6조 4 mandate에 의거, 국내규제 규범을 현 협상종료 전까지 개발
 - 각료들이 채택할 수 있는 text를 개발할 것을 촉구

나. 협상방식 (Approaches)

- 주 협상방식인 R/O방식의 강화 및 촉진
- 복수적 R/O를 아래 방식으로 도입 가능
 - 어떠한 회원국 그룹도 여타 회원국에게 특정분야나 모드에 있어서 집단적(collective) 양허요청안 제출 가능

- 집단적 양허요청안을 접수한 회원국은 GATS 19조 및 서비스 협상 가이드라인에 의거, 동 양허요청안을 고려(consider)해야 함.
- 복수적 R/O 협상은 개도국과 소규모 대표단의 제한된 협상 참가 능력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함.
- 소규모 경제 고려
- LDC 모델리티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강화 방법 개발
 - LDC 관심 분야 및 모드에 대해 특별우대 구조 개발
 - LDC의 개발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분야 및 모드 확인작업 지원 및 양허 이행
 - LDC에 대한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의 목표설정
 - 보고 및 검토 구조 개발
- WTO 사무국 등을 통해 개도국 및 최빈국에 효과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

다. 협상시한 (Timelines)

- 성공적인 협상타결을 위해 다음 일정 준수
 - 미제출 1차 양허안의 조속한 시일내 제출
 - 복수적 양허요청안은 2006.2월 또는 이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제출
 - 수정양허안을 2006.7.31까지 제출
 - 최종양허안 초안을 2006.10.31까지 제출
 - 상기 LDC 모델리티 이행을 위한 요건 충족을 수정양허안 제출 시한 이전에 완료하도록 노력

라. 협상 진전 점검 (Review of Progress)

- CTS SS는 부속서에 포함된 협상목표, 협상방식, 협상시한 등과 관련한 진전사항을 검토

DDA 규범협상의
쟁점 분석 및 협상전략

2006. 2

외 교 통 상 부
세계무역기구과

목 차

I. 개 관	1
--------------	---

II. 분야별 논의 동향	2
---------------------	---

1. 반덤핑 협상	2
-----------------	---

2. 일반보조금 협상	7
-------------------	---

3. 수산보조금 협상	8
-------------------	---

첨 부 : 반덤핑 분야 Friends 그룹 제안내용

I. 개 관

- WTO에서는 무역구제조치(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관련 분야를 “규범”이라 통칭
- 우리나라는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부터 반덤핑 협정 개정을 뉴라운드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2001.11월 도하 각료회의에서 “현행 반덤핑 협정, 보조금 협정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현행 협정을 개선(improve)하고 명료화(clarify)하는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
 - 수산보조금 관련 WTO 규율도 개선하고 명료화한다는데 명시적으로 합의
- 규범 협상의 성과, 특히 반덤핑 분야의 성과는 미국, EC 등이 농업, NAMA 등 DDA 협상 모든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지와 직접 관련되는 바, 여타 분야의 진전이 더딘 가운데 규범 협상도 부진한 상태
 - 하지만, 2006년 2월 협상회의에서 의장이 7월까지 규범 문안초안(Chairman's consolidated texts)을 작성할 계획임을 언급함으로써 논의에 진전이 있을 전망

II. 분야별 논의 동향

1. 반덤핑 협상

가. 협상 경과 및 최근 동향

□ 규범협상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분야로 개정 항목 발굴이라는 1차적 목표를 완결하고, 협정의 명료화 및 개정 논의단계를 지나, 현재 이슈별로 구체적인 개정 문안 중심의 논의를 진행

□ 반덤핑 조치가 남용되지 못하도록 WTO 협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반덤핑 Friends 그룹의 적극적인 활동이 이에 크게 기여

※ 반덤핑 Friends 그룹 : 한국, 일본, 칠레, 홍콩, 브라질,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대만, 코스타리카, 멕시코, 태국, 이스라엘 등

□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반덤핑 Friends 그룹의 일원으로 30여건의 공동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

○ 반덤핑 Friends 그룹은 2002년 개정이 필요한 33개 이슈를 발굴한 후, 2003~2004년중 약 20여개 세부 이슈에 대한 이슈별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반덤핑 협상을 사실상 주도

□ 반덤핑 Friends 그룹이 반덤핑 조사 개시에서 반덤핑 관세 최종 부과까지 전과정에서 대폭적이고 실질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 및 EC는 협정의 개정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참여

- 미국은 절차적 투명성 위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EC는 자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협정을 개정하자는 입장
- 인도, 이집트 등 개도국은 반덤핑 Friends 그룹 제안에 따를 경우 자국 조사당국의 부담이 지나치게 증대된다는 입장
- 2005년부터 반덤핑 Friends 그룹은 문안협상(text-based negotiations) 개시를 주장하였으나, 미국, EC 등의 반대로 현재까지 이슈별 논의 방식으로 협상 진행
- 홍콩 각료선언문은 “2006년중 협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른 시기에 의장이 협상의 기초가 될 종합적인 협정 개정 초안(consolidated texts)을 작성할 것”을 규정
 - 각료선언문에 의장 초안 제출 시한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2006년 2월 규범협상회의에서 의장은 7월까지 동 초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회원국간 타협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

나. 주요 쟁점 (Friends 그룹 주요제안은 별첨 참고)

(1) 일몰 규정(Sunset)

- Friends 그룹은 모든 반덤핑 조치는 5년후 종료되도록 할 것을 주장
 - ※ 현행 협정은 일몰 재심(Sunset Review)를 인정하여 조치 부과 5년후 덤핑 및 피해의 계속·재발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대부분의 경우 조치가 연장

- 또한, 반덤핑 조치 일몰 종료 후 1년간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두어 동 기간중에는 재조사 개시를 금지할 것을 주장
- 이에, 미국 및 EC는 덤핑 및 피해의 계속 또는 재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5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반덤핑 조치를 종료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
- 한편, 캐나다는 일몰 재심(Sunset Review)규정을 유지하되, 조사당국의 직권조사 규정을 철폐하고, 재심 관련 요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
- Friends 그룹은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하여 모든 반덤핑 조치는 5년후 종료하되 일몰종료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지는 않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회원국들은 상기 캐나다 제안이 더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는 입장

(2) 재심(Review)

- Friends 그룹은 재심에 적용되는 기준이 자의적임을 지적하며 원심 관련 규정들을 재심에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재심에 해당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주장
- 미국 등은 원심과 재심은 성격과 목적이 다르므로 동일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

(3) 최소부과 원칙(Lesser Duty Rule)

☐ Friends 그룹, 인도는 현재 임의규정인 최소부과 원칙을 강행 규정화 할 것을 제안

※ 최소부과 원칙 : 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다면, 덤핑마진(수출자의 자국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과 피해마진(수입국내 국내 산업의 판매 가격과 수출자의 수출가격)중 작은 수준만큼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

☐ 미국은 동 제안에 반대하고 있으나, EC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이므로 긍정적인 입장

(4) Zeroing 금지

☐ Friends 그룹은 덤핑 마진 산정시 zeroing을 금지할 것을 제안

※ Zeroing :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비교시 (-)덤핑마진(정상가격이 수출 가격보다 낮은 경우)을 합산하지 않고 0으로 처리하여 최종 덤핑 마진을 높이는 관행

☐ 미국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여 협상 진전이 부진

☐ WTO 패널은 원심에서의 zeroing관행은 협정에 위반이나, 미국 연례재심에서의 zeroing은 협정위반이 아니라고 판시 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에게 유리하게 판결

(5)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 Friends 그룹은 조사 당국이 대응 기업의 자료제출이 미진한 경우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facts available을 남용하여 덤핑 마진을 확대함을 지적하며, facts available의 사용 기준을 강화할 것을 주장

☐ 미국 등은 동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견

(6) 공익(Public Interest)

☐ Friends 그룹은 반덤핑 판정시 소비자 및 수입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국내 생산자의 이익 등 공익을 고려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

☐ 미국은 동 제안에 반대하고, EC는 이미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상기 제안을 지지

(7) 우회덤핑(Circumvention)

☐ 미국은 반덤핑 관세 부과후 제품을 일부 변경하거나 선적방법 등을 바꾸어 반덤핑조치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며 이런 우회덤핑을 규율하는 규정을 협정에 포함할 것을 주장

☐ 우리나라, 일본, 홍콩 등은 우회여부의 판단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조사를 통해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 규정은 필요없다는 입장

다. 향후 대응 방향

☐ 반덤핑 Friends 그룹과의 지속적인 공조 뿐 아니라 협상에서의 역할이 증대된 의장 및 미국, EC 등 주요 플레이어,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비슷한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강화하여 본격적인 문안 협상에 대비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이슈별로 쟁점 사항 및 우리 입장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필요

□ 현실적 개정 가능성과 국내적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협상에 참여

○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의 이익 극대화 측면에서 협상에 참여하여 왔으며 지금도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급속도로 부상하고 있는 일부 개도국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몇몇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조사당국의 입장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2. 일반보조금 협상

가. 협상 경과 및 최근 동향

□ 보조금 협상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개선하고 명료화하기 위한 협상이나, 협상의 주도그룹이 없어 반덤핑 협상에 비해 부진

□ 한동안 미국 등이 보조금 협상과 반덤핑 협상의 균형적 진전을 언급하며 반덤핑 협상의 가속화를 제어하려는 시도도 관측

□ 최근에는 비교적 경미한 이슈들이 제기되어 논의되었으나, 2006년부터 복수국간 회의도 개최하고 legal text 중심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변화된 모습

나. 주요 쟁점

□ 협상 초기에는 개도국들이 주장하는 허용보조금 부활 문제와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보조금 범위 확대 문제가 주로 논의

- 미국은 무역왜곡적 관행으로서의 보조금 규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지보조금의 확대, 간접보조금에 대한 규제, 정부의 투자 규제 등을 제안하였고, EC는 보조금 협정 전반, 특히 위장보조금 및 정부통제기관과 관련 개정 필요성 제기
- 인도, 이집트는 개도국 특례조항의 개정 및 강화를 제의하고, 필리핀, 베네수엘라는 허용보조금 조항의 재도입 및 개도국의 경제개발 목적 보조금의 허용을 주장
- 최근에는 미국, EC, 호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의 정의, 특정성, 금지보조금, 심각한 손상 등 현행 협정의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율하자는 것이 논의의 중점
- 브라질은 수출신용 및 보증 관련 규정의 정비를 제안하고 미국은 보조금 배분 방식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

다. 향후 대응 방향

- 보조금 협정의 명확화 논의에 적극 참여
 - 향후 보조금 규제 수준에 대한 논의로 발전될 경우 우리 경제 실정 및 타국의 보조금 지급 관행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
- 보조금 개념의 확대에 대해서 신중히 대처
 - 특히, 미국 등이 제안하는 보조금 규제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 필요
- 상계조치는 반덤핑과 같은 수입규제조치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강화를 지시

3. 수산보조금 협상

가. 협상 경과 및 최근 동향

□ 미국, 뉴질랜드, 호주, 아이슬랜드 등 Fish Friends 그룹의 적극적인 공세로 일반보조금에 비하여 협상이 더 많이 진행

※ Fish Friends 그룹 : 호주, 칠레, 에콰도르, 아이슬랜드,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미국 등

□ 도하 각료선언 채택 이후, 협상 초기에는 수산보조금이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별도의 규율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 진행

○ Fish Friends 그룹은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의 고갈과 무역왜곡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규율하는 별도의 규범을 만들 것을 요구

○ 우리나라, 일본, 대만은 수산자원의 고갈은 보조금의 지급보다는 관리정책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

□ 2003년 이후에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별도 규율의 필요성에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규율 체계(the nature and extent of discipline)에 대한 논의가 진행

○ Fish Friends 그룹은 수산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몇몇 무해한 보조금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하향식 방식(top-down approach)을 주장

○ 우리나라, 일본, 대만은 수산보조금의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금지하여야 될 보조금을 구체적,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한다는 상향식 방식(bottom-up approach)을 주장

- 2005년 2월 한국·일본·대만의 하향식 방식 반대 제안서 이후 규율 체계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각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개별 보조금을 유형별로 살펴보는 협상이 진행
- 2006년 2월 협상회의에서 의장이 7월까지 의장 초안을 작성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차기회의부터 실질적이고 기술적인 사안에 국한하여 논의해줄 것을 당부한 바, 수산보조금 협상도 legal text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

나. 주요 쟁점

-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보조금은 규제한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 규제 체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립 중
 - 개별 보조금을 살펴보는 형식의 협상에서도 규율방식에 대한 논의가 산발적으로 진행
- 현재 상향식 방식을 주장하는 국가가 소수이며, 브라질, 소규모 연안국 등 개도국들은 자국에게 개도국 우대(S&D)를 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Fish Friends 그룹의 수산보조금 전면 규제 입장을 지지하는 움직임
- 우리나라는 소규모어업, 양식업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설명하여 왔으며, 다수 회원국이 이를 지지

다. 향후 대응 방향

- 문안 협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자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산보조금만 금지대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대만, 일본과의 지속적인 공조 뿐 아니라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EC, 노르웨이 등과의 협의 강화
- 금지될 우려가 있는 보조금은 규제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추진

첨 부 : 반덤핑 분야 Friends 그룹 주요제안 내용

반덤핑 분야 Friends 그룹 제안내용

1. Sunset(일몰 조항)

□ Friends 그룹 제안 주요 내용

- 현행 협정상 반덤핑 관세는 원칙적으로 5년내에 종료하도록 하되, 이해 관계자가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일몰 재심(Sunset Review)에서 조사당국이 덤핑 및 피해가 계속 또는 재발될 것이라고 판정하는 경우 연장될 수 있도록 규정
 - 그러나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로 사실상 수출이 중단된 경우에도 덤핑 및 피해 재발 가능성(likelihood)이 있다고 판정하여 최장 20년 가까이 연장되는 사례가 빈발
 - ※ 미국의 경우 Malleable cast iron pipe fittings와 Stainless steel cooking ware에 대해 80년대 후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이후 지금까지 반덤핑 조치가 연장되고 있으며,
 - 90년대 후반 들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Stainless steel wire rod와 Stainless steel plate in coils도 2004년 후반 일몰 재심에서 반덤핑 조치가 연장됨.
- Friends 그룹은 모든 반덤핑 관세는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재심(Sunset review)없이 **5년내에 종료**하고 아울러 반덤핑 관세 종료 후 1년내에 재조사를 금지할 것도 제안
 - 이후, 상기 1년간 조사 유예기간 두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다시 제안

□ 여타국 입장

- 미국은 덤핑 및 이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예외 없이 5년이 지나면 반덤핑 조치를 종결시키는 것은 반덤핑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Friends 그룹안에 반대
 - 개정이 필요하다면 일몰 재심(Sunset Review) 관련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
- EU는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반덤핑 조치가 지나치게 연장 되는 데는 반대하나, 5년후에도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비교적 합리적인 입장
- 실제로 미국 통계를 보면, 국내산업이 Sunset Review를 신청한 반덤핑 case에서 70% 또는 93%의 조치가 연장

<96년 이전 조치에 대한 미국 Sunset Review 결과>

총계	257(100%)
- 국내산업의 이해가 없어서 반덤핑 조치 종결	59(23%)
- Sunset Review 시행	198(77%)
시행된 Sunset Review	198(100%)
- DOC에 의해 취소	0(0%)
- ITC에 의해 취소	59(30%)
- 반덤핑 조치 연장	139(70%)

<96년 이후 조치에 대한 미국 Sunset Review 결과>

총계	58(100%)
- 국내산업의 이해가 없어서 반덤핑 조치 종결	16(28%)
- Sunset Review 시행	42(72%)
시행된 Sunset Review	42(100%)
- DOC에 의해 취소	0(0%)
- ITC에 의해 취소	2(5%)
- 가격인상 약속 종료후 재조사 개시	1(2%)
- 반덤핑 조치 연장	39(93%)

<자료 : ITC >

- 캐나다는 일몰 재심(Sunset Review)규정을 유지하되, 조사당국의 직권조사개시 규정을 철폐하고, 재심 관련 요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
 - 다수 국가들이 동 제안이 합리적인 접근이라는 입장

2. Review(재심)

□ Friends 그룹 주요 제안 내용

- 현행 반덤핑 협정에서 재심은 크게 5가지로 분류 가능하며 이중 Friends 제안은 대부분 미국의 연례재심과 상황변화 재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자는 것임.
 - ① 미국 retrospective system하에서의 연례재심(9.3.1조)
 - ② 환급 재심(9.3.2조)
 - ③ 상황변화 재심(11.2조)
 - ④ 일몰 재심(11.3조)
 - ⑤ 신규 공급자 재심(9.5조)
- 미국은 덤핑 마진 산정을 위한 연례 재심에서는 원심과는 달리 0.5%의 de-minimis 기준을 적용하고, 가격비교시 수출국 국내 가중평균 가격과 개별 수출가격을 비교(A-to-T)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상황변화재심에서 조사당국이 “반덤핑 관세 철폐시 덤핑 및 피해 재발 가능성”을 분석할 때, 현재는 덤핑도 없고 피해도 없으나 원심 자료를 볼 때 덤핑 및 피해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 상황변화 재심을 통해 반덤핑 관세가 철폐되는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도 문제임.

- Friends 그룹은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제안
 - 적용가능한 경우(whenever applicable) 재심에도 원심 관련 규정 전체가 적용
 - 연례재심 및 상황변화 재심 조사대상기간을 1년으로 함.
 - ※ 현재 미국은 일부 수출품에 대해 조사대상기간을 3개월로 하는 사례가 많음.
 - 상황변화 재심에서 재발 가능성 판단시 원심기간의 자료가 아닌 최근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원칙하에 재발가능성 검토를 위한 indicative list를 개발

□ 여타국 입장

- 미국은 “연례재심은 원심과는 다르며 원심관련 규정중 명백히 재심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Friends 제안에 강력히 반발
 - EU는 재심에도 원심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원칙에는 찬성하나,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
 - ※ US-DRAM case에서 패널은 2% de-minimis 조항은 연례 재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등 판례도 긍정적이지 않음.

3. Lesser Duty Rule(최소부과 원칙)

□ Friends 그룹 주요 제안 내용

- Friends 그룹은 산업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까지만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
 - ※ 현행 협정에는 권고 규정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lesser duty rule을 이미 시행

□ 여타국 입장

- EC는 실제 lesser duty rule을 15년 이상 운영중이며

Friends 그룹의 제안 자체에 대하여는 긍정적이나, Friends 제안의 기술적 부분에는 반대

- 미국은 lesser duty rule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Friends 그룹의 제안 자체에 반대

4. 제로잉(Zeroing)의 금지

□ Friends 그룹 주요 제안 내용

- 상품 판매를 모델별 또는 시기별로 나누어 부분 margin을 계산하고 이를 가중평균하여 하나의 전체 덤핑 margin을 산정하는 것(multiple averaging)이 관행임.
 - 이 때 (-) margin(수출가격이 국내 판매가격 보다 높은것)을 zero로 처리(제로잉)하여 덤핑 마진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Friends 그룹은 모든 덤핑 마진 산정시 제로잉을 금지하는 안을 제출
 - 현재 원심에서 모델별로 제로잉을 하는 것은 협정 위반이라는 판례가 다수 나오고 있어, 이를 codify한다는 논리로 설득 노력
 - ※ EC-Bed Linen(DS141)에서 패널 및 상소기구는 원심에서 모델별 제로잉을 하는 것은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시(이 판정에 따라 제로잉 금지에 부정적이던 EC의 입장이 제로잉 금지 찬성 쪽으로 다소 선회)
 - ※ US-Softwood Lumber(DS264)에서도 원심에서의 모델별 제로잉은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시

□ 여타국 입장

- 미국은 판례는 해당 case에만 효력을 미친다는 논리로 제로잉 금지에 반대하고 있음.

※ 판례는 일몰재심 및 연례재심에서 제로잉 방법을 사용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US-CRS Sunset Review(DS 244), US-Laws, regulations and methodology for calculating dumping margins(DS294))

5.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 Friends 그룹 주요 제안 내용

- 덤핑 마진 산정시 대응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과도하게 사용되는 Facts Available(조사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 또는 secondary source의 자료 등)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제안
 - missing and rejected information을 대체하는 한도내에서만 FA를 사용
 - 조사당국이 당사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 후가 아니면 FA에 의존할 수 없도록 함.
 - 검증가능하고 틀리지 않은 정보는 조사당국이 반드시 사용하도록 함.
 - FA를 사용하는 경우 조사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거부한 이유를 통보받도록 함.

□ 여타국 입장

- 미국은 facts available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어 Friends 그룹 제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EC는 자국의 제도가 선진화되어 있어 Friends 제안이 불필요하다는 입장

6.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 관련 이슈

□ Friends 그룹 주요 제안 내용

- 조사당국이 정상가격 산정과 관련, “국내 판매 규모가 작고 원가이하 판매가 많으며 일정 거래는 관계사와의 거래라는 이유 등으로 기업이 제출한 국내판매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구성 수출가격을 사용”하여 덤핑 마진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지는 관행이 빈발
 - 또한 관계사로의 수출가격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재판매가격을 사용(재판매법인의 이윤을 공제)하여, 수출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관행도 존재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riends 그룹은 아래의 안을 제안
 - ① 국내판매량이 수출량의 5%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성 테스트시 원가이하 판매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
 - ② 관계사 거래라고 간주하는 거래를 지분소유 50%기준으로 규정
 - ※ 현재는 관행적으로 5%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호 출자 관행이 많은 우리기업에게 5% 기준은 매우 엄격
 - ③ 관계사와의 모든 거래(국내 판매 및 수출)중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거래만 가격 산정에서 제외
 - ④ 원가 미만 판매 여부 판단시, 모든 거래의 가중평균 가격과 가중평균 생산비용을 비교
 - ⑤ 조사대상기업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가급적 인정
 - ⑥ 구성 정상가격 산정 기준 강화
 - ⑦ 조사대상기간은 1년으로 함.

□ 여타국 입장

- 미국, EU 뿐 아니라 일부 개도국도 Friends 제안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모든 경우를 다 규정하려고 한다고 비판

7. 공정한 비교(Fair Comparison)

□ Friends 그룹 주요 제안 내용

- 국내 판매와 수출간 거래단계 차이를 “간접 판매비 개념”을 사용하여 공제한 후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것이 공정한 비교 원칙에 합당
 - ※ 통상 구성수출가격의 경우 거래단계가 높고 국내시장의 경우 거래단계가 낮기 때문에 (+) 마진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바,
 - 정상가격도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비교(판매단계와 관련된 비용을 공제)한다면 정상가격이 낮아져 마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음.
- Friends 그룹은 모든 직·간접 판매 비용을 모두 공제한 후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할 것을 제안
 - 또한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가중평균 수출가격간에 비교가 이루어지도록 함(A-to-A 방식).

□ 여타국 입장

- 미국, EU는 모든 직·간접 판매비를 공제하면 결국 생산비와 이윤만이 남는데, 덤핑 마진은 가격 차이이지 이윤 차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Friends의 주장에 강력하게 반대
 - 또한 A-to-A 방식 관련, 호주, 뉴질랜드 등은 국내 시장이 작은 자국에 대한 수출시 가중평균 수출자료는 통계적으로 왜곡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개별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가격이 비교(T-to-T)되어야 한다고 주장

8. Model Matching

□ Friends 그룹 주요 제안 내용

- 조사대상 상품을 모델별로 분리하여 덤핑 마진을 산정한 후 이를 가중평균하여 전체 마진을 산정하는 것이 관례
 - ※ 미국의 경우 모델 매칭은 설문서 발송시 이미 완료되며 설문지에 기재된 형식대로 답변하지 않을 경우 바로 구성가격에 의존
- Friends 그룹은 아래 내용을 제안
 - 비교대상 모델 선정시 물리적인 특성외에 상품의 상업적 가치 등 최종 용도를 우선적으로 고려
 - 조사대상기업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델에 기초해 비교대상 모델을 선정
 - 조사당국이 선정한 모델에 대해 기업이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여타국 입장

- 미국은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EU는 “상업적 가치” 및 “최종용도”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

9. 피해 및 인과관계 관련 규정

□ Friends 그룹 주요 제안 내용

- 덤핑 여부 판단은 정량적으로 가능하나 피해 및 인과관계 판단은 정성적일 수밖에 없어 조사당국의 재량이 많이 작용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riends 그룹은 아래내용을 제안

- ① 실질적 피해의 정의규정 신설
- ② 산업피해 판단을 위한 각 요소(판매량, 이윤, 생산량, 설비 가동률 등)가 어떻게 평가되었고 어떻게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조사당국이 설명하도록 함.

□ 여타국 입장

- 미국은 피해와 관련 현행 규정이 이미 충분하며 개정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며, EU는 피해의 정의 규정 신설 등 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Friends 제안의 세부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입장

10. 조사개시 기준(Initiation Standards)

□ Friends 그룹 주요 제안 내용

- 반덤핑 조사 개시는 chilling effect를 가지고 있으며 대응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시장을 이탈하는 사례도 많은 바, Friends 그룹은 조사개시 기준을 강화,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제안
 - ① 조사신청서 접수후 조사개시전 수출자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
 - ② 조사개시 후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지 않거나 취소된 후 그 수출국의 상품과 동일한 수출국 상품에 대해서는 1년간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지 않도록 함(back-to-back 조사 금지).

□ 여타국 입장

- 미국, EU는 동 이슈에 대해 반대하며, 개도국들은 back-to-back 조사 금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

11. 국내산업의 정의 및 조사신청 자격 강화

□ Friends 그룹 주요 제안 내용

- 국내산업의 정의는 덤핑으로 인한 피해 여부 판정시 중요한 기능을 하는바, 현행 협정에는 일부 국내 생산자도 덤핑으로 피해를 받는 국내산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문제
 - 또한 국내 생산자의 50%의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덤핑 제소가 가능하여 제소가 남발
- Friends 그룹은 생산량 기준 국내 생산자의 50%이상만을 국내산업으로 보아 국내 생산자의 50%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반덤핑 제소가 가능하도록 제안

□ 여타국 입장

- 미국, EU 등은 농업, 수산업 등 fragmented industry 및 국토가 넓은 국가에서 50%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12. 가격인상 약속(Price Undertaking)

□ Friends 그룹 주요 제안 내용

- 가격인상 약속은 반덤핑 관세 부과보다 수출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나 사후 관리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 않음.
- Friends 그룹은 가급적 가격인상 약속이 수락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제안
 -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제거할 수 있다면 가격인상 약속은 원칙적으로 수락되도록 함.

- 가격인상 약속이 수락되지 않은 기준과 이유를 공표하고 수출자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
- 국내가격이 하락하는 등 상황변화 발생시 수출자는 가격인상 약속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 여타국 입장

- 현재 미국은 가격인상 약속 제도 수락 의무화에 강력히 반발
 - 이는 미국의 retrospective system하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에 가격변화에 따른 위험을 기업에게 전가하는 것이지만, price undertaking하에서는 조사당국이 그 위험을 지게 되기 때문
- EC는 가격인상 약속 활용도는 높으나, 상황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음.

13. 공익(Public Interest)

□ Friends 그룹 주요 제안 내용

- 반덤핑 판정시 소비자 및 수입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국내 생산자의 이익 등 공익(public interest)를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

□ 여타국 입장

- 미국은 공익(public interest)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이에 반대하고 있으나, EC는 이미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지하는 입장임.

WTO의 무역원활화 논의¹⁾

梁俊哲²⁾

가톨릭대학교 정경학부 경제학과 조교수

I. 서론: 무역원활화의 정의와 협상의 필요성

세계 각국의 관세가 계속 감소되면서 비관세 장벽이 더욱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UNCTAD는 2001년 선진국의 산업별 수입가중평균관세율이 3.1%³⁾, 개도국의 산업별 수입가중평균관세율이 11.0%로⁴⁾ 최빈개도국을 제외하면 세계의 관세수준은 이미 미소관세(nuisance tariff) 수준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⁵⁾. 반면, 국제교역에 따르는 각종 거래비용의 규모는 국제교역 총금액의 2~15%로 추정되고 있으며, 거래비용 등 비관세장벽이 이미 관세장벽에 못지않은 무역장벽으로 되어버렸다. 1970년대부터 다자, 양자 및 지역적 시장개방 논의에서는 비관세장벽의 비중이 늘고 무역에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연구, 특히 항구의 효율성 및 운송비용에 대한 연구가 늘고 있다. OECD나 APEC 등 시장개방을 다루는 국제기관에서도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 무역원활화에 관련된 각종 연구와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무역원활화의 정확한 정의는 아직 없다. 손찬현, 윤진나(2001)는 무역원활화를 「무역과 관련한 모든 비효율적으로 과도하거나 복잡한 절차, 관행 및 인프라를 제거, 또는 간소화, 조화, 자동화함으로써 거래비용의 감소와 효율적 증대를 통해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및 활동」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⁶⁾, Staples(2002)는 무역원활화를 「국제무역의 기본인프라, 즉 통상과 무역관련 정책의 집행, 규제와 행정에 관련된 모든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⁷⁾. 따라서 무역원활화의 목적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국제적으로 교역하는 데에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제거하여 상업비용을 감소시키는 데에 있다⁸⁾.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역원활화는 상당히 광범위한 과제들을 다루게 된다. 통

1) 본 글의 I장과 II장과 VII장의 일부는 양준석(2004), 양준석(2005a)와 양준석(2005b)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고, 최근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III장, IV장, V장에서 GATT 조항과 의무에 대한 설명은 양준석(2004)와 양준석(2005a)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였다.

2) 연락처: yanjuna@catholic.ac.kr

3) http://globstat.unctad.org/html/avg_tar_dc1_data.html

4) http://globstat.unctad.org/html/avgTarDev1_data.html

5) http://globstat.unctad.org/html/avg_tar_dc_overview.html

6) 손찬현, 윤진나 (2001) p.6

7) Staples (2002) p.140.

8) 무역원활화 정의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Sohn and Yang(2003), Lucenti(2003), 양준석(200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관절차, 라이선스 절차, 관세평가, 기술적 기준과 표준, 보건 및 안전 기준 외에도 정보와 서류의 제출에 대한 행정적 절차, 그리고 수수료, 운송과 선적, 보험,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지불에 관련된 각종 절차, 규제와 서류들도 무역원활화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일부 국가들에서는 IT기술을 활용하여 수출입절차들을 전산화시키고자 하고 있는바, 절차의 전산화와 자동화도 무역원활화의 범위에 포함된다 고 할 수 있다.

최근 무역원활화에서 다루어지는 각종 비관세무역장벽의 영향을 추정해 보고자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설문조사나 비용추정조사들의 결과를 보면 통관절차나 무역에 관련된 규제들로 인한 비용은 국제교역 총금액의 약 5%~10%이라고 추정되고 있다⁹⁾. OECD(2001)은 과거 연구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국제교역에 필요한 각종 거래비용의 규모를 국제교역 총금액의 2~15%로 추정하고 있다¹⁰⁾. APFC가 실시한 캐나다 업체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복잡한 통관절차가 국제 무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고¹¹⁾, APEC(2001)에서는 복잡한 통관절차가 높은 관세 다음으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¹²⁾.

통관절차에 필요한 서류에 따르는 비용마저도 무시할 수 없다. EC(1989)는 서류 관련 비용이 총교역금액의 3~7%이며, 서류에 사소한 실수가 있는 경우, 그 비용은 15%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¹³⁾. 서류의 형태만을 국제적으로 표준화시켜도 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다는 조사도 있다. 1973년 영국 런던 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각종 통관서류의 형태를 UN Layout Key 형태로 통일시키는 경우, 서류 비용이 50% 절감될 것이며¹⁴⁾, 영국에서 무역원활화를 추진하는 단체인 SITPRO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¹⁵⁾. 서류의 처리를 전산화시키면 그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는 결과들도 최근 다수 발표되고 있다.

운송업체들에게도 통관절차가 큰 비용이 되고 있다. International Road Transport Union에 의하면 통관절차로 인한 비용이 서유럽의 경우, 총 육송운송비용의 1~7%, 동유럽의 경우 8~29%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¹⁶⁾, 인도의 경우, 1980년 화물운전사들의 실질근무시간의 30~46%가 통관절차로 인해 낭비되고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¹⁷⁾. 또한, Guasch and Spiller(1999)에서는 남미국가의 항구서비스 독점공급제도와 비효율적인 규제로 인한 암시적 관세율이 5~25%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에는 중력모형을 사용하여 각종 비관세장벽이 개선되면 무역량이 얼마나 개

9) Cecchini (1988)와 UNCTAD (1994), APEC (2001) Table I 에서 재인용

10) OECD (2001) p.20

11) APEC, (2001) 각주 19

12) APEC (2001) p.15

13) EC (European Commission) "EU Cost 306 Final Report," EC, 1989.; OECD (2001) p.11에서 재인용.

14) IAPH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orts and Harbours) (1986), OECD, (2001), p.13에서 재인용.

15) OECD "Trade Facilitation," TD/TC/WP(2002)7, Paris, 9 Jan. 2002, p.9에서 재인용.

16) OECD, (2001) p.12에서 재인용.

17) OECD, (2001) p.11에서 재인용.

선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¹⁸⁾. Wilson, Mann and Otsuki(2003)에서는 75개국을 검토한 결과, 투명성이나 통관절차 수준이 국제평균 이하인 국가들이 그들의 투명성과 통관절차 수준을 50% 개선하면 세계무역량이 3770억 美달러 (세계무역량의 9.7%)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북아시아 국가들의 무역량은 약 24% 개선될 것으로 추정하였다¹⁹⁾. 이창수, 임혜준, 박지현, 양준석(2004)에서는 모든 WTO 회원국이 무역원활화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어 투명성과 통관절차의 효율성이 10% 개선되면, 전세계의 교역량은 3.6% 증가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²⁰⁾.

이 조사들의 결과를 보면 관세보다는 복잡한 통관 및 행정절차가 국제무역에 있어서 이미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APEC의 연구에서는 관세인하보다는 무역원활화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시장개방에 더욱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²¹⁾. 특히 최근에는 중간재의 생산이 세계화되면서 생산과정이 범세계적으로 분산되는 소위 국제공급망(international supply chain)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 국가가 국제공급망에 참여하려면 비관세장벽을 줄여 부품 및 중간재의 부품 수출입에 따르는 비용을 줄이고 부품전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무역원활화 논의에 가장 많이 관련되는 기관은 관세청이며, 따라서 관세청들의 국제 협력기구인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무역원활화를 가장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WCO는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투명화를 위하여 Kyoto Convention을 1973년 공표하였고, 이를 1999년 개정하였다. 그러나 WCO의 총 회원국 숫자는 169개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41개국만²²⁾이 개정된 Kyoto Convention을 승인하여 2006년 2월에야 발효되었다.

관세청들과 WCO 외에도 운송과 관련된 정부부처, 검역과 보건유지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들도 무역원활화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운송업체 등 통관절차나 무역실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업체들의 국제협력기관, 세계은행, UN산하의 지역경제개발기관인 UN/ECE와 UN/ESCAP 등이 무역원활화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정부 협력체인 PRO위원회들이 무역원활화를 추진하고 있다²³⁾.

1996년부터는 WTO에서도 무역원활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2004년부터는 도하개발의제(DDA)협상의 공식적인 과제로 포함되고, 구체적 협상이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WTO에서는 무역원활화에 논의가 GATT V조, VIII조와 X조에

18) 이 연구들에는 중력모델에 독립변수로 투명성, 규제환경, 항구효율성, 통관절차 효율성, 통관서비스 인프라 등에 대한 지표를 추가하였다.

19) Wilson, Mann and Otsuki (2003) pp.13~17 Tables 5, 6

20) 이창수, 임혜준, 박지현, 양준석 (2004) 제6장

21) APEC (1997), APEC (1999), APEC (2001), APFC(2000) 등

22) 2005년 12월 현재

23) PRO위원회의 역할은 양준석(2003a) 참조.

관련된 논의로 제한되고 있다. 본 글은 DDA 무역원활화 협상과 관련,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 글의 제Ⅱ부에서는 WTO 무역원활화 협상의 특징과 변천사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제Ⅲ부부터 제Ⅴ부는 무역원활화 관련 각 회원국이 제출한 각종 제안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제Ⅲ조는 GATT X조관련 제안, 제Ⅳ부는 GATT VIII조관련 제안, 제Ⅴ부는 GATT V조관련 제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Ⅵ부에는 한국이 제출한 각종 제안을 살펴보고, 한국의 관점에서 무역원활화 협상의 중요성과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제Ⅶ부에서는 현재 DDA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Ⅷ부는 간략한 결론이다.

II. WTO에서 무역원활화

WTO에서 사용하는 무역원활화의 정의는 「국제무역절차의 간소화와 조화」이며, 여기서 「국제무역절차」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물품이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발표, 전달, 또는 처리하는 활동, 관례와 절차」이며²⁴⁾, WTO에서도 이미 무역원활화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GATT협정의 V조(통과무역의 자유), VII조(관세평가), VIII조(수출입과 관련된 수수료와 절차), IX조(원산지규정), X조(무역규제의 공표와 행정)는 무역원활화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FTA나 관세연맹을 다루는 GATT XXIV조도 물품과 서비스 교역의 무역원활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UR협정 중에서는 관세평가협정, 수입허가절차협정, 선적전검사협정, 원산지규정협정, TBT(기술장벽)협정과 SPS(위생검역조치)협정이 무역원활화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를 다루는 GATS협정과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TRIPS협정도 서비스 교역의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UR의 체결시 WTO가 본격적으로 무역원활화를 다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WTO/UR 협정문은 수입허가와 선적전검사 등 무역원활화의 일부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합리화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TO 제1차 각료회의에서는 무역원활화를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과 함께 WTO의 공식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향후 WTO 협정에 포함될 수 있는 각종 요소들을 검토하고 회원국들끼리 논의하도록 지시하였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회원국들은 물품위원회에서²⁵⁾ 무역원활화에 대한 사례와 국가경험을 교환하였고, 무역원활화에 들어갈 수 있는 각종 요소들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기존 UR/WTO협정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WTO에서의 무역원활화에 대한 논의는 GATT V조(화물통과의 자유), VIII조(수출입에 관련된 요금과 절차)와 X조(무역관련 규제의 공표와 행정)에 관련된 내용에만 한정시키기로 하였다. WTO

24)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eol/e/wto02/wto2_69.htm 15 Mar. 2004.

25) 여타 싱가포르 이슈는 각각 독립된 작업반에서 논의되었지만, 무역원활화는 물품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무역원활화 논의의 범위는 여타 국제기관들에 비해서 협소하지만, 기존 UR/WTO 협정 및 협상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²⁶⁾.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부터 일부 선진국들은 무역원활화를 뉴라운드의 공식적 협상과제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애틀 각료회의가 결렬되고,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무역원활화 협상의 시작에 대한 결정을 회피하였으며, 2003년 칸쿤 각료회의도 결렬됨에 따라 무역원활화는 뉴라운드 협상과제로 포함되지 못하였다. 시애틀과 칸쿤에서 각료회의가 결렬된 이유 중 하나가 싱가포르 이슈 협상시작 여부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2004년 6월까지만 하여도 싱가포르 이슈들이 도하개발의제(DDA)의 협상과제로 포함될 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칸쿤 각료회의가 결렬된 이후, DDA 협상이 실질적으로 마비되자 WTO 사무국과 주요 회원국들은 협상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회원국간 대화를 도모하면서 향후 협상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04년 8월 1일 WTO 회원국들은 향후 DDA 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July Package"를 발표하였는데, 싱가포르 이슈 중에서는 무역원활화만에 대해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July Package를 설명하는 WTO 문서 WT/L/579의 Annex D에서는 무역원활화 협상의 틀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협상의 목적은 GATT V, VIII, X조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데에 있다. 또한, 무역원활화와 통관절차 준수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국제협력도 다루도록 한다. (1조)
- 협상의 최종결과물에 대한 선입견은 없다²⁷⁾. (각주 5)
-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특별대우는 전통적인 집행유예기간 부여의 수준을 넘어야 한다. 각 회원국의 집행여력에 따라 유예기간의 길이를 결정해야 하며, 각 회원국의 여력을 증가하는 인프라 투자를 의무화할 수 없다. (2조)
-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그들의 여력에 적합한 항목들만 의무화하도록 하며 (3조), 개도국들과 최빈개도국들이 필요한 항목, 우선순위의 파악, 그리고 제안된 조치들의 비용도 협상의 일부로 고려하도록 한다. (4조)
- 선진국들은 개도국과 최빈개도국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5조), 협상결과에 따른 개별조치를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일부 회원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경우, 선진국들은 투자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하며,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집행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국의 지원은 영구적인 지원이 될 수 없다. (6조) 또한 회원국들은 협상결과의 집행능력과 효율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26) 일부 개도국은 원산지규정을 무역원활화에서 다루고 싶어 하였으나, 선진국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일부 회원국들은 선적 전검사 및 관세품목분류도 무역원활화 협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실패할 것으로 예상된다.

27)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상의 결과로 구체적인 협정문을 작성할 것인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협상 중 WCO나 세계은행 등 전문성을 가진 국제기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8조), WCO 등 여타 국제기구들의 결과물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9조).
- 도하각료선언문의 45-51문단이 협상에 적용된다(본문 1(g)조). 따라서 무역원활화는 다른 도하라운드 과제와 함께 통합과제(Single Undertaking)의 일부로 간주된다.

보다시피, Annex D는 선진국이 무역원활화 협상과 협정을 통하여 개도국이나 최빈개도국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개도국들의 염려를 반영하고 있다. 무역원활화 협상 시작을 위하여 개도국들의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보가 꼭 필요하였지만, Annex D에 제시된 조건들, 특히 충분한 인프라, 투자나 이행에 필요한 여력이나 선진국의 지원이 없으면 개도국들은 협상결과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3조와 6조의 내용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위력이나 개도국들이 무역원활화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득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무역원활화 협정을 원한다면 여기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라는 도전장을 던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하라운드에서 도출될 무역원활화 협정의 효력은 선진국들이 제공할 지원과 직결될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 경제 침체 상황에서 미국, EU나 일본이 개도국들에게 대규모 구체적 지원을 마련할 지는 의문이다. Finger and Schuler (2000)에 의하면 16개 분야의 통관절차개혁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250만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²⁸⁾. 선진국들이 여기에 필요한 금액을 전액 부담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이 금액의 큰 비중을 부담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정은 상당히 약할 협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05년 협상과정에서 개도국들은 구체적 협상을 시작하기 전, 선진국들이 제공할 지원의 종류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라고 주장한 반면,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지원을 요구하기 전에 협상문의 틀을 잡아야 하고, 여기에 따라서 개도국들이 어떠한 지원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를 정리하여 발표해야 한다고 서로 문제를 상대방에 넘기고자 하였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무역원활화에 대한 개도국들의 입장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입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2006년부터 협정의 문구에 대한 협상(text-based negotiation)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 3장에서는 각 회원국들이 제출한 각종 제안들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각종 제안을 볼 때, X조(투명성)에 관련된 내용이 비교적 쉽고, 논쟁이 적으며, VIII조(수수료 및 수출입절차)에 대한 내용은 기술적이고 어려운 측면이 많다. V조(화물통과)에 대한 내용은 VIII조 및 X조와 중복되는 면이 많으므로 아래에서는 X조에 대한 제안들을 먼저 살펴보고, VIII조와 V조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8) Lucenti(2003) p.43에서 인용

III. GATT X조 투명성 관련 내용: 규제투명성의 도입

1. GATT X조의 주요 내용 및 의무

GATT X조는 국제 무역체제의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WTO/UR협정에서 투명성의 기본골격을 마련하고 있다. WTO(2005c)에서는 GATT X조에 따른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다음 3가지로 정리하였다²⁹⁾.

- 무역과 관련된 법령, 규제, 판정과 협약을 신속하게 접근이 유의한 방법을 통해 발표한다. (1항)
- 법령, 규제, 판정과 협약의 발표 이전 이를 집행하는 것을 삼가도록 한다. (2항)
- 법령, 규제, 판정과 협약을 균등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집행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각 회원국은 관세나 통관절차에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나 재판소, 또는 재정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한다³⁰⁾. (3항)

무역원활화 논의와 협상에서 GATT X조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는 회원국간의 마찰이 비교적 적다.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은 모든 회원국들이 비교적 동의하는 분야이며, 여타 WTO 협정에서도 이미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GATT X조의 투명성은 단순한 정보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즉, 정부는 정보를 공표해야 하지만, 정보 소비자와 사용자의 입장에서 정보의 접근이나 이해를 쉽게 하는 것을 의무하지는 않는다.

2. GATT X조 관련 제안

투명성은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의 상황, 조건, 이득과 비용을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업체들이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쉽게 찾고 이해하며, 이를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업체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였다면 이를 항의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OECD는 단순한 정보투명성의 차원을 넘어서 규제투명성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규제투명성이란 피규제기관이 규제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이를 인식함과 동시에 법규칙 하에서 이행해야 할 책임을 이해하고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³¹⁾. 이러한 규제투명성(regulatory transparency)의 제고는 시장개방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다. OECD(2002, 2003)은 규제투명성 개념을 무역원활화에 도입할 수

29) WTO (2005d) p.4

30) 즉, 행정집행에 있어서 당국이 실수를 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행정절차를 상소할 수 있는 절차를 설립해야 한다.

31) OECD (2002b), OECD(2003b), 김진국, 김태윤, 양준석 (2002) 참조.

있는 각종 방법들을 소개하였고, 각종 WTO/UR 협정에서도 규제투명성의 도입이 강화되고 있으며 각 회원국들이 제출한 제안서들을 보면 무역원활화 차원에서도 규제투명성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³²⁾.

지금까지 X조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제출한 제안들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 정보의 접근성 ▲ 협의와 의견수집 절차의 도입 ▲ 사전판정의 활용 ▲ 검토 및 상소절차 ▲ 집행 공정성의 보장 등이다. 여기에 관련된 제안들을 <표 1>에 정리하였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더욱 자세한 설명은 OECD(2002a), 양준석(2005a), 양준석(2005b)와 양준석(2005d) 및 WTO(2005d)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1> X조 투명성 관련 제안내용

종류	제안	비고
정보의 접근성	공표하는 법령과 규제 범위의 확대	
	법령과 규제관련 정보 접근성 향상,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	한국제안
	법령과 규제가 발표되는 매체를 공표, WTO에 등록	한국제안
	주요 법령과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를 발효이전에 통보	한국제안
	정보창구, 단일정보창구(Single National Focal Point) 도입	한국제안
협의와 준비기간 부여	새롭거나 개정된 법령과 규제에 준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 부여 (즉, 공표와 발효 사이에 기간을 부여)	한국제안
	피규제자들(기업, 민간단체)에게 새로운, 또는 개정되는 법령이나 규제에 대하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함.	한국제안
	새로운 법령이나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법령이나 규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피규제자들과 상의하는 절차를 의무화	
검토 및 상소절차 강화	무차별적인 상소절차의 보장	
	비용과 소요시간 규제	
사전판정제도의 강화	원산지 판정 외, 여타 분야에도 사전판정제도를 확대	
무역법령 및 규제의 균일한 집행의 보장	공무원 행동기준 및 윤리기준 도입	
	법령 및 규제 해석 사례집 발행	
	법령 및 규제의 해석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정	

<주> WTO(2005)와 양준석(2005a) 및 양준석(2005d)에 따라 저자 재정리
한국제안은 2005년 한국이 제안한 내용

(1) 정보의 접근성

공표하는 법령과 규제 범위의 확대

GATT협정 X.1조에는 정부가 공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간단히 이 범위를 정리한다면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령, 규제, 사법적 판결 및 행정적 결정,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국제협정이다. 일부 회원국들은 공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공표하자는 정보로는 사전판정의 결과, 현재 논의되고 있지만 확정되지 않은 새로운 법령

32) 양준석(2005b) 참조.

안이나 규제안, 그리고 논의되고 있는 법령과 규제의 개정안, 적용관세율, 행정판정의 법적기준, 특정 무역절차의 시행 목적, 관세품목분류와 관련된 판정과 사례, 관세청 및 국경절차관련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절차에 대한 정보, 국경절차관련기관의 행정규율과 절차 및 문서형태, 여러 가지의 통관절차를 유지하는 경우 각 절차의 적용기준, 수입절차, 수출입절차와 통관절차에 관련되는 수수료, 법령 및 규제를 위반할 때 징수하는 형벌이나 벌금금액, 관세청과 국경절차관련기관의 운영계획, 통관절차 평균소요시간, 국경관련기관들의 현대화 계획, 선적전조사 세부내용, 안전 등 수출검사의 세부내용 등이 있다.

법령과 규제관련 정보 접근성 향상

여기서는 정보사용자가 더욱 쉽게, 또 더욱 낮은 비용으로 각종 정보를 접근하도록 하는 제안들이 포함된다.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정보통신 및 인터넷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자는 제안은 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보통신 사용의 의무화가 개도국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으로 간주한다. 또한 정보의 공표는 접근이 쉽고 무차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그 내용은 쉽게 기술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보는 무료로 제공해야 하지만, 만약 요금을 부여해야 한다면 이는 실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비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제안들이 있었다.

기타 정보접근성 제안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부 회원국들은 정부가 공표해야 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요지를 WTO에 통보하고, WTO는 그 내용을 웹사이트, 또는 공식문서를 통하여 배포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한국은 정보자체보다는 정보가 공표되는 수단과 매체를 WTO에 등록하고, WTO 사무국이 이를 공표하자는 제안을 제출한 바 있다.

무역업체나 피규제자들이 정보를 쉽게 구하고, 공표한 정보에 대한 각종 질문을 답할 수 있도록 정보창구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며, 한국은 수출입절차에 대한 모든 질문을 한 장소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단일정보창구(Single National Focal Point)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여기에 제시된 대다수의 제안들은 WTO의 TBT협정, SPS협정, 그리고 정부조달협정에서 의무화하는 제안들을 다소 개정한 제안들이다.

(2) 협의 및 준비기간의 부여

GATT X조에는 법령과 규제의 공표와 발효 사이에 기간을 둘 의무가 없다³³⁾. 그러나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피규제자들의 규제준수율을 제고시키는 가장 효

33) 법령이나 규제가 공표 이전에 발효되는 것은 GATT X조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공표와 발효간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패널 판정문에서도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판정한 바 있다.

율적인 방법은 피규제자들이 새로운 법령이나 규제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공포와 발효사이에 시간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새로운 법령 및 규제 또는 개정사항을 발효하기 전에 발표하여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제안하였다. 여기서 준비기간의 구체적인 기간은 약 20~45일 사이로 제안되고 있다. 물론 국방, 보안, 범죄방지 및 국민보건보장 등의 이유로 준비기간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준비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최근 규제개혁 논의에서는 새로운 법령과 규제, 또는 기존 법령과 규제가 논의되는 단계에서 피규제자들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거나, 또는 정부기관이 피규제자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이들의 의견을 법령이나 규제에 반영하면 법령이나 규제의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차원에서 피규제자들인 무역업체나 민간단체들이 아직 논의단계에 있는 법령과 규제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정부가 이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집하고, 고려하도록 하자는 제안들이 제출되었다.

(3) 검토 및 상소절차의 강화

GATT X조에서는 국경절차 담당기관이 법령이나 규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생기는 경우, 이의 검토, 즉 상소를 독립적인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⁴⁾. 그러나 이러한 검토 및 상소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 비용과 소요시간에 따르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무역업체들이 검토 및 상소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부 회원국은 법령이나 규제의 집행, 판정 및 결정에 있어서 무차별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을 통한 검토 및 상소절차를 보장하자는 제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소규모 사건의 검토 및 상소에 있어서는 기본 소요기간을 정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상소과정에서 법률전문가가 무역업체를 대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일부 회원국은 제안하였다.

(4) 사전판정제도의 확대

사전판정(advanced ruling)이란 화물이 도착하기 전, 통관절차나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판정을 사전에 제출한 서류에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WTO 원산지협정에서는 원산지 판정에 대한 사전판정을 이미 의무화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원산지판정 외에도 관세품목분류(tariff classification), 관세율과 세금을, 관세액(관세평가)과 세금액, 관세징수유예여부, FTA나 GSP를 통한 특혜관세율 등으로 사전판정제도를 확대하자는 제안들이 있다.

사전판정은 국가의 법이나 관례에 따라 사전판정을 요구한 수출업자에게만 적용

34) 여기서 검토 및 상소의 내용은 법령과 규제의 집행에만 있으며, 법령과 규제 자체의 정당성은 다룰 수 없다.

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모든 수출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 담당자가 사전판정의 결과를 널리 공표한다면 여타 수출업자들이 그들의 업무에 있어서 기존 판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일부 국가들은 사전판정 정보를 신청한 기업의 영업적 비밀로 간주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회원국들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5) 무역법령 및 규제의 균일한 집행 보장

실무 공무원들이 법령과 규제를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다음 제안들이 제출되었다. 첫째는 공무원의 행동기준 및 윤리기준(code of conduct)을 마련하고,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기준을 어기는 경우, 여기에 대한 징벌을 확실히 마련하고 공표하게 하여 실무 공무원의 청렴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또 법령과 규제의 해석에 대한 사례집을 작성하고, 이를 배포하고 교육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실무 공무원이 법령이나 규제를 해석하기 보다는 정부 내 한 기관을 선정하여 이 기관이 해석을 전담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IV. GATT VIII조 수출입절차 관련 내용: 수수료, 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1. GATT VIII조의 주요내용과 의무

GATT VIII조는 수출입과 관련된 요금과 통관절차 및 수출입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역에 관련된 행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조항이며 무역원활화에 있어서는 가장 기술적이고 까다로운 내용들이다. WTO(2005b)는 GATT VIII조와 관련된 법적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GATT VIII조의 주요 의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³⁵⁾.

- 수출입과 관련되는 비관세 수수료나 요금은 각 회원국이 수출입과 관련되는 규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과 대체로 합치해야 하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이나 정부재정 충원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1항)
- 여타 회원국이나 WTO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원국은 VIII조의 의무와 비추어 국내법과 규제의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2항)
- 관세나 통관 규제나 절차에 있어서 사소한 위반의 경우 큰 벌금을 부여할 수 없으며, 특히 위반사항이 쉽게 수정될 수 있고 사기행위나 중과실의 경우가 아니면 큰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3항)
- 회원국들은 수수료와 요금의 종류와 숫자를 줄이고, 수출입 절차의 숫자와 복잡성을 최소화시키며, 수출입관련 서류의 요구사항을 줄이고 간소화시켜야 할 필요

35) WTO (2005b) p.6.

성을 인식한다. 그러나 이를 실행할 의무는 없다. (3항)

복잡한 행정절차로 수출입업자의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실증연구결과가 다수 등장하고 있지만 GATT VIII조에서는 수출입관련 절차 및 서류로 인한 부담의 감소를 의무화시키지는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GATT와 WTO 분쟁해결절차의 판정은 이러한 GATT 협정의 본문을 반영하여 수출입절차나 서류의 간소화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수출입과 관련된 절차, 서류나 수수료가 불필요하게 복잡할 수도 있다. 무역원활화 협상에서는 이러한 VIII조의 약점들을 보완하는 각종 제안들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GATT VIII조의 내용은 복잡하고 기술적이기 때문에, X조보다는 회원국들의 공감대 형성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2. GATT VIII조 관련 제안

VIII조와 관련된 제안서에서 제기된 조치는 5개의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 수수료와 요금 관련 사항 ▲ 국경통과 관련 요구하는 정보 및 서류의 간소화와 표준화 ▲ 일반적 통관절차의 간소화 ▲ 관세청과 여타 기관들의 협조 강화 ▲ 통관절차의 자동화 등이다. <표 2>에서 각종 조치를 분류한 다음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OECD(2002b), 양준석(2004)과 양준석(2005c) 및 WTO(2005d)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2> 8조 관련 제안

종류	제안	비고
수수료와 요금	수수료와 요금의 투명화	
정보와 서류 요구사항의 간소화 및 표준화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의 최소화와 표준화	한국제안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있어서 상업적 정보를 활용	한국제안
	서류의 조화와 표준화	한국제안
	통관절차에서 원본 대신 복사본 서류 사용 가능	한국제안
	단일서류접수창구	한국제안
통관절차의 간소화	통관절차에 소요되는 평균시간 계산 및 발표	한국제안
	영사관절차 및 수수료의 철폐	
	도착전처리, 위험성관리, 통관후심사 활용	한국제안
	속달화물에 있어서 간소화된 통관절차 적용 및 조기 양도	
	인증된 무역업자(authorized trader) 제도 사용	
	양도와 통관절차의 분리	
	선적전검사의 철폐	
	관세분류의 객관적 기준 마련	
	무역중개인 사용의 의무화를 금지	
	서류 및 통관절차의 검토	
	수출입절차 및 서류의 무차별적 적용	
	서류 및 수출입절차의 최소화 및 간소화	
	국제기준의 활용	
국경기관들간의 협력 강화	국내기관들간 협력강화	
	국제기관들간 협력강화	
통관절차의 자동화	서류 및 통관절차의 자동화	

<주> WTO(2005)와 양준석(2004) 및 양준석(2005)에 따라 저자 재정리
한국제안은 2005년 한국이 제안한 내용

(1) 수수료와 요금

수수료와 요금의 투명화

이에 관련된 제안 중 일부는 X조 제안내용과 중복된다. 각 회원국이 징수하는 수수료와 요금을 공표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고, 공표되지 않는 수수료와 요금은 징수할 수 없으며, 새로운 수수료나 요금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일부 제안에서는 각 회원국들이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와 요금의 목록을 공표하며 이 목록에 없는 수수료나 요금은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며, 비록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었지만, WTO 차원에서 각 회원국이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와 요금의 종류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또한 각 회원국이 수수료와 요금을 징수할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게 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수수료나 요금은 폐쇄시키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2) 정보와 서류 요구사항의 간소화 및 표준화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의 최소화와 표준화 및 상업적 정보의 활용

현재 수출입절차에서는 국가마다 요구하는 정보가 다르고 일부 경우에는 같은 정보라도 이의 명칭이 다른 경우가 있다. 또한, 여러 정부기관에 같은 정보를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모든 회원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조화시키고 표준화시키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러한 제안 중 일부는 더욱 구체적으로 각 회원국들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고, 공동된 명칭을 규정하기 위해서 WCO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Customs Data Model을 사용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며, 한국도 이를 제안하였다. Customs Data Model에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들의 목록을 마련하고 여기에 대한 공통적 명칭을 제공하고 있다. WCO는 이미 Customs Data Model의 초기 버전을 공개하였고, 차기 버전을 위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무역업체들에 선하증권 등 상업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정보를 무역업체에게 다시 요청하기보다는 상업적인 서류에 기록된 정보를 활용하면 무역업체들에 대한 정보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에 대한 종합적 체계가 마련되면 국내 기관들간의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다.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되면 여러 기관들이 무역업체들에게 동일한 정보를 각각 요구할 필요성도 없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무역업체들에게 정보를 각각 한번만 요구하면 될 것이다. 만약 무역업체, 운송업체와 금융업체 등 민간업체들도 정부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게 되면 민간업체들이 기록한 상업적 정보를 정부가 활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무역업체에게 요구하는 정보의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서류의 조화와 표준화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와 숫자를 최소화하는 제안도 있으며, 모든 회원국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표준화시키자는 제안이 있다.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의 종류와 명칭이 통일화되면, 서류의 형태도 통일시킬 수 있다. 즉, 모든 국가들의 서류 모양 그리고 각종 정보를 기록하는 위치가 동일하여 한 국가의 서류를 숙지하면 다른 국가들의 서류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UN은 이미 UN Layout Key라는 서류형태를 설계하였고, EU 및 다수의 개도국은 이 Layout Key를 활용하고 있다. Layout Key에서는 일부 회원국에서 특별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시킬 수 있는 공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등 서류를 표준화하자는 국가들의 제안 중 일부는 UN Layout Key를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기타 정보 및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 제안

통관절차에 있어서 정부 담당자는 원본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본을 제공할 수 없어서 통관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통관절차에 있어서 원본이 꼭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원본 대신 복사본을 인정하도록 하자는 제안들이 제출되었다. 화물의 통관 및 확인절차에서 복사본이 충분하다면 아예 원본을 요구하

지 않고, 원본이 꼭 필요한데 착오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일단 복사본을 가지고 화물의 양도를 허용하고, 일정한 기간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또한 현재 대다수의 회원국에서는 무역업체가 여러 부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함으로 무역업체의 부담이 큰 경우가 있는데, 한 회원국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한 장소에 접수하는 단일서류접수창구(Single Window)를 설립하자는 제안들도 있었다.

(3) 통관절차의 간소화

통관절차에 소요되는 평균시간의 계산 및 발표

일부 회원국은 모든 회원국들이 화물이 도착하여 통관절차를 거치고 화물이 양도되는 데까지 소요되는 평균시간을 계산하고, 이를 공표하자는 제안을 제출하였다. 일부 회원국은 추가적으로 이 평균시간을 줄이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일부 회원국은 통관절차가 평균시간보다 오래 소요되는 경우, 그 이유를 무역업체에게 통보해 주도록 하자는 제안을 제출하였다. 평균소요시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WCO의 Time Release Study에 제시한 기준 및 계산방법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WCO 회원국들은 Time Release Study를 통하여 통관절차 평균소요시간을 계산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자국 통관절차를 개선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영사관절차 및 수수료의 철폐

일부 국가들은 무역업체들이 자국의 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영사관을 거치는 각종 절차를 요구하고, 영사관에 수수료를 납수하게 한다. 일부 회원국들은 이러한 영사관절차 및 수수료(consular procedures and fees)를 금지시키자고 제안하고 있다.

도착전처리, 위험성관리, 통관후심사

도착전처리(pre-arrival clearance)는 화물이 수입국에 도착하기 전에 서류처리 및 사전 처리가 가능한 절차는 미리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성관리(risk management)는 화물의 위험성에 따라 통관절차를 차별화하는 것이다. 즉, 화물에 따르는 밀수의 가능성, 또는 국방이나 보안, 공공질서에 악영향을 줄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성이 낮은 화물에는 간소한 통관절차를 사용하고, 위험성이 큰 화물에는 엄격한 통관절차를 사용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위험성관리를 사용함으로써 관세청 등의 통관기관은 그들의 자원을 위험성이 높은 화물에 집중시킬 수 있으므로 통관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험성이 낮은 화물을 수출입하는 무역업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실적 및 통계에 근

거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이는 WTO의 무차별(nondiscrimination)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회원국들은 판단하고 있다. 통관후심사(post-clearance audit)는 최소한의 서류심사 및 통관절차 이후 화물을 일단 양도하고, 자세한 서류심사 및 통관절차는 화물이 양도된 후에 처리한다는 원칙이다. 일례로 일단 무역업체의 신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후 화물을 양도하고, 무역업체가 옳은 금액을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양도 후 천천히 실시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 3가지의 원칙은 현대 통관절차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원활화에서 이 원칙을 도입하는 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도착전처리, 위험성관리, 통관후심사를 실행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그 정도도 국가의 여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국가들마다 선호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다. 일례로 모든 회원국들이 위험성관리방법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방법과 정도는 회원국들마다 상당히 다르다³⁶⁾. 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사용하자는 조항을 무역원활화 협정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하겠지만, 이 원칙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는 원칙적 입장을 제시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실효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인증된 무역업자 제도의 사용과 속달화물 통관절차의 간소화

이 두 조치는 위험성관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인증된 무역업자(authorized trader)란 법령과 규제를 잘 순응하고 통관절차 준수에 있어서 좋은 과거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화물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고, 통관기관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무역업자를 의미한다. 인증된 무역업자는 물품을 밀수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신고없이 수입할 가능성, 또는 거짓신고를 할 가능성이 적다고 간주하여 정부가 인증한 무역업체로서, 인증된 무역업자 제도에서는 인증된 무역업체에게 여타 업체들보다 더욱 간소화된 서류 및 통관절차를 적용한다. 즉, 위험성이 적은 무역업자에게는 쉬운 통관절차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속달화물 통관절차 간소화의 경우, FedEx, UPS, DHL 등의 속달업체는 신속한 배달을 위하여 발송인과 수령인에게 상당히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화물의 내용도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속달업체는 통관기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속달운송업체에 따르는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속달화물에 대해서는 간소화되고 쉬운 통관절차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사용하고 있다.

보다시피 인증된 무역업자 제도나 속달화물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제도에서는 무역업자와 정부간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필요하다. 일부 개도국, 특히 관세수입이 정부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은 이러한 신뢰성이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인증된 무역업자 제도의 도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36) 일례로 한국과 필리핀은 위험성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화물을 위험성에 따라 차별화하고 있지만, 필리핀은 총수입 화물의 80%를 위험성이 가장 높은 "red lane"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위험성이 가장 높은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필리핀에 대한 사례는 Yang(2005) 참조.

양도와 통관절차의 분리

앞에서 언급한 도착전처리, 위험성관리와 통관후심사가 현대적 통관절차의 원칙이라고 본다면 양도와 통관절차의 분리는 현대적 통관절차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EC와 캐나다가 양도와 통관절차의 분리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요지는 정보의 흐름, 자금의 흐름과 물품화물의 흐름을 각각 최대한 독립시킨다는 것이다. 일례로, 서류의 전달이 늦어지거나, 정보의 제출이 늦어져서 관세금액의 계산이 늦어지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현재 많은 국가는 이러한 경우 화물의 양도를 불허할 것이다. 그러나 분리의 원칙에 따르면 일단 통관기관은 화물을 양도해 주고³⁷⁾, 관세 및 정보의 문제는 양도 후에 정리하여 정보의 흐름, 자금의 흐름과 화물의 흐름을 분리시킨다는 것이다.

분리 원칙의 일환으로 현재 검토 및 상소절차를 밟고 있는 화물에 있어서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일단 대상화물을 먼저 양도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복사된 서류의 인정, 도착전처리 및 통관후심사도 분리의 원칙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양도와 통관절차의 분리로 화물의 조기 양도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무역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국제공급망으로 생산과정이 세계화된 현재 경제에서는 부품 및 중간재의 원활한 적시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생산체제의 세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타 통관절차 간소화 제안

앞에서 언급한 제안 외에도 다양한 제안들이 제출되었지만, 아직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제안들 중 일부를 여기서 소개한다.

관세품목분류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회원국들이 HS분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며, 선적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금지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일부 회원국은 현재 수입절차에 있어서 자국의 무역중개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회원국은 자국 무역중개인의 의무사용을 금지하자는 제안을 제출하였다.

일부 회원국은 서류 및 수출입절차의 무차별적 적용의 원칙을 협정에 포함시키 이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자는 제안을 제출하였고, 일부 회원국은 원칙적인 차원에서 서류 및 수출입절차의 최소화 및 간소화 의무를 협정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일부 회원국은 각 회원국이 필요없는 서류요구사항과 통관절차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찾는 경우 이를 철회하고, 각종 요구사항과 절차가 최소화되었는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자는 제안을 제출하였다.

일부 회원국은 국제기준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제안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위에서 언급된 WCO Customs Data Model, UN Layout Key, HS 협정 외에도 WCO

37) 필요시 통관기관은 무역업체에게 담보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의 Revised Kyoto Convention, UN/ECE 지침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일부 회원국은 통관절차에 있어서 국제기준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제출하였지만,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국제기준을 설립하자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5) 국경기관들간의 협력 강화

여기서는 국내기관들간의 협력강화와 국제기관들간의 협력강화가 언급되고 있다.

국내기관들간의 협력강화란 수출입절차에 관련되는 모든 국내기관들간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국내기관들은 관세청 외에도 수입음식물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기관³⁸⁾, 공산품의 표준 및 기준을 담당하는 기관³⁹⁾, 수출입품에 부여되는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 수출입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기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정부기관 뿐만이 아니라 산업단체들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하여 기관들이 정보나 절차를 중복하여 요구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화물 검사과정에 있어서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검사를 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내에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면 통관절차 및 검사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제기관들간의 협력강화란 다른 국가들에 있는 각종 기관들간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국제 데이터베이스 설립이나 정보 및 서류의 조화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근접한 국가에 있어서는 두 국가의 통관기관들의 시설입지와 운영시간을 서로 조정하여 화물이 한 국가를 떠나고 다른 국가에 입국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을 최소화하게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근접한 두 국가의 통관절차를 하나의 시설에서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한 바 있다.

(6) 통관절차의 자동화

통관절차에 있어서 정보통신 기술 및 자동화 기술을 최대한 사용하여 통관절차를 자동화시키는 방법을 고려하자는 제안들이 있었지만, 개도국들이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인적, 물적 및 금융자원이 부족하다기 때문에 자동화를 의무화하기보다는 권고만 하는 형태로 각종 제안을 제출하였다. 선진국이 통관절차의 자동화나 정보통신기술의 의무적 사용을 회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동화나 정보통신기술 활용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게 단기적으로 큰 규모의 지원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으로 간주된다. 지원에 따르는 선진국들의 단기적 부담은 크지만, 이러한 지원과 투자에 대한 이득은 중장기적으로만 실현되기 때문에 선진국은 자동화와 정보통신 사용의 의무를 소극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38) 한국의 경우에는 농림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 등의 기관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39) 한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산자부를 의미할 것이지만, IT상품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부, 음식물에 있어서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이 포함될 수 있고, 특정상품에 대한 기술이나 표준을 규정하고 있는 민간단체도 포함될 수 있다.

다.

V. GATT V조 통과화물 관련 내용: 투명성 제고 및 서류와 절차의 간소화

1. GATT V조의 주요내용과 의무

GATT V조는 화물통과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화물통과란 물품이 생산국(수출국)이나 소비국(수입국)이 아닌 제3국을 통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일례로 대륙 내부에 있는 국가가 제3국의 항구와 육로를 통해 수입품을 받는 경우를 들 수 있다. WTO(2005a)에서는 GATT V조와 관련된 각종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GATT V조에 따르는 기본적 의무는 다음과 같다⁴⁰⁾.

- 선박의 국적이나 출발지, 도착지, 방문지나 최종 목적지 등 물품의 소유, 선박이나 운송방법에 관련된 사항을 근거로 하는 차별적인 대우는 할 수 없다. (2항)
- 통과하는 물품을 신고 있는 운송도구는 규정된 통관시설을 통해 입국해야 하며, 회원국은 여기에 불필요한 지체나 요구사항을 기피해야 한다. (3항)
- 회원국이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수료나 규정은 3항~5항에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통과화물을 신고 있는 선박이나 운송도구는 관세대상으로부터 제외되며, 운송비나 통과와 관련된 행정적 비용과 유사한 수준의 요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통관요금이나 수수료로부터 제외된다. (3항)
- 따라서 회원국 정부나 부처가 통과화물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요금은 두 종류로만 제한된다. 첫째는 운송비용이며, 둘째는 통과나 통과 자체, 또는 관련된 정부의 서비스와 관련된 행정적 비용에 대한 수수료이다. 여기에서도 요금은 합리적(4항)이고 무차별적인 방법(5항)으로 징수해야 한다. 통과화물에 대한 요금을 정부의 재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각 회원국은 통과화물이 여타 회원국을 통과한 경우, 그 회원국을 통과하지 않은 화물과 다르게 취급할 수 없다. (6항)

V조에 대한 제안서에서는 통과화물에 대해서 그다지 엄격한 통관절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과화물에 대해서 요구하는 통관절차는 그 화물이 회원국을 확실하게 통과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을 보호하는데에 필요한 최하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V조 관련 제안서들은 주장하고 있다.

2. GATT V조 관련 제안

한국은 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운을 통하여 직접 화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40) WTO (2005a) pp.7~8.

수 있으며, 한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들은 내륙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화물통과가 그다지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이 북아시아 물류허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통과화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Wilson, Mann and Otsuki(2003)에 의하면 범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무역원활화의 긍정적인 효과 중 화물통과절차 개선에 관련된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동유럽이나 아프리카의 내륙국가들에게는 V조의 화물통과 관련 이슈들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V조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제출한 제안들은 대체로 다음 3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즉, ▲ 화물통과관련 조치, 법령 및 규제 투명화, ▲ 화물통과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와 표준화, ▲ 통과절차 제도의 정비 등이다. 여기서 투명화와 간소화 및 표준화에 대한 제안들의 대부분은 VIII조에 관련 제출한 제안들과 비슷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되는 제안들은 아래에서 소개하지 않도록 한다. V조 관련 제안들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OECD(2003a), 양준석(2004)와 양준석(2005b), 그리고 WTO(2005d)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3> V조 관련 제안

종류	조치	비고
화물통과 관련 조치, 법령, 규제의 투명화	투명성 관련 조치	
화물통과절차 및 관련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	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관련 조치	
	통과화물의 부담을 최소화	
	환적화물과 비교할 때 단순통과화물의 부담을 최소화	한국제안
	국내통과제도 검토	한국제안
통과절차 제도의 정비	운송수단과 통과국에 대한 무차별원칙 적용	
	통관관련 용어 및 정의를 정리	
	협력절차의 설립	

<주> WTO(2005)와 양준석(2004)에 따라 저자 재정리

한국제안은 2005년 한국이 제안한 내용

(1) 화물통과 관련 조치, 법령, 규제의 투명화

이와 관련된 제안들은 앞의 X조 논의에서 본 제안들과 유사하다. 대다수의 X조 제안은 통과화물에 관한 내용도 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2) 화물통과절차 및 관련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

이와 관련된 제안들의 대부분은 앞의 VIII조 논의에서 제시된 제안들과 유사하고, 대다수의 VIII조 관련 제안들은 통과화물에 대한 서류와 통관절차, 수수료와 요금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단, 통과화물에 따르는 특징에 따라 VIII조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들이 소수 있는데, 이를 아래에 소개한다.

통과화물의 서류 및 절차 부담 최소화 및 단순통과화물의 부담 최소화

V조와 관련된 제안들 대다수는 통과하는 화물에 대한 서류 및 통관절차 부담을 최소화하고, 통과화물에 부여하는 수수료와 요금을 실비차원에 제한하고 최소화하고자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제안서에서는 현재 V조 원문에서는 운송수단을 통과국가에서 바꾸는, 즉 환적(transshipment)하는 화물과 운송수단을 바꾸지 않고 통과하는 단순통과화물을 차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단순통과화물에는 환적화물보다 더욱 간소화된 서류 및 통관절차를 적용하자고 제안하였다.

국내통과제도의 검토

일부 회원국들의 제안서에서는 각 회원국이 자국의 화물통과제도를 정기적으로 자체 검토하여, 더 이상 필요없는 서류, 절차, 수수료 및 요금을 철회하고, 통과화물을 담당하는 운송 및 무역업체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3) 통과절차 제도의 정비

운송수단과 통과국에 대한 무차별원칙 적용

GATT V조에 의하면 통과화물에 있어서 선박의 국적이나 출발지, 도착지, 방문지나 최종 목적지 등 물품의 소유, 선박이나 운송방법에 관련된 사항을 근거로 하는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일부 제안서는 무차별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하여 무차별원칙을 더욱 강화하자고 제안하였다. 특히, EC의 제안에서는 운송수단에 대한 무차별원칙을 강화하자고 제안하였다. 즉, 화물이 선박으로, 트럭으로, 철도로, 또는 항공편으로 국가를 통과하여도 원칙적으로 이 화물에 요구하고 있는 서류, 절차, 수수료 및 요금은 같아야 한다. 단, 위험성관리 차원에서, 또는 실비차원에서 통관절차나 수수료 부여의 차이가 생긴다면 이러한 정당성이 있는 차이는 허용된다.

통과관련 용어 및 정의의 정리

이는 GATT V조, 그리고 통과에 관련된 각종 용어 및 절차의 정의, 그리고 관례를 정리하여 회원국간의 확실한 이해를 도모하자는 제안들이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문제로는 「가장 편리한 경로」에 대한 정의를 들 수 있다. GATT V.2조에서는 「다른 계약당사자의 영토로 향하거나 동 영토로부터 나오는 통과교통에 대하여는 국제통과에 가장 편리한 경로를 통하여 각 계약당사자의 영토를 통과할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가장 편리한 경로는 무역업체나 운송업체에게 가장 편리한 경로인지, 아니면 화물이 통과하는 회원국 정부에게 가장 편리한 경로인지가 다소 부정확하다. 일부 회원국들은 보안, 국방 및 안전보호 등의 이유로 화

물이 통과하는 경로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업체와 운송업체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일부 경우에는 경로를 제한하는 이유가 보안, 국방이나 안전보호 보다는 정부의 편의, 또는 국내운송산업의 보호 등 보호주의인 경우가 있으므로 논란이 크다.

이 외에도 「행정적 비용」에 대한 정의를 들 수도 있다. GATT V.4조에 의하면 통과 회원국에서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와 비용은 운송비용과 정부의 행정적 비용에 대한 수수료인데, 통과화물에 있어서 정부가 수수료를 정당화할 수 있는 행정적 서비스는 무엇인지를 확실히 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협력절차의 설립

화물통과에 있어서 회원국들간 국제적 협력절차를 설립하자는 제안인데, 이의 형태나 구체적인 의무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 한 제안서에는 화물통과에 있어서는 다자적 협력절차보다 지역적 협력절차가 더욱 유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VI. 한국의 제안서

수출과 수입에 크게 의지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무역원활화 조치를 최대한 의무화시키는 무역원활화 협정의 체결이 한국에 가장 이롭고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은 최근 통관절차에 있어서 각종 정보통신기술을 활발히 도입하였으므로 물품수입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무역원활화 조치를 이미 실행하고 있고, 무역원활화 협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치들 중 상당한 부분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통관절차에 있어서 무역원활화 협정보다 더욱 엄격한 의무를 부여하는 WCO의 Revised Kyoto Convention을 이행하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어려운 분야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무역원활화 협정에 의한 한국의 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와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⁴¹⁾.

반면, 무역원활화는 개도국시장을 개척하고자하는 한국수출업체들과 복잡한 수출입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창수, 임혜진, 박지현, 양준석(2004)은 V조, VIII조 및 X조에 대하여 무역원활화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한국의 수출은 1.5~16.6%, 수입은 1.2~16.6%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⁴²⁾.

무역원활화를 추진하여 통상마찰도 다소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한국이 각종 규제 및 통관절차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⁴³⁾, 무역원활화 협정을 통하여 투명성과 통관절차의 객

41) 자세한 사항은 손관현, 윤진나, 전계서. pp.79~81; WTO, "Trade Facilitation - National Experience Paper: Revision of the Customs Act of Korea for Trade Facilitation," WTO 문서 G/C/W/146, 6 April 1999; WTO, "Trade Facilitation - Customs Administration and Trade Facilitation," WTO 문서 G/C/W/150, 16 April 1999; WTO, "Korea's Recent Efforts to Streamline the Customs Clearance System," WTO 문서 G/C/W/212, 6 June 2000.을 참조.

42) 이창수, 임혜진, 박지현, 양준석(2004) pp.32~36

관성을 개선하면 이러한 선진국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1996년 무역원활화가 싱가포르 이슈로 선정된 이후 무역원활화에 있어서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96~1999년 무역원활화 논의에서 한국은 3개의 국가경험보고서(National Experience Paper)를 WTO 사무국과 회원국들에게 제출하였으며,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준비과정에서 무역원활화를 지지한다는 공식문서⁴⁴⁾를 제출하였다.

시애틀 각료회의가 결렬되어 논의과정이 지연되자, 한국은 2000년에 국가경험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001년 도하각료회의 이후 비록 무역원활화 협상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그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한국은 V조, VIII조, X조와 관련 3개의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04년 July Package에서 무역원활화가 DDA 공식협상과제로 채택되자, 한국은 2005년에 4개의 제안서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추가적으로 국가경험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아래의 <표 4>에서는 한국의 공식 제안서들, <표 5>에서는 한국이 제출한 국가경험보고서들의 제목을 정리하였다.

<표 4> 한국의 무역원활화 관련 제안서

문서번호	제출일자	제목
G/C/W/150	1999년 4월 16일	Trade Facilitation: Customs Administration and Trade Facilitation
G/C/W/377	2002년 5월 22일	GATT Article X and Trade Facilitation
G/C/W/403	2002년 7월 25일	Trade Facilitation: GATT Article VIII
G/C/W/423	2002년 10월 1일	Trade Facilitation: GATT Article V
TN/TF/W/7	2005년 1월 27일	Clarification of Article X of the GATT: Publication and Availability of Information and Prior Commenting Period on Core Measures
TN/TF/W/18	2005년 3월 16일	Cla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Article VIII of GATT: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
TN/TF/W/34	2005년 4월 28일	Improvement of GATT Article V: Minimization of Burden on Cargo in Transit and Differentiation of Cargo Undergoing Transshipment
TN/TF/W/49	2005년 6월 10일	Cla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GATT Article VIII: Applying Risk Management (중국과 공동제출)

<표 5> 한국이 무역원활화와 관련되어 WTO에 제출한 국가경험보고서 목록

43) 왕윤중, 양준석(1999)와 양준석, 김홍률(2001a) 참조.

44) WTO 문서 G/C/W/150

문서번호	제출일자	제목
G/C/W/123	1998년 9월 25일	National Experience Paper: Reforming the Customs Clearance System in Korea
G/C/W/134	1998년 12월 22일	Matters Related to the Facilitation of Cargo Movement in Korea (National Experience Paper).
G/C/W/146	1999년 4월 6일	National Experience Paper: Revision of the Customs Act of Korea for Trade Facilitation
G/C/W/212	2000년 6월 6일	Korea's Recent Efforts to Streamline the Customs Clearance System
TN/TF/W/55	2005년 7월 22일	Post-Clearance Audit in Korea

<표 6>, <표 7>과 <표 8>에서는 한국이 2002년도와 2005년도에 제출한 공식제안서의 제안들을 정리하였다. 무역원활화 협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는 EC, 캐나다 및 홍콩인데, 대체로 한국의 제안은 이들보다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보다 비교적 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개도국들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무역원활화 협정에서 개도국들에게 너무 강한 조건을 강요하면 이들은 무역원활화 협정을 반대할 것이므로 차라리 약한 조건들을 제시하여 일단 무역원활화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한국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무역원활화 논의에서 제시된 대다수의 조치들을 이미 실행하였거나, 근래에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미미한 분야가 많으므로 너무 강력한 조건을 제시할 때에는 한국이 이를 실행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한국의 대외지원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강력한 조치들을 제안하면 개도국들은 여기에 합당하는 지원을 요청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 해외지원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논리들은 모두 나름대로 정당성은 있지만, 무역원활화가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한국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물류허브가 되고자한다면 한국의 수출입절차와 통관절차를 지금보다 대폭 간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이 무역원활화에 대해서 소극적인 전략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려면 한국의 대외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며, 추가되는 지원의 일부를 무역원활화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한국의 GATT X조 관련 제안

제안내용	2002	2005
GATT X.1조에서 규정한 법령 및 규제, 그리고 사전판정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O	O
정보는 무료, 또는 실비용 차원으로 제공하도록 함.		O
법령이나 규제의 개정된 내용은 무료, 또는 실비용 차원으로 제공하도록 함.		O
법령이나 규제를 공표하는 매체를 WTO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함	O	O
주요 법령이나 규제(core measures)를 도입하기 이전 이전 법령안이나 규제안을 WTO 사무국을 통하여 여타 회원국에게 통보하도록 함,	O	O
주요 법령이나 규제(core measures)를 도입하기 이전, 여타 회원국들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O	O
법령이나 규제를 도입하기 전 준비기간을 부여하도록 함 (준비기간의 길이를 협정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음)		O
통관절차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무차별적인 상소절차를 보장하도록 함	O	
단일 정보제공창구 (SNFP) 설립	O	O

<표 7> 한국의 GATT VIII조 관련 제안

제안내용	2002	2005
쉽게 구할 수 있는 상업적 정보와 복사된 서류의 사용을 허용	O	O
서류형태의 조화와 표준화		O
-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의 표준목록 설립		O
-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의 표준제목과 분류 설립		O
- 서류(종이 또는 전자형태) 형태의 조화와 표준화		O
단일 서류접수 창구 의무화		O
각 회원국의 화물 통관 및 양도에 소요되는 평균시간의 측정 및 발표 의무화		O
도착전처리 (Pre-arrival processing)	O	O
사후 감사 (Post-clearance auditing)	O	O
위험성관리 조치 도입 (Risk-management measures)	O	O

<표 8> 한국의 GATT V조 관련 제안

제안내용	2002	2005
통관화물 통과절차에 있어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국내제도를 검토	O	O
환적하지 않는 화물에 있어서는 환적하는 화물보다 낮은 부담을 줄 것	O	O
협력		
-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절차의 설립	O	
- 통과절차의 조화	O	
- 정보교환	O	
간소화		
- 통과화물에 대한 서류 및 검사과정의 추가적 간소화	O	
- 서류와 데이터 세트의 표준화	O	
투명성: 통과화물에 대한 수수료 변동시 통보	O	

한국이 2002년에 제출한 제안들과 2005년에 제출한 제안들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입장이 다소 구체화되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특히 GATT V조에 관련되는 제안들

에 있어서 원칙을 재확인하자는 제안보다는 통과절차의 부담을 구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2005년에는 VIII조에 관련,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많이 추가하였는데, 이는 국제적 기준에 대한 한국의 입장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2002년 한국 VIII조 제안에서는 국제기준 사용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즉 어떠한 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심층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2005년 VIII조 제안서에서는 WCO Customs Data Model, WCO Time Release Study 및 UN Layout Key를 사용하고자 제안하였으며, WCO Revised Kyoto Convention이나 HS Convention 등의 국제기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VII. 협상의 문제점

1. 회원국 그룹별 분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03년 칸쿤 각료회의까지 일부 개도국들은 무역원활화를 포함한 모든 싱가포르 이슈에 대해서 소극적, 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2005년 무역원활화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도 일부 개도국들은 무역원활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고, Annex D에서 구체적인 협상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원활화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질지도 미지수였다. 그러나 2005년 협상과정에서 개도국들의 입장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무역원활화를 추진하는 국가들과 세계은행, UN/ECE와 UN/ESCAP 등의 경제개발 국제기관들은 무역원활화가 개도국들의 수출시장개척과 시장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들의 노력으로 무역원활화 협상을 반대하는 회원국들의 숫자나 강도는 많이 감소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무역원활화에 있어서 WTO 회원국들을 대체로 ▲ 적극적인 국가, ▲ 소극적이지만 긍정적인 국가, ▲ 부정적인 국가, 그리고 ▲ 관심이 없는 국가들 등 4개의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콜로라도 그룹」이라는 친선 그룹을 설립하였는데, 여기에는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EC, 홍콩, 헝가리, 일본, 한국, 모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싱가포르, 스위스와 미국 등이 포함된다.

무역원활화에서는 EC가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EC는 경제공동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회원국간 비관세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데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주변 유럽국가들의 비관세 무역장벽 철폐 및 화물통과 자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연적으로 무역원활화를 추진하게 되었다⁴⁵⁾.

45) EC의 한 내부자에 의하면 EC가 무역원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EC회원국들간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즉, EC 회원국들 중 일부는 여타 EC 회원국들에게 아직도 비교적 높은 비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는데, EC는 WTO의 힘을 빌려서 내부적 무역장벽을 철폐시키겠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콜로라도 그룹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원활화에 있어서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무역원활화에 있어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 9월 11일 뉴욕테러 사건 이후의 미국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평가된다. 현재 미국 국민이나 언론은 테러 방지를 위하여 국경조치나 통관절차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통관절차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간주되는 무역원활화 조치는 미국국민의 지지를 얻거나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미국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무역원활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미국이 제출한 제안서를 보아도 속달관련 통관절차의 간소화,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표, 영사 서류 요구 약화 등 구체적 검사 및 통관에 관련되지 않는 분야에만 제안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무역원활화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일부 국가들은 「코어 그룹(Core Group)」이라는 협력체를 설립하였는데, 코어 그룹에는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쿠바,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케냐,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필리핀, 르완다, 탄자니아, 트리니다드, 우간다, 베네수엘라, 잠비아와 짐바브웨가 참여하고 있다. 코어 그룹은 무역원활화를 반대한다기보다는 무역원활화 협정의 내용이 개도국들에게 무리한 수준이 아니도록 확인하고, 개도국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는 그룹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들은 무역원활화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낡고 취약한 항구시설, 부족한 인적자원, 부족한 IT 인프라, 부족한 투자자금 등으로 인한 개도국들의 문제들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콜로라도 그룹 국가들과 코어 그룹 국가들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우간다는 미국과 함께 VIII조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APEC 회원국으로서 APEC 차원에서 무역원활화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코어 그룹은 선진국들의 제안서에서 제시한 각종 조치에 대해서 조치의 도입 및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선진국들이 제안서에서 제시한 특혜 및 지원의 수준에 있어서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지원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이 무역원활화에 있어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협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중국은 X조 투명성 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개도국 지원에 대한 제안서를 파키스탄과 공동으로 제출하였고⁴⁶⁾, 한국과 위험성관리에 대한 제안서를 공동으로 제출하였다. 중국의 제안서들은 다른 제안서들보다 상당히 약한 요구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국이 무역원활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무역원활화 협정 체결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준다고 볼 수 있다.

아프리카 개도국들과 최빈국들의 단체인 아프리카 그룹도 무역원활화에 있어서 다소 긍정적이지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 그룹의 일부 국가들은 코어 그룹에도 속한다.

46) WTO 문서번호 TN/TF/W/29

브라질, 인도, 쿠바 등 일부 국가들은 WTO의 무역원활화 논의에 있어서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⁴⁷⁾. 이들은 선진국이나 코어그룹이 제출한 각종 제안들에 있어서 실효성을 의문시하고 이러한 조치들로 인한 정부 부담의 증가를 문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무역원활화가 국가의 물적 및 인적 인프라 및 제도(institution)를 강화시키는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WTO같은 규율설립기관(rule setting body)에서 제도강화를 논의하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WTO에서 규율을 설립한다고 하여도 이는 인프라 및 제도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무역원활화에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하반기에는 이들 국가들도 무역원활화 협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소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하였다고 평가한다. 단,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다.

2. 논란되고 있는 이슈들

개도국들의 입장이 2004년에 비교하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원활화 협정이 성공적으로 체결되려면 아직도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있다. 여기에는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여부, 개도국지원문제 그리고 협상준비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무역원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 협정에서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 특히 개도국들은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도국들이 아직 무역원활화 협정에서 요구할 각종 규정에 합치하는 제도를 아직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소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염려, 그리고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는 직접적 비용과 부담 때문이다. 회원국들은 선진국의 경우, 그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무역원활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개도국들이 선진국이 피소국이 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며, 따라서 개도국이 피소국이 될 가능성은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1회의 행정착오 같은 사소한 사항마저도 무역원활화 협정의 대상이 되어 제소대상이 될 지를 염려하고 있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일부 무역원활화 조치는 높은 수준의 물적 및 인적 자원 투자가 필요한데 많은 개도국들은 이러한 투자를 실시할 여력이 없으므로 그들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피해자가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들은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선진국들이 높은 수준의 물적 및 인적 지원을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다. 무역원활화를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EC는 그들이 많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무역원활화를 소극적으로 보고 있으며 높은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미국은 얼마나 지원을 제공할지, 그리고 일본과 캐나다도 역시 얼마나 지원을 제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한, 선진국들이 지

47) 인도는 코어 그룹에 속하지만, 여타 코어 그룹 국가들보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을 제공한다고 하여도, 이 지원이 새로운 지원일지, 아니면 기존 지원을 무역원활화에 재배치하는 것인지도 개도국들의 관심사항이다. 아직까지 선진국들은 지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으므로 개도국들도 역시 무역원활화 협상에 있어서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무역원활화에 있어서 아직 협상을 시작할 충분한 준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각 제안서를 보면 X조에 관련된 투명성 조치들 및 일부 소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상세하고 기술적인 사항들이 제안되었지만, VIII조와 V조, 특히 구체적인 통관절차에 관련된 분야들에 있어서는 추상적인 원칙만 제시되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정은 추상적인 이념과 구체적인 사항이 혼합될 것이지만, 그 수준과 강도가 어떻게 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선진국의 지원과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여부가 협정에 내포된 조치들의 강도에 큰 영향을 줄 것이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들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이미 제출한 제안서들은 자국이 포함시키고자 하는 원칙들과 조치들을 나열만 하였고 구체적인 협정 전문(全文)의 초안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협정이 요구하는 조건과 조치의 강도,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여부, 그리고 선진국의 지원은 아직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DDA 일정에 맞추어 2006년말까지 협정문이 완료될지는 역시 미지수이다.

VIII. 결론: 한국의 WTO 무역원활화 추진 전략

제VI부에서 언급하였듯이 무역원활화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큰 이득을 볼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DDA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제안은 여타 선진국보다 약한 면이 있으며, 많은 제안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적인 역할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아직 개도국 혜택 조치와 개도국 지원에 있어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원활화 협정이 성공적으로 체결되려면 선진국들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에 비교하면 한국의 개도국이나 최빈국들에 대한 지원의 규모는 상당히 낮다. <표 9>에서 보듯이 피 한국과 비슷한 1인당 GNI를 가지고 있는 OECD 회원국들에 비해서 한국의 해외지원은 상당히 낮은 상태이다. 또한, 한국의 지원은 사회적 인프라, 또는 교육이나 의료시설 건설 같은 기본적 인적 인프라 시설의 건설에 제한되고 있다. 무역원활화와 관련, 지금까지 한국의 지원사업은 관세 및 통관절차에 대한 소수의 세미나에 불과하다.

<표 9> 2003년도와 2004년도 일부 OECD 회원국들의 해외지원수준

	2003				2004	
회원국	한국	그리스	포르투갈	뉴질랜드	한국	포르투갈
1인당 GNI (미\$)	12,020	11,660	10,720	13,250	13,980	14,350
해외지원/GNI (%)	0.06	0.22	0.25	0.23	0.06	0.24

<주> OECD DAC 자료와 한국 수출입은행 자료를 근거로 작성

UN은 선진국의 경우, GNI의 0.7%를 해외지원으로 제공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더 이상 개도국으로 간주되지 않고, 무역원활화에 있어서는 한국이 IT 강국이며, 이미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제도들을 도입하였으므로 한국이 무역원활화 협상을 주장하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무역원활화 협상에 대한 한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무역원활화 협상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염려가 있다. 여기서 한국의 지원은 비용이 적은 교육이나 충고뿐만이 아니라 각종 하드웨어 등 물적 지원 및 금융적 지원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한국수출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강력한 무역원활화 협정을 추진하거나 한국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해외지원의 강화를 추진한다면 여기에 맞는 수준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무역원활화 지원은 하나의 투자라고도 볼 수가 있다. 만약 개도국들이 한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식 무역원활화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는 향후 한국업체들의 해외진출뿐만이 아니라 무역원활화에 필요한 장비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한국의 지원으로 선진화된 무역인프라가 도입된다면 한국에 대한 대외이미지도 증가할 것이다. 즉, 한국은 무역을 통하여 물건을 팔려고만 하는 국가가 아니라 서로 무역을 통하여 공존번영을 추진하는 국가로 보일 것이다⁴⁸⁾.

개도국 지원의 강화 외에도 양준석(2004)과 양준석(2005a)에서는 무역원활화 협정이 성공적으로 체결하기 위해서 한국이 취할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 하나의 통합된 무역원활화 협정보다는 GATT V조, VIII조, X조에 대한 3개의 독립적인 이해문서("Understanding")를 추진할 것 ▲ 한국 및 선진국들은 무역원활화 협정문 초안을 빨리 작성하여 회원국간 회람할 것 ▲ 무역원활화 협정을 다자협정내 복수간협정으로 만들자는 것 등이었다.

1개의 통합적 협정보다는 3개의 이해문서를 추진할 이유는 현재 X조와 관련되는 투명성 내용은 많은 구체적 제안이 제출되었고, 합의도 비교적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V조와 VIII조에 관련되는 문제들은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멈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협정문 초안을 빨리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무역원활화 협정에서 요구하는 조치, 개도국들에 대한 각종 지원, 그리고 분쟁해결절차 사용여부가 동시에 균형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3번째 제안의 다자협정내 복수간협정이란, 협상에서는 모든 WTO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다자적 형태를 취하지만, 분쟁해결절차의 사용과 적용, 그리고 협정에서 요구하는 조건들 중 일부 어려운 조건들은 복수간 차원에서 동의하는 회원국들끼리만

48) 개도국 지원에 대한 내용은 이창수, 임혜준, 박지현, 양준석(2004) 6장과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하기로 약속한 개도국들에게만 무역원활화 관련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아직 무역원활화 협정을 추진할 여력이 없는 국가들은 약한 의무를 가지게 되지만,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할 수 없고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무역원활화 협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인센티브가 있다. 또한 여력이 없는 국가도 일단 협상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이 협정문에 반영될 수 있고, 따라서 협정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너무 어렵거나 국가들의 환경과 괴리되어 향후 개도국에게 협정조건의 준수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줄 것이다⁴⁹⁾.

이러한 전략제언을 현재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현재 협상추세를 볼 때 협정문은 V조, VIII조 및 X조의 내용을 포함할 통합적인 문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개도국에게는 개별 조치별로 차별된 유예기간을 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개도국들이 준수하기가 어려운 사항들은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제한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2006년 2월부터는 협상문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됨으로 협상문 초안이 곧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현재 관점에서 무역원활화 협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와 민간 무역업체들간 확실한 협력관계를 설립하는 것으로 본다. 무역원활화는 한국수출업체들의 해외진출, 그리고 수입업자들의 수입비용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무역원활화 협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무역업체들이 될 것이다. 반면, 비록 무역원활화 조치로 정부의 행정효율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정부도 무역원활화의 수혜자라고 볼 수 있지만, 무역원활화 협정을 통하여 정부가 수출입에 대한 통제권을 일부 상실할 수 있으므로 정부, 또는 정부기관의 일부는 자기들이 무역원활화의 피해자라고 볼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WTO 협상의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업체들과 정부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무역업체와 정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협상에서 제시된 각종 제안 및 조치들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무역업체 차원에서는 꼭 제거해야 하는 비관세 행정 및 통관절차 장벽은 무엇인지를 정부에 알리고, 정부는 공공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지를 업체에게 알리는 협의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업체는 정부가 무역원활화에 적극적인 협상을 지속하도록 계속 압력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역업체와 정부간 공동이해관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개도국 지원 증가의 필요성을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공산품 수출입에 있어서 투명성, 행정절차 및 통관절차에 관련된 비관세장벽이 이미 관세장벽보다 더욱 큰 무역장벽이 되었다는 차원에서 비관세장벽의 감소를 의무화하는 무역원활화 협상이 WTO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국제통상체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의 정부와 업계

49) 양준석, 김홍률(2001b)와 양준석(2003b)에서는 복수간협정인 정부조달협정에서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만이 협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타 국가들은 참여할 수 없으므로, 정부조달협정은 기존 가입국들의 의사와 제도만 반영되고, 따라서 여타 회원국들이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할 인센티브가 갈수록 없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는 성공적인 무역원활화 협정의 체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진국·김태운·양준석 (2002) 『행정규제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손찬현, 윤진나 (2001)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e-Trade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손찬현, 임효성 (1998) 「WTO 무역원활화 논의현황과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양준석 (2003a) “무역원활화와 WTO: GATT 10조관련 규제개혁 작업동향 및 SITPRO 등 각종 PRO 위원회의 역할”, 「OECD Focus」, Vol.2 No.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양준석 (2003b) 「정부조달과 WTO 도하라운드」, 『한국구매조달학회지』, 2003년 7월호 2권 1호, 서울: 한국구매조달학회, 2003, pp. 17~43.

양준석 (2004) 「WTO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논의와 정책적 함의」, 『무역학회지』, 2004년 6월호 제29권 제3호, 서울: 한국무역학회, 2004, pp. 59~80.

양준석 (2005a) 「WTO의 무역원활화 GATT X조 투명성 논의와 정책적 함의」 (2005) 『무역학회지』 제30권 제4호 2005년 8월 pp.53~75

양준석 (2005b) 「규제투명성과 WTO 논의: 무역원활화 GATT X조 논의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 풀 논의자료 2005-15 2005.7.14

양준석 (2005c) 『DDA 무역원활화 협상 GATT 5·8·10조 관련 아국 제안 구체화 및 향후 아국의 개도국 지원방안 연구』 산업자원부 용역자료, 2005.12

양준석, 김홍률 (2001a) 「주요 산업별 한미통상 현황」 『국제통상연구』 2001년 8월 제6권 제1호 한국국제통상학회

양준석·김홍률 (2001b) 『다자무역내 정부조달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01-07,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왕윤중, 양준석 (1999) 「한·미 통상마찰 해소와 통상확대방안」 『국제통상연구』 1999년 6월 제4권 제1호 한국국제통상학회

이창수·임혜준·박지현·양준석 (2004)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정책연구 04-07,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2. 국외문헌

APEC (1997) “Th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APEC Economic Committee, 1997.

APEC (1999) “Assessing APEC Trade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1999 Update,” APEC, 1999.

- APEC (2001) *Benefits of TILF in APEC*,
http://203.127.220.67/apec/apec_groups/committees/economic_committee/downloadlinks.0003.LinkURL.Download.ver5.1.9, 2001. (last accessed on 15, Mar. 2004)
- APFC (2000) "Survey on Customs, Standards, and Business Mobility in the APEC Region," A Report by the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APFC) for the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 APFC, 2000.
- Cecchini, Paolo, (1988) *The European Challenge 1992: The Benefits of a Single Market*, Gower Publishing, 1988
- EC (European Commission) (1989) "EU Cost 306 Final Report," EC, 1989.
- Gausch, J. L. and P. Spiller (1999) *Managing the Regulatory Process: Design, Concepts, Issues and the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Story*, World Bank Institute, 1999.
- IAPH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orts and Harbours) (1986) "Implementation of UN/ECE Recommendations [063] - Methodology for Estimating Costs and Benefits of Trade Facilitation," (Trade/WP.4/R.462) Contribution to UN/ECE meeting, 27 Mar. 1986.
- Lucenti, Krista, (2003) "Is There a Case for More Multilateral Rules on Trade Facilitation?," in Simon J. Eventett ed. 2003. *Singapore Issues and the World Trading System: The Road to Cancun and Beyond*, World Trade Institute, Berne, 2003.
- OECD (2001) "Business Benefit of Trade Facilitation," TD/TC/WP(2001)21, OECD, 6 June 2001.
- OECD (2002a) "Trade Facilitation," TD/TC/WP(2002)7, OECD, 9 Jan. 2002.
- OECD (2002b). "Transparency and Simplification Approaches to Border Procedures: Reflec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GATT Article X Related Proposals in Selected Countries," TD/TC/WP(2002)36/FINAL, OECD. Paris, 2002.
- OECD (2002c) "Transparency and Simplification Approaches to Border Procedures: Reflec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GATT Article VIII Related Proposals in Selected Countries," TD/TC/WP(2002)50/FINAL, OECD, Paris 4 Dec. 2002.
- OECD (2003a) "Transparency and Simplification Approaches to Border Procedures: Reflec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GATT Article V Related Proposals in Selected Countries," TD/TC/WP(2002)51/REV1, OECD. Paris, 3 February 2003.
- OECD (2003b) "Trade Facilitation Principles in GATT Articles V, VII and X: Reflections on Possible Implementation Approaches," TD/TC/WP(2003)12, 2003.
- Sohn, Chan-Hyun and Junsok Yang, (2003) "Trade Facilitation in the WTO: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a Roadmap to Cancun," Discussion Paper 03-04,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03.
- Staples, Brian Rankin, (2002) "Trade Facilitation: Improving the Invisible Infrastructure," in Bernard Hoekman, Aaditya Mattoo, and Philip English eds. (2002) *Development, Trade and the WTO: A Handbook*, The World Bank, 2002.
- UNCTAD, (1994) "Columbus Ministerial Declaration on Trade Efficiency", 1994.
- Wilson, John S., Catherine Mann, and Tsunehiro Otsuki. (2003) "Trade Facilitation and Capacity Building: A Global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rade Facilitation and

Capacity Building: A Global Perspective. Panel Session on Trade Facilitation. APEC Capacity-Building Workshop, Bangkok. October 8, 2003, 2003.

WTO. (2005a) "Article V of GATT 1994 - Scope and Application," TN/TF/W/2, 12 January 2005.

WTO (2005b) "Article VIII of the GATT 1994 Scope and Application," TN/TF/W/3, 12 January, 2005.

WTO. (2005c) "Article X of GATT 1994 - Scope and Application," TN/TF/W/4, 12 January, 2005.

WTO (2005d) "WTO Negotiations on Trade Facilitation: Compendium of Members' Proposals" TN/TF/W/43/Rev.4 10.31.2005

Yang, Junsok (2005) "Individual Action Plan (IAP) Peer Review of the Philippines" APEC document 2005/SOMI/010anx2 downloadable from http://www.apec-iap.org/document/RP_2005_Annex_2_IAP_Study_Report_Peer_Review.pdf

DDA 개발분야 협상의 동향과 대응방향

2006. 2. 20

재 정 경 제 부
DDA 대책반

I. DDA 협상과 개발 문제

1. 개발문제 대두배경

- 개도국의 부채, 빈곤 그리고 선·개도국간의 격차 심화 등에 따른 갈등이 세계경제질서를 위협하며 전세계적인 문제로 부각
- 개도국의 문제 해결과 세계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우루과이라운드(UR)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이후 개도국을 다자 무역체제로 끌어 들이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2. DDA 출범과 개도국 문제

- 개발관련 문제는 개도국우대, 이행문제, 소규모경제, 최빈개도국,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기술이전, 외채금융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음
- 개도국우대 문제는 GATT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제기
 - 특히, GATT는 1979년 도쿄 라운드 말미에 “개도국에 대한 차별적인 우대, 상호주의 불적용”의 권능조항(Enabling Clause)*을 채택, 개도국우대 논의에 중대한 발전을 가져옴
 - * 이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부여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와 개도국간에 체결되는 특혜무역협정은 물론, 최빈개도국(LDS : 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한 특별대우에 대한 영구적인 법적 근거가 됨
 -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해서는 무역규범 전반에 관한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개도국의 불만이 팽배

- '01.11월 제4차 도하 각료선언문 도입부를 통해 개발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새로이 추진하는 다자간 무역협상은 개발 문제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에서 “개발아젠다”라는 명칭 사용에 합의
- 각료선언문 제44항에 “모든 개도국우대 조항을 보다 정확하고, 실효적이고, 운용 가능하게(more precise, effective and operational) 만들기 위해 이들 조항을 검토할 것”을 규정

II. 개발이슈에 대한 협상내용 및 추진경과

1. 개도국우대

① 개도국우대의 개념과 조항의 내용

□ 개도국우대(S&D)의 개념

- 개도국우대란 선진국과는 다른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 (S&D :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개도국에게 제공해 줌을 의미
-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권리·의무를 달리 한다는 의미에서 GATT와 WTO의 다자무역체제의 비차별대우 원칙의 중요한 예외 사항임

□ 개도국우대 조항

- 개도국우대만을 규정하는 별도의 협정은 없으며, 현 WTO 규범 상 개도국우대 조항은 총 153개*로 24개에 이르는 각 분야별 협정 및 결정에 산재되어 있음

* 사무국은 이를 각각 i)개도국의 무역기회 증대관련 조항(14개), ii)개도국의 이익 보호관련 조항(50개), iii)양허, 조치, 정책수단사용의 신축성 관련 조항(33개), iv)잠정이행기간 관련 조항(19개), v)기술지원 관련 조항(14개), vi) 최빈개도국 관련 조항(23개)** 등 6개의 범주로 구분

** 앞의 5개 범주의 조항 중에서 특별히 최빈개도국을 수혜자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 개도국우대 조항의 주요 내용

- 개도국들이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의무 자체를 감소시키거나, 의무 이행기간을 늘려주는 것
 - 예를 들어, 농업의 경우 선진국은 관세를 평균 36%인하토록 하는 반면, 개도국은 24%로 인하 폭을 낮춰주며, 관세인하 이행기간도 차별(선진국 : 6년, 개도국 : 10년)을 둠
- 또한, 무역규범의 이행을 위해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기술지원 제공 등을 포함
- 한편,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개도국보다 더 특별한 우대를 부여
 - 농업협정에서 최빈개도국은 관세와 보조금 감축의무에서 면제되었으며,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상 수출보조금의 경우도 영구적으로 허용(일반 개도국에게는 8년 동안 허용)

< 현 WTO 협정 및 결정상 개도국우대조항(WTO 사무국 정리) >

협정 및 결정(총 24개 분야)	무역 기회 증대	개도국 이익 보호	신축성	이행 기간	기술 지원	최빈 개도국	합계
농업 협정	1		9	1		3	14
식량순수입개도국에 관한 결정		4			1		5
위생/식물위생(SPS) 조치 협정		2		2	1		5
섬유의류협정	1	3				2	6
무역관련기술장벽(TBT) 협정		6	1	1	7	1	16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협정			1	2		1	4
반덤핑 협정		1					1
관세평가 협정		1	2	4	1		8
최소가격/독점대리인 등에 의한 수입에 관한 결정		2					2
선적전 검사 협정							0
원산지 규정 협정							0
수입허가 절차 협정		3		1			4
보조금/상계조치 협정		2	8	6			16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1	1				2
서비스무역 협정	3	4	4		2	2	15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				2	1	3	6
분쟁해결규칙/절차 양해		7	1		1	2	11
GATT 1994 18조			3				3
GATT 1994 36조	4	3	1				8
GATT 1994 37조	2	6					8
GATT 1994 38조	2	5					7
권능조항	1		2			1	4
최빈개도국을 위한 조치에 관한 결정						7	7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waiver						1	1
합 계	14	50	33	19	14	23	153

< 현 WTO 협정상 개도국우대 주요 내용 >

협 정	항 목	선진국	개도국	최빈개도국
농 업	o관세			감축의무 면제
	- 감축 폭	36%	24%	
	- 감축 이행기간	6년	10년	
	o보조금			감축의무 면제
	- 수출보조금 감축폭	36%	24%	
	- 국내보조금 감축폭	20%	13.3%	
	- 감축 이행기간	6년	10년	
위생/식물위생조치	o협정적용 유예기간	-	2년	5년
무역관련기술장벽	o협정상 의무에서 일탈	불가	구체적이고 한시적인 예외부여 가능	예외부여시 LDC의 특별한 문제 고려
무역관련투자조치	o협정과 불일치하는 투자조치 철폐시한	2년	5년(연장 가능)	7년(연장 가능)
	o내국민대우/수량제한 금지의무에서 일탈	불가	일시적으로 가능	
관세평가	o협정적용 유예기간	-	5년 *79년협정 비당사국 만 해당	
보조금/상계조치	o수출보조금	금지	8년간 허용	영구 허용
	o수출경쟁력달성 후의 수출보조금	금지	2년간 허용	8년간 허용
	o국 산 품 사 용 (수 입 대체)보조금	금지	5년간 허용	8년간 허용
	o상계관세조사 종료 를 위한 최소 허용 보조금수준 (de minimis)	상 품 가 액 의 1% 이하	상품가액의 2% 이하	상품가액의 3% 이하(8년간만)
	o상계관세조사 중단을 위한 최소시장 점유율	-	총수입의 4% 미만	
긴급수입제한조치	o조치 존속기간	최장 8년간	최장 10년간	
	o조치 발동이 불가한 최소시장 점유율	-	총수입의 3% 이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o협정적용 유예기간	1년	5년(물질특허 관련 규정은 5년 연장 가능)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의무는 제외	11년(연장 가능)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의무는 제외
분쟁해결규칙/절차	o패널구성	-	개도국과 선진국간 분쟁시 개도국 인사 최소 1인 포함	
	o패널절차	-	개도국이 선진국을 제소할 경우 패널 설치전 사무총장의 중재요청 가능	최빈개도국 관련 분쟁에서는 제소, 보상요구, 보복 조치요구를 자제 (due constraint)

2] 개도국우대 조항 협상의 경과

- ◆ 개도국우대 조항 협상은 도하각료회의 지침에 따라 '02.2월부터 협정별 제안과 공통이슈를 중심으로 기존의 WTO 무역개발위원회 특별회의(CTDSS :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Special Session)에서 진행
 - 협정별 제안(Agreement-specific proposals)은 개도국들이 협정별 개도국 우대 조항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 제기한 제안
 - 공통이슈(cross-cutting issues)란 개도국우대의 원칙과 목적 등 개도국우대 조항 전반에 걸친 이슈로서, SDT(Special & Differential Treatment)의 원칙 및 운용,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Technical Assistance & Capacity Building), 잠정이행기간 등이 포함
 - 선진국들은 개도국 세분화 및 졸업을 포함한 차별적 대우 등도 논의 할 것을 주장

□ '03.2월 일반이사회까지의 협정별 제안은 총 88개로서 이중 12개 제안만이 선진국과 개도국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는 진전이 없었음

□ 이후 일반이사회 의장의 제안으로 칸쿤회의 직전까지 개도국이 제안한 88개 협정별 제안을 3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논의 진행

< 88개 협정별 제안 분류 현황 >

분 류	분류 기준	제안 수
Category I	비교적 합의가능성이 높은 제안으로 우선 검토 대상	38건
Category II	무역개발위원회 특별회의(CTDSS)가 아닌 여타분야별 협상 그룹 및 해당 위원회에서 검토중인 안건	38건
Category III	선·개도국간의 입장차이로 사실상 합의 가능성이 낮은 제안	12건

- '03.8월 칸쿤 각료회의 직전 **Category I**의 28건에 대해서 합의 도출(참고1 참조), 5차 WTO 칸쿤 각료선언문 2차 수정안 부속서에 이의 내용 포함
- '03.9월 칸쿤각료회의 결렬로 각료회의 문서초안이 채택되지 못함에 따라, 합의된 28개 제안의 유효성 지속 여부와 개도국 우대 검토 작업의 미래가 불투명화 됨
- '04.7월 기본골격(Framework) 합의문(July Package)에서 칸쿤 각료회의 문서 초안의 본문 내용을 거의 유지하며 합의
 - 무역개발위원회 특별회의는 협정별 제안 중 남아있는 제안(총22건)과 공통 이슈를 포함한 기타 모든 현안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일반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 * **Category I**의 10개 제안과 **Category III**의 12개 제안 등 총 22건(잠정 합의된 28개 제안과 Category II는 제외)

2. 기타 개발 이슈

- 최빈개도국(LDC)* 우대 관련 5개 제안
 - * 최빈개도국(LDCs : Least-developed Countries) : UN 경제사회이사회가 1인당 GNI, 인간자산지수, 경제적 취약성 지수를 기준으로 선정, 3년마다 갱신. 현재 50개국(WTO 회원국중 32개국 포함)
 -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시장 접근 제공
 - GATT 1994와 WTO 협정 9조 3항에 근거 최빈개도국의 의무 면제 부여 결정시한의 단축요구

- 무역투자(TRIMs :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규정에 있어서 무역규제와 왜곡효과가 있는 조치에 대한 의무면제
- 필요와 능력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의 의무부담
- WTO 회원국으로서 기수락한 의무로부터의 면제

□ TRIPs(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과 공중보건의 문제 개선

- TRIPs 협정은 AIDS, 말라리아 등 공중보건 위기시 특허 의약품의 강제실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의약품 생산기반이 없는 최빈개도국은 TRIPs 협정 31(f)조*로 인해 동제도를 활용한 필수 의약품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

* TRIPs 협정 31(f) : 강제실시에 의한 사용은 주로(predominantly) 동 사용을 승인하는 회원국의 국내시장 공급을 위해서만 승인

- 최빈개도국은 이에 TRIPs 협정 31(f)조 상의 의무 면제 및 관련 TRIPS 협정 개정 요구

□ 소규모 경제국

- NAMA 협상에서 대두, 소규모 경제국*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해 관세와 관세감축공식의 적용 등에 있어서 특별대우 요청

* '95~'04년간 수출 규모가 세계 제조업 품목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1%를 넘지 않는 국가

- 선·개도국 이외의 새로운 카테고리 설정에 대한 우려와 소규모경제국에 해당하지 않는 개도국들의 강한 반대

□ 면 화 (*우리나라와는 특별한 이해관계 없음)

- 베넬, 말리 등 면화생산 아프리카 4개국은 선진국의 면화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철폐 이전까지 선진국들의 보조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제안
- 칸쿤 각료회의시 최대 쟁점으로 대두됨

□ 특혜침식(*우리나라와는 특별한 이해관계 없음)

- 선진국들과의 특혜관세조약을 통해 혜택을 받던 일부 개도국*이 농업과 NAMA의 대폭적인 관세감축으로 특혜침식 우려

* ACP(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 EU와 특혜적 무역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지역의 도서국 그룹

- 기존의 특혜관세 수혜국이었던 개도국과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내세우는 여타 개도국과의 대립 발생

□ 1차 상품

- 몇몇 개도국과 최빈국은 1차 상품 가격의 장기적인 하락 및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인한 어려움 제기
 - DDA 협상에서 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무역개발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 중임
 - 생산국 조치 : 공급관리 시스템 도입, 수출세 부과 등 1차상품 가격 안정과 관련된 GATT 규정의 명확화 및 개선

· 수입국 : 1차 상품 관련 관세누진과 비관세장벽의 철폐

- 동 제안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여타 회원국들이 문제 제기

○ 우리나라는 수출세부과 등에 있어서 이해관계 상존

☐ 무역을 위한 원조

○ 개도국의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성장기회 확보를 위해서는
개도국의 기술지원과 능력배양 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이와 관련 기금(aid for trade fund) 설립 추진

3. 홍콩각료회의 내용 및 평가

☐ '05.12월 6차 홍콩각료회의에서는 개도국 Package를 마련함
으로써 향후 개도국들의 다자협상체제에의 적극적인 참여 기반을
확보

개도국 Package 내용

- ◇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수치목표 및 시행시기 설정
- ◇ 공중보건과 관련 TRIPS 협정개정에 대한 합의
- ◇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조(aid for trade) 증대 공약
- ◇ 면화에 대한 별도 모델리티 마련
- ◇ 특혜잠식, 소규모 경제국의 우려에 대한 인식 제고

① 주요 합의내용

가. 최빈개도국(LDC) 우대(*홍콩각료회의선언문 부속서 F 내용)

① 최빈개도국 의무면제(waiver)

- ☐ LDC의 WTO 의무면제 요청시 일반이사회가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60일*내에 결정토록 함

* 현행 waiver 부여 결정시한 : 90일

- ☐ 제3국이 LDC를 위해 요청하는 waiver 부여시 60일내 결정토록 하되, 여타국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도록 함

②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 등

- ☐ 선진국 및 참여할 수 있다고 선언한 개도국은 모든 최빈개도국(LDC)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2008년까지 또는 협상결과 이행시기에 맞추어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을 제공키로 합의

※ 선진국은 shall(의무적 이행이나 법적인 양허효과는 미발생), 개도국은 should(자발적 이행)를 구분 사용

- ☐ 다만, 동 의무를 당장 이행하기 어려운 선진국은 2008년까지 또는 협상결과 이행시기에 맞추어 우선 관세 세번의 최소한 97%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시장접근을 제공하고,

- 여타 모든 품목에 대해서도 최초 품목 리스트에 기초하여 점진적으로(incremental, 시한 미설정) 제공

☐ 동 시장접근 제공에 참여하는 개도국의 경우에는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시장접근 제공 대상 범위 선정에도 적절한 신축성을 허용

☐ 이러한 시장접근 확대 약속을 영구적인 방식으로 이행

③ 필요와 능력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의무 부담

☐ LDC는 필요와 능력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의무 부담

④ LDC에 대한 TRIMs 의무 면제

☐ TRIMs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LDC의 기존 조치를 2년내에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

○ 동 조치는 7년까지 허용하되, 연장 여부는 상품무역이사회에서 결정

☐ TRIMs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LDC의 신규 조치를 조치 채택 후 6개월 이내에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

○ 상품무역이사회는 동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 동 조치는 5년까지 허용하며, 연장 여부는 상품무역이사회에서 결정

☐ TRIMs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조치는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철폐

⑤ 기수락한 의무로부터의 면제

☐ LDC는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WTO 상의 의무를 지도록 함

○ LDC가 의무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동건을 일반이사회에 회부하여 검토토록 함

나. Aid for Trade 관련

- ☐ 다양한 장소에서 재무·개발 장관들이 무역을 위한 원조를 논의한 것을 환영
 - 무역을 위한 원조는 개도국들이 공급측면의 능력 및 무역관련 인프라를 배양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무역을 위한 원조가 DDA 협상의, 특히 시장접근협상의 성공적 타결에서 파생되는 개발 이익을 대체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보완요소로 작용할 것임
- ☐ 일반이사회가 task force를 설치하여 무역을 위한 원조의 운영방안에 대해 2006년 7월까지 일반이사회에 권고토록 함
- ☐ 사무총장이 여타 WTO 회원국, IMF, World Bank와 협조하여 일반이사회에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보고토록 함

다. 면화 관련

- ☐ 면화 문제를 농업협상 차원에서 신속히 논의하여 분명한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
 - 선진국의 면화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2006년까지 철폐
 -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선진국은 최빈개도국에 대해 이행기간 개시 시점부터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을 제공
 - 면화에 대한 무역왜곡 보조는 일반적인 공식보다 더 빨리, 더 높은 수준으로(ambitiously) 감축

라. 농업 · NAMA 분야 주요 합의 내용

☐ 농업

- 개도국은 식량안보, 생계안보, 지역개발에 기초한 indicator에 따라 적정한 수치의 품목을 스스로 특별품목(SP : Special Products)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신축성을 가짐
- 또한 수입물량 및 가격 발동기준에 근거하여 특별세이프가드(SSM : Special Safeguard Mechanisms)를 사용할 수 있음

☐ NAMA

- 개도국 S&D 및 불완전 상호주의를 달성하는 수준으로 관세감축공식의 계수를 결정
- 특혜침식 문제와 소규모 경제국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 모색
- DDA 협상의 개발목표 진전과 관련, 개도국에 대한 농업 · NAMA의 시장접근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
- 이를 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목표가 S&D 원칙과 부합되도록 균형적 · 비례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고 언급

2 평가

- ☐ 최빈개도국(LDC)의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를 해결함으로써 DDA가 “Development Round”라는 인식을 보다 강화
- ☐ 무관세 · 무쿼터 시행 관련 일부 선진국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이행시기 및 품목 범위에서 융통성 부여

- 최빈개도국들은 모든 최빈개도국 수출상품에 대한 의무적인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을 2007년초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일본 등이 당장 시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제기
- 당초 스위스 제안과는 달리 잔여 품목에 대한 이행시한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 제공 의무 부담 내용이 사실상 완화된 것으로 평가

※ 최빈개도국은 당초 "99.9% of products"에 대해 "07.1.1일"까지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을 제공하고, "all products"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이행할 것을 주장

- 개도국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품목, 이행시기 면에서도 더 확대된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참가유인 제공
- 단, 특혜공여국이 되느냐 여부는 개도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개도국들이 실제로 얼마나 참여할지는 불투명

Ⅲ. 2006년도 협상 전망 및 대응방향

1. 2006년도 협상 전망

- 홍콩각료선언문의 지침에 따라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홍콩에서 합의된 최빈개도국(LDC) 관련 5개 제안 및 칸쿤 각료회의시까지 잠정합의된 28개 제안을 제외한 나머지 53개 제안에 대해 논의 진행

- 그러나, 이 53개 제안의 상당수 제안 내용이 LDC 관련 내용보다 WTO 체제의 근본적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도달의 어려움이 예상
 - 선진국은 홍콩에서의 양보를 이유로 농업 · NAMA · 서비스 등 주요협상분야에서 개도국의 협력을 요구할 것임
 - 개도국은 나머지 개도국우대 조항의 제안에 있어서 또다시 선진국의 양보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
- 공통이슈(cross-cutting issues)에 있어서도 선진국이 개도국의 세분화 및 졸업 등의 이슈를 다시 제기할 경우 선 · 개도국 간의 정치적 대립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음

2. 향후 대응방향

- 협정별 제안과 공통이슈 관련 논의 내용을 구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대처
 - 협정별 제안 논의에 있어서는 LDC 제안 이외의 개도국우대 조항 제안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 관련 제안과 여타 협상 분야의 상관관계 등을 사안별로 검토
 - 공통이슈 관련해서는 각 이슈에 따라 선 · 개도국의 입장을 공유하며 사안에 따라 적절히 대응

- 특히, 향후 협상에서 주요 논의의 쟁점이 될 이슈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정립이 필요
 - LDC 상품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대우의 세부적 이행 방안과 특혜침식에 대한 대응, 기술지원 요구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 정리
- DDA 협상은 개도국이 개발 분야의 원만한 협상 타결로 지위향상 및 자유무역을 통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참고 1】 우리나라와 최빈개도국과의 관계

가. 일반적인 교역현황

- ☐ 우리나라는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교역현황을 살펴볼때,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음

<우리나라의 대최빈개도국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달러)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수출액	1,996	2,520	3,098	2,657	2,886	4,925
수입액	691	1,828	996	989	900	1,047
무역수지	1,313	704	2,110	1,684	1,986	3,868

* 1995-2003 : 재정경제부, 2004년: 무역협회 database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 중 최빈개도국 수입비중>

(단위 : 백만달러, %)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수입액(A)	135,119	160,481	141,098	152,126	178,827	224,162
LDC 수입액(B)	691	1,828	996	989	900	1,047
LDC 수입비율(B/A)	0.51	1.14	0.71	0.65	0.50	0.46

* 1995-2003 : 재정경제부, 2004년: 무역협회 database

나. 부분별 교역 현황

<품목별 최빈개도국 수입액>

(단위 : 백만달러, %)

	LDC 수입총액	농수산물 (HS 1~24류)	목재류 (HS 44류)	의류 (HS 60~65류)	원유 (HS 2709)	기타
수입액	900	42	35	11	634	178
(비율)	(100)	(4.7)	(3.9)	(1.2)	(70.4)	(19.8)

* 2003 : 재정경제부 database

다.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 내용

- ☐ 세계 12위 무역국이라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서 특혜 관세 공여 필요
- ☐ '00.1.1일부터 WTO에서 권고한 116개 품목 중 87개 품목에 대하여 무관세 혜택을 부여
 - 국내산업 피해 우려 품목 28개(쇠고기, 콩, 쌀 등 농수산물과 티셔츠 등 섬유제품), 세수대중 품목 1개(원유) 등 **29개 품목을 제외한 87개 품목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부여
 - 단, 최혜국세율이 0%인 서적 등 7개 품목을 제외하면, 80개 품목에 대해 실질적인 특혜 공여

- * 2002년 HS 코드 변경으로 동 80개 품목은 HS 6단위 기준으로 89개 품목이 됨
- 농산물 : 커피, 담배 등 32개 품목
 - 수산물 : 관상용 활어, 닭새우류 등 3개 품목(냉동낙지 제외)
 - 임산물 : 원목, 제재목 등 16개 품목(환봉 제외)
 - 공산품 : 원면, 천연고무, 천연인산칼슘, 의약품, 의류 등 38개 품목

【참고 2】 협정별 제안 28개 잠정 합의 내용

관련 조항	내 용
GATT 1994 제18조 Section C	(특정 산업 지원을 위해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18조 Section C 활용을 위한 구체절차 (procedures for recourse to)를 상품무역이사회가 개발/채택하고, 양허 정지 등을 포함한 개도국의 우려를 검토함.
GATT 1994 제36조	(개도국의 무역과 개발 증진에 관한 원칙 및 목적을 규정한) 제36조 이행을 무역개발위원회가 매년 검토하고, 합의되는 경우 매년 마지막 일반이사회까지 구체적인 권고와 함께 보고함.
GATT 1994 제37조	모든 회원국은 (개도국을 위한 선진국의 약속을 규정한) 제37조에 근거한 논의를 무역개발위에서 개시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개도국을 위한 시장접근 확대조치 등을 규정한) 제1항과 관련 제기된 문제에 대해 상세한 해명자료를 제시해야함.
GATT 1994 제38조	사무총장은 제36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무역개발위원회는 국제기구의 개도국 개발목표 달성 지원에 관한 연구결과 및 보고서를 접수함.
GATT 1994 제17조(국영무역) 해석양해	제17조가 모든 회원국에 적용됨을 인정하되, 국영무역기업이 개도국의 공공정책목표 제고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인정함.
GATT 1994 국제수지조항 양해 제8항	국제수지위원회는 정식협의절차내 행정요건 간소화 방안을 검토함.
권능조항	회원국들이 권능조항하에 조치를 취할 때 권능조항상의 제반조건(terms and conditions)이 적용됨을 확인함.
농업협정 제15.2조	컨센서스에 의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최빈개도국은 제15.2조 규정대로 감축의무에서 면제됨을 확인함.
선적전검사협정 제3.3조	선적전검사협정 관련 기술지원은 특히 세관공무원 훈련 및 선적전 entities 규제에 관한 개도국 우려를 다루어야함. 회원국들의 세관당국들은 관세평가협정 등과 관련하여 긴밀하게 협력해야함.
원산지규정협정	개도국들은 급속한 경제개발과 관련된 무역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혜원산지규정을 채택할 권리를 가짐. 사무총장은 세계관세기구(WCO) 원산지기술위원회에 대한 개도국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WCO와 협력하여 개도국들의 기술/재정지원 수요를 확인하여, 원산지위원회/상품무역이사회/일반 이사회에 보고함.

관련 조항	내 용
수입허가절차협정 제1.2조	제1.2조의 “개도국의 개발목적과 재정/무역 필요”를 고려한다는 규정은 개도국 무역 촉진과 이에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수입허가 관련 개도국의 행정절차 부담을 추가로 감소시킨다는 것으로 이해함.
서비스무역협정 제4조	제4.3조에 따라, 모든 서비스 협상에서 모델리티는 최빈국의 우선 순위가 제시되고 고려되도록 개발되어야함.
서비스무역협정 제4.3조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특별 우선 순위가 최빈개도국에 부여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하며, contact points는 최빈개도국의 서비스공급자에게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함.
서비스무역협정 제25조	개도국의 공급측면/인프라 제약과 서비스 부문 개발 수요를 다루기 위한 지원을 WTO 사무국이 제공하되,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제25.2조에 따라 사무국의 의해 다자 차원에서 제공될 기술지원을 결정함.
서비스무역협정 통신부속서 제6항	서비스무역이사회는 통신부속서 제6항 이행과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를 신속히 통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제66.2조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규정한) 제66.2조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2003.2.19자 TRIPS 이사회 결정 (IP/C/28)이 신속히 이행되어야함을 재확인함.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제67조	제67조에 따라 (선진국이 제공해야하는) 기술/재정협력은 관련 법체제 개선, 집행 메카니즘 개선, 인력에 대한 훈련 확대,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법절차 준비 지원, 협정상 권리 및 정책 신축성 사용, 지적권/투자/경쟁 당국간 협조 구축/강화 등을 포함함.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WTO간의 TRIPS 협정 이행 상태를 협정상 규정된 기술지원 기회를 감안, TRIPS 이사회가 매년 검토토록 함.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제70.9조	(협정 적용 예외 잠정기간동안 배타적 판매권을 부여토록 규정한 동 조항 관련) 회원국들은 (28조 규정에 의한 특허권과 동일하지 않은) 배타적 판매권을 정의할 권리를 가지며, 당해 회원국내에서 판매 승인이 없는 한 배타적 판매권을 부여할 의무가 없음.
분쟁해결규칙/절 차 양해 제8.10조	선진국과 개도국간 분쟁에서, 개도국 당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최소한 1명의 패널은 개도국에서 선정하도록 함.
최빈개도국을 위한 조치 결정 제2(v)항	WTO가 IF 및 JITAP 참여를 통해 최빈개도국의 공급측면 제약이 Diagnostic Trade Integration Studies (DITS)에서 확인되고 이행 과정에서 다루어지도록 해야함. 최빈개도국 소위가 DTIS 이행을 2년마다 검토하고, 최빈개도국 수출품 다변화를 위한 기술지원의 영향을 감시함.
통보절차관련규정	최빈개도국 소위는 최빈개도국의 통보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관련 WTO 기구의 기여를 요청), 무역개발위원회는 최빈 개도국 소위 보고서를 적절한 조치를 위해 일반이사회에 2003.12.31까지 보고함.

관련 조항	내 용
권능조항	(GSP, 개도국간特惠무역제도를 규정한) para. 2(a)~(c) 및 (개도국의 개발, 재정, 무역 필요 등을 규정한) para. 3 관련,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수출이해관계 품목에 대한 의미있는 시장접근을 부여하기 위해 개도국의 필요를 고려하고 이들과 협의함. 무역개발위원회는 이 부분에서의 진전사항을 매년 검토하여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일반이사회에 보고함.
최빈개도국을 위한 시장접근 진전사항 검토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규정한) 권능조항 제2(d)항 및 도하각료선언문 제42항의 무관세/무쿼터 약속을 상기하고, 최빈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 관련 진전사항을 검토함.
최빈개도국을 위한 조치에 관한 결정 제2(ii)항	회원국들은 [모든] 최빈개도국의 상품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 부여 목표를 신속히 추구해야함. 회원국들이 최빈개도국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원산지규정을 채택/이행할 것을 촉구함.
최빈개도국을 위한 조치에 관한 결정 제2항	최빈개도국은 잠정기간 연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격이 있음(WTO 각 협정의 관련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동 규정 적용).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은 특히 공급측면 제약 제거를 목표로 해야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 기술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여타 국제기구들과 협의해야함.
최빈개도국을 위한 조치에 관한 결정 권능조항 제3(b)항	MFN 관세자유화에 의한 무역特惠잠식 이슈 관련,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해야함.
GATT 1994 제18조 Section B	(국제수지 불균형 시정을 위한 수입제한 조치를 규정한) 18조 Section B에 따른 조치 필요성을 결정함에 있어, 단기 자본이동의 급변성이 대외자산 또는 흑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함.